

CONTENTS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b>권두칼럼</b>	02 개혁의 초심을 잃지 말아야 · 이만우
<b>현안분석</b>	06 신용보증기금의 재정위험 · 박기백 17 예산절감을 위한 정부구매카드제도의 개선방향 · 김재진
<b>정책토론포트</b>	38 납세자 권리보호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b>정책연구</b>	61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 정책과제의 경제적 분석 / 김승래 · 박명호 · 홍범교 65 보건 · 의료부문 장기재정 모형 구축 / 김종면 · 김우철 67 한국의 민간기부에 관한 연구 / 손원익 · 박태규
<b>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b>	71 러시아 등 식량수출 규제 완화 외
<b>정책흐름</b>	78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요구 현황 80 경제안정 종합대책 2008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96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보도 관련 입장 97 6월 및 08년 상반기 소비자물가 동향 및 대응방향 100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 104 신용카드전표 보관의무 폐지 및 공제신청 간소화 106 지방 미분양주택 취 · 등록세, 빠른 곳은 7월 1일부터 감면 107 행안부, 지방세제 개편을 통한 중산 · 서민층 유류비 지원 및 서비스 산업 활성화 도모
<b>재정통계</b>	111 연도별 세목별 조세지출 현황 외
<b>이슈 &amp; 포커스</b>	115 〈하반기경제운용〉 소득세율 1%p 인하되나 외

## 개혁의 초심을 잃지 말아야



**이만우**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2007년 국내경기는 유가, 원자재 가격 상승, 원화강세 등 대내외 경제여건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수출의 호조와 함께 소비·투자 등 내수부문의 견실한 성장세로 경기상승의 국면을 시현하였다. 그러나 올해에 들어와서는 원화약세에 따라 수출은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유가, 원자재 가격의 폭등으로 30년 이래 최악의 대외환경에 직면하면서 소비·투자 등 내수부문에서 현저한 둔화세를 보이고 있어 경기상승 동력이 급격히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물가상승에 따른 가계의 구매력 약화, 기업의 채산성 악화에 따른 투자유인 감소, 고용시장의 신규 인력충원 둔화, 주식시장 불안에 따른 소비심리 악화 등도 안정적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로 갈수록 내수둔화, 물가상승에 따른 기업들의 채산성 악화가 가시적으로 나타나 성장률이 현격히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경기둔화에 대한 정책 선택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이다. 물가상승 우려 때문에 확장적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의 선택이 쉽지 않은 상황이며, 환율정책 역시 수출과 물가 안정을 고려한다면 그 선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여건하에서는 단기적인 거시정책수단으로는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기가 어려우며 물가 불안이나 재정건전성 악화와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통화·재정·환율 등의 거시경제수단을 동원하여 경기부양을 도모하기보다는 규제개혁, 공기업 개혁, 교육 및 R&D 혁신, 경쟁정책 강화, 노동시장정책의 개선, 복지제도의 내실화 등 미시적 정책을 치밀하게 수립하여 성장잠재력을 배양하는 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단기적인 성과를 내기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정치인이나 관료의 입장에서는 매력적이지 못할 수도 있다. 또한 각종 이해집단의 기득권

으로 인해 미시정책에 있어 개혁을 추진하는 일은 정치경제학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최근 쇠고기 사태로 인한 촛불정국에서 벌어진 일련의 상황들은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과 추진동력을 훼손시키고 있어 과연 정부가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하면서 지속적으로 개혁정책을 추진할 것인가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도 다수인 것이 사실이다.

최근 고유가 민생대책으로 내놓은 소득세 환급과 유가보조금 확대 등 일련의 대책들이 촛불을 의식한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적 요인이 내재되어 정책효과가 반감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피할 수 없다.

올 7월부터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유가환급제도는 그 대상 수혜자가 광범위하여 수혜금액이 한 달에 최고 2만원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연간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의 근로자와 종합소득액 2,400만원 이하의 자영업자에게는 각각 최근 유가상승에 따른 유류비 증가분의 절반을 세금 환급을 통해 돌려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전체 근로자의 78%에 달하는 980만명과 전체 자영업자의 87%에 달하는 400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효과의 제고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란 관점에서 수혜계층을 반감하는 선택과 집중으로 보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여기에서 절감된 예산으로 오히려 원자력 발전소 건설, 해외자원 개발, 대체에너지 개발 등 중·장기적인 고유가 대책에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와 차상위 계층에 대해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해주겠다는 정책 또한 촛불을 의식한 인기영합주의란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어디 그 뿐인가. 경제개혁의 핵심과제로 내세웠던 공기업 민영화계획의 연기 움직임이 사실이라면 이것이야말로 촛불의 의미를 퇴색케 하는 정책 선택이 될 것이다.

1979년 2차 석유파동에 버금가는 고유가 등 30년 이래 최악의 국제환경하에서 서민생활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 정책효과가 일과성에 머무르고 실효성이 없거나 도덕적 해이만을 유발하는 정책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

당면한 어려운 대내외 경제 환경을 국민에게 솔직하게 알리고 함께 고통을 나누는 데 앞장서겠다는 용기 있는 지도자의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상황이다. 포퓰리즘적 임기응변의 정책보다

.....  
 당면한 어려운 대내외  
 경제 환경을 국민에게  
 솔직하게 알리고 함께  
 고통을 나누는 데  
 앞장서겠다는 용기 있는  
 지도자의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상황이다.  
 .....

.....

국가의 장래를 진실로  
 염려하는 정책입안자는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지  
 말고 장기적 성과에  
 초점을 맞추어 경제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

는 때로는 국민에게 땀과 눈물을 요구하는 진솔한 자세가 난국을 헤쳐나가는 첩경이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초심으로 돌아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다. 국가의 장래를 진실로 염려하는 정책입안자는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지 말고 장기적 성과에 초점을 맞추어 경제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이해 관계자들의 다양한 견해를 조정하고 설득하며 때로는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진정한 개혁이라면 첫걸음이 크지 않아도 지각변동을 예고하는 개혁의 숨결을 국민들은 느낄 수 있을 것이며 그에 따른 고통도 감내할 것이다.

어떤 정부도 신이 아닌 이상 완벽할 수 없으며 시행착오를 범할 수도 있다. 특히 10년의 공백 기간을 거쳐 집권한 이명박 정부에게는 집권 초기의 과오가 전화위복의 시금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이보전진을 위한 일보후퇴의 아량으로 촛불을 거두어들이고 정부의 후속조치들을 차분히 기다려야 할 시점이다. 촛불이 전하려는 메시지는 모든 국민들은 물론이고 협상 당사국인 미국의 국민들이나 위정자들에게까지 충분히 전달되었다. 숭고한 촛불시위의 정신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고 또 다른 포퓰리즘으로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이 선택한 정부가 저지른 시행착오를 만회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KIPF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 현안분석 |

## ■ 신용보증기금의 재정위험

박기백 ·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 예산절감을 위한 정부구매카드제도의 개선방향

김재진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신용보증기금의 재정위험



박기백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kbpark@kipf.re.kr)

재정위험은 정부가 의도하였던 재정정책의 목적을 일부 또는 전부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을 의미한다.

## I. 서론

재정위험(fiscal risk 또는 fiscal vulnerability)은 정부가 의도하였던 재정정책의 목적을 일부 또는 전부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을 의미한다<sup>1)</sup>. 예를 들어, 과다한 재정적자로 대규모 국채 발행을 하는 경우에는 구축효과가 발생하여 정부가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만약 정부의 정책목표가 경제 활성화라면 과다한 재정적자는 주요한 재정위험이 된다.

Polackova(1998)는 재정위험(채무)을 명시적인 것(explicit)과 암묵적인 것(implicit), 직접적(direct)인 것과 우발적(contingent)인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 정부의 지급 의무가 분명한 것은 '명시적'인 것으로, 정부의 지급 의무가 불분명한 경우는 '암묵적'인 것이 된다. 그리고 정부의 지급 규모가 확정된 것은 '직접적'으로, 정부의 지급 규모가 확률적인 경우는 '우발적'인 재정위험(채무)이 된다. 그리고 재정위험의 관리에 있어서는 드러나 있는 위험보다 우발채무 및 암묵적 채무가 더 중요하므로 다수의 국가가 다양하게 재정위험을 파악, 관리하고 있다.

정부가 운용하는 신용보증제도도 재정위험을 안고 있다<sup>2)</sup>. 정부는 현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등 6개의 공적 신용보증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공적 신용보증을 위하여 정부가 출연한 금액은 2006년의 경우 1조 7,570억원이며, 보증잔액은 약 69.5조원에 달하고 있다. 만약 1997

1) Hemming and Petriel(2000)

2) 신용보증제도란 신용이 약한 기업들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공신력이 있는 제3자가 해당 기업에게 보증을 받는 한편 채무불이행 위험을 지는 제도이다. 이러한 신용보증은 민간이 수행하기도 하지만 정부가 신용보증을 하는 공적 신용보증도 있다.



년 외환위기 시점처럼 경제 사정이 악화된다면 대규모 대위변제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 예상치 못한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용보증기금은 외환위기에 따른 기업부도의 증가로 정부 출연금이 1997년 4천억원에서 1999년에는 거의 1조원 수준으로 증가되었다. 또한 산업은행 등이 신용보증기금에 1998년 약 2조원, 2001년에 7천억원을 특별출연하기도 하였다.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도 대위변제 급증에 따른 신용보증 여력 부족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보증잔액이 감소하고 있는 상태이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도 운용 배수는 20으로 유지하고 있지만 필요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공적 신용보증은 경제적 상황에 따라 손실의 규모가 달라지고, 이에 따라 정부가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재정부담이 적지 않다.

공적 신용보증은 경제적 상황에 따라 손실의 규모가 달라지고, 이에 따라 정부가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재정부담이 적지 않다.

이러한 잠재적 재정부담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공적으로 신용보증을 하는 이유는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형평성에 있다.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경우에는 시장의 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 중소기업 금융의 경우 거래비용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대기업에 비해 객관적인 정보가 부족하고,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은 물적담보를 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이 발달한 선진국에서조차 중소기업 금융은 금융시장에서 시장기능을 충분히 발휘되지 않는 분야로 인식되고, 그에 따라 정부의 개입이 정당성을 얻고 있다<sup>3)</sup>. 반면 농림수산업자에 대한 신용보증은 경제적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의 성격이 강하다.

공적신용보증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보증심의회 내실화, 부분보증의 확대 등 대위변제 규모의 축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여기서는 기존의 논의와는 달리 공적신용보증에 따른 정부의 잠재적 재정부담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생각해 본다.

## II. 이 론

### 가. 재정안정성

신용보증에 의한 재정위험에 대한 대비는 결국 신용보증제도가 재정의 불안정성(위험성)을 얼마나 야기하는가와 동일하다. 따라서 재정안정성이 의미하는 바를 먼저 살펴보자. 정부의 예산제약에 따르면 정부부채의 변화는 다음과 같

3) M, Kirby and D. Angus(1996), The Official Report on Crown Financial Institutions, the Standing Committee on Banking, Trade and Commerce, Canada. (『세계의 신용보증기금제도』, 신용보증기금, 1998에서 재인용.)



Blanchard 등(1990)에 따르면  
 유지 가능한 재정정책이란  
 GDP 대비 부채비율이나  
 부채의 현재가치가 원래 또는  
 일정 수준으로 복귀하도록 하는  
 재정정책을 의미한다.

이 표시할 수 있다<sup>4)</sup>. 아래 식에서 D는 부채, r은 부채에 대한 이자율, G는 이자를 제외한 정부지출, T는 세입이다.

$$\Delta D_t = D_t - D_{t-1} = G_t - T_t + r_t D_{t-1} \quad (1)$$

$$D_t = G_t - T_t + (1+r_t)D_{t-1}$$

위의 식은 재정적자만큼 정부부채가 증가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현재의 정부부채 규모는 과거 재정적자가 누적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자율이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특정 시점 S를 기준으로 위의 식을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sum_0^S \frac{T_t - G_t}{(1+r)^t} = D_{-1} + \frac{D_S}{(1+r)^S} \quad (2)$$

Blanchard 등(1990)에 따르면 유지 가능한 재정정책이란 GDP 대비 부채비율이나 부채의 현재가치가 원래 또는 일정 수준으로 복귀하도록 하는 재정정책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채가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무한대의 미래에 있어서 정부부채의 현재가치가 0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lim_{S \rightarrow \infty} \frac{D_S}{(1+r)^S} = 0 \Rightarrow \sum_0^S \frac{T_t - G_t}{(1+r)^t} = D_{-1} \quad (3)$$

위의 식이 의미하는 것은 유지가능한 재정정책이 되려면 기초재정수지의 현재가치가 현재의 부채수준과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기초재정수지를 흑자로 운용하여야 재정안정성이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나. 신용보증의 비용

Merton(1977)이 예금보험 및 신용보증의 비용에 대해 연구한 것에 따르면 신용보증은 용자를 뒷받침하는 자산에 대한 풋옵션(put option)에 해당한다고 한다. 그러나 Option Pricing 방식은 계산이 너무 복잡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Cohen(2002)이 사용한 방법을 활용한다. 가정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신용보증의 액면 규모가 X인 보증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채무 불이행이 발생할 확률은 p이고, 미래에 구상채권이 회수되는 것은 없다고 가정한다. 논의의 편의

4) 정부의 예산제약식 또는 국가채무에 대한 동태식(Debt Dynamics), Blanchard et al. (1990) 참조.



를 위하여 보증료나 금융기관 출연금, 운용비용 등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다시 말하면,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의 재정부담은  $pX$ 만큼이다. 이 경우 채무불이행이 늦게 발생할수록 재정부담의 현재가치는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신용보증의 비용( $C$ )은 대위변제가 발생할 기대값의 현재가치라고 할 수 있다.

$$C_t = E_t(X) = \sum_0^{\infty} \frac{p(t)X}{(1+r)^t} \quad (4)$$

따라서 재정안정을 위한 세입의 규모를  $R$ 이라고 하면, 기존 지출에 신용보증이 추가될 경우 정부의 재정안정식은 다음과 같다.

$$\sum_0^{\infty} \frac{R_t - G_t}{(1+r)^t} = D_{-1} + \sum_0^{\infty} \frac{p(t)X}{(1+r)^t}, \quad \sum_0^{\infty} \frac{R_t - T_t}{(1+r)^t} = \sum_0^{\infty} \frac{p(t)X}{(1+r)^t} \quad (5)$$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추가적인 세입( $\Delta_t = R_t - T_t$ )의 현재가치가 신용보증의 비용과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직관과도 부합하는 결과이다. 만약 정부가 기대값보다 낮게 예산을 배정하면 장기적으로 재정안정이 유지되지 못하므로 한 시점에 낮은 예산 배정은 다음 시점의 높은 재정부담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정부가 일정 액수의 재정부담( $W$ )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적인 세입과 정부의 실제 부담액수와의 차이가 잠재적 재정부담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신용보증의 규모가 변동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신용보증의 기간은 1년이며, 다음 연도에 다시 신용보증 공급을 하는 것으로 가정하자. 또한  $t$  시점 당기의 채무불이행 확률은  $p(t) = \lambda_t$  라고 가정한다. 이렇게 가정하면, 각 시점에서 신용보증의 비용은  $\lambda_t X_t$ 가 되고, 재정안정을 위한 식 (5)는 다음과 같이 변하게 된다.

$$\sum_0^{\infty} \frac{R_t - T_t}{(1+r)^t} = \sum_0^{\infty} \frac{\lambda_t X_t}{(1+r)^t} \quad (6)$$

따라서 정부가 신용보증제도를 유지하며,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용보증으로 인한 비용만큼 정부의 세입이 증가하여야 한다. 만약 매 시점 균형을 이루려면 매 시점의 추가 세입이 매 시점의 대위변제 기대값과 같으면 된다( $\Delta_t = \lambda_t X_t$ ).

만약 정부가 기대값보다 낮게 예산을 배정하면 장기적으로 재정안정이 유지되지 못하므로 한 시점에 낮은 예산 배정은 다음 시점의 높은 재정부담으로 이어진다



신용보증으로 인한 정부의 재정부담은 기본재산 대비 보증잔액을 의미하는 운용배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정부의 재정부담은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확률과 보증규모에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식 (6)은 정부의 신용보증제도 운용에도 여러 가지 시사점을 준다. 먼저 신용보증으로 인한 정부의 재정부담은 기본재산 대비 보증잔액을 의미하는 운용배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식 (6)에 따르면 정부의 재정부담은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확률과 보증규모에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정부의 재정부담을 축소하기 위하여 운용배수를 증가시키는 것은 재정부담을 이연하는 것이지 축소한 것이 될 수 없다.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채무불이행 확률이 높아지면 정부의 재정위험이 커지게 된다. 이러한 채무불이행 확률은 경기 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보증공급 규모를 확대하면 정부의 재정부담이 증가한다. 또한 보증공급 규모를 확대하면, 이전보다 위험한 대출자에 대하여 보증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채무불이행 확률도 높아지게 되는 효과로 인하여 재정부담이 가중되게 된다.

### III. 재정위험

#### 가. 공적신용보증 현황

신용보증의 단위비용은 보증 공급이 증가할수록 커지는데, 이는 보증 공급을 확대하면 대위변제의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반면 수요는 보증요율이 낮아질수록 커질 것이다. 외부효과를 감안한다면 사회적 보증수요는 시장의 보증수요보다 클 것이다. 따라서 보증료 증가분에 보증규모를 곱한 금액을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정부의 출연 규모는 공공성이 클수록 시장의 보증수요에 따라 결정된 보증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져야 한다.

자료를 보면 2006년 현재 중앙정부에서 운용하는 공적 신용보증의 총 규모는 69.4조원이다.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보증 규모가 약 29.6조원으로 가장 많으며, 농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보증규모가 15.1조원으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 출연금을 제외한 공적신용보증의 발생 비용으로 볼 수 있는 당기 순익자료를 보면 농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약 7,980억원 적자로 가장 규모가 크고, 다음이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 당기순익 규모가 4,522억원 적자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소규모이지만 73억원 흑자로 나타나고 있어 다른 신용보증제도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1〉 공적 신용보증제도의 주요 지표

(단위: 억원, 배)

	신보	기보	주택신보	농수산	산업기반	학자금	합계
보증잔액	296,340	111,508	81,107	151,703	33,941	19,500	694,099
기본재산	37,196	11,526	3,814	7,586	2,746	1,633	64,501
운용배수	8.0	9.7	21.3	20.0	12.4	11.9	
총조성	36,137	16,041	8,288	11,984	1,075	2,988	76,513
정부출연금	3,000	6,000	1,000	5,780	300	1,490	17,570
금융기관출연금	5,370	2,008	1,380	849			9,607
당기순익	△2,815	△4,522	△1,668	△7,980	73	△14	

자료: 『기금운영계획 2007』, 대한민국정부  
 『기금, 국유재산, 물품 및 채권검사보고』, 감사원  
 『기금현황』, 기획예산처,  
 신용보증기금 통계자료 및 연차보고서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기업부도의  
 증가로 대위변제할 금액이  
 증가하여 운용배수가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개별 신용기금의 특징적인 상황을 살펴보자. 먼저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기업부도의 증가로 대위변제할 금액이 증가하여 운용배수가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의 출연금을 1997년 4천억원 수준에서 1998년에는 8천억원 이상, 1999년에는 거의 1조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증액시켰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의 안정을 위하여 산업은행 등의 특별출연도 있었다. 그 규모는 1998년 약 2조원, 2001년 7천억원에 달한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잔액을 보면 2000년도에 약 15.4조원이었으나 이후 증가하여 2002년에는 17조원을 다소 상회하는 수준에 이른다. 그러나 이후 급속히 감소하여 2004년에는 약 11.8조원으로 낮아졌고, 2006년에는 8.1조원을 다소 상회하는 수준에 이른다. 최근 보증규모가 축소된 이유는 대위변제 급증에 따른 신용보증 여력 부족, 정부의 주택대출비율 규제 등에 영향을 받은 결과이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도 1998년 외환위기 및 2002~2003년 카드 사태 발생에 따라 사고 및 대위변제 금액이 증가하였다. 1997년 외환위기 직후에는 IBRD 차입금을 보증재원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도 보증잔액이 2000년 약 14.5조원에서 2002년 19.4조원으로 증가한 다음 점차 낮아져 2006년에는 15.2조원 수준이 되었다. 이렇게 보증잔액이 낮아진 이유는 법적 운용배수인 20을 준수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운용배수가 20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필요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실질적인 운용배수는 2006년에 96에 이를 정도로 문제가 많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농어업인의 부채부담완화 및 연대보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등의  
경우를 보면 출연금을 증대하고,  
특별출연을 하고, 보증료를  
인상하고, 운용배수가 법정  
운용배수에 다다른 등의  
현상이 많았다.

증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1998년부터 농어가부채대책 특례보증을 실시하여 2004년까지 총 17조 5,866억원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표 2〉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주요 지표 추이

(단위: 억원, 배)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보증잔액	144,615	186,066	193,889	191,004	192,241	178,088	151,703
기본재산 (실제 기본재산)	9,048	11,508	11,438	9,550 (7,789)	9,612 (2,850)	8,905 (2,394)	7,586 (1,580)
운용배수 (실제 운용배수)	16.0	16.2	17.0	20.0 (24.5)	20.0 (67.0)	20.0 (74.4)	20.0 (96.0)
총조성	10,527	13,506	16,425	7,382	10,842	14,068	11,984
정부출연금	4,260	3,765	2,562	1,000	3,478	4,000	5,780
금융기관출연금	191	203	228	320	438	517	849
당기순손실 (실제 순손실)				3,208 (4,969)	3,854 (10,616)	5,188 (11,698)	7,980

자료: 『기금운영계획 2007』, 대한민국정부  
『기금, 국유재산, 물품 및 채권검사보고』, 감사원  
농협 자료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등의 경우를 보면 출연금을 증대하고, 특별출연을 하고, 보증료를 인상하고, 운용배수가 법정 운용배수에 다다른 등의 현상이 많았다. 앞에서 살펴본 수식 (6)에 비추어 생각해 보면, 이는 신용보증에 대한 매년도 정부의 예산 배정이 실질적인 비용에 미달하고 있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사회간접자본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경우 사업시행자의 신용을 보증하는 제도이다. 보증잔액을 보면 2000년 약 3천억원 수준에서 2006년에는 3.3조원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운용배수도 2000년 2.6에서 점차 증가하여 2006년 현재는 12.4이다. 다른 기금에 비교해 보면 금융기관 출연금이 없으며, 당기 순익을 내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 나. 재정부담 추산

재정부담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하나는 주요한 경제 상황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기존의 제도를 유지할 때 정부가 출연하여야 하는 재정 규모이다. 물론 금융기관 출연금 요율이나 보증수수료를 조정하여 정부출연 규모를 축소시킬 수는 있지만 금융기관 출연금 요율이나 보증수수료를 조정하는 것 또한 재정정책적 측면에서의 위험 요소로 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예상치 못한 경제상황의 변화로 정부 부담이 증가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대위변제율이 현재보다 증가하는 경우이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매 시점을 기준으로 한 정부의 재정적 위험은 대위변제기대값이다( $\Delta_t = \lambda_t X_t$ ). 따라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대위변제가 발생할 확률을 계산하는 것이다. 공적신용보증을 담당하는 기관은 예상 성장률이나 기업의 특성 등을 활용하여 대위변제의 확률을 추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sup>5)</sup>. 여기서는 자료의 제약 등으로 이러한 확률을 계산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과거의 자료를 이용하여 공적신용보증의 비용을 대략적으로 추산해 본다. 만약 기간이 장기이고, 현재 운용배수가 안정적이라면 특별 출연을 포함한 기존의 정부부문의 출연 규모는 공적신용보증제도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예시적으로 신용보증기금의 경우만 살펴본다<sup>6)</sup>. 보증규모 대비 정부 출연의 규모(산업은행 출연을 포함)에 대한 자료를 보면 평균적인 정부 출연금 비율은 1.7%이다. 따라서 과거 10년을 기준으로 할 때 재정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용보증기금을 운영하려면 보증규모 대비 정부 출연의 규모가 1.7%가 되어야 한다. 2007년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보증잔액이 28.5조원이므로 필요한 정부출연의 규모는 4,900억원 수준이 된다. 이는 정부의 실제 출연금 규모인 3천억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출연의 규모는 2000년도 초반에는 5천억~6천억원(2001년도의 특별출연 7천억원 제외)이었으나 최근에는 3천억원 수준으로 낮아지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에는 신용보증기금 재정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연의 규모가 큰 상태였으나 경제가 안정을 되찾으면서 출연의 규모가 축소된 것이다. 따라서 경제가 급격히 악화되는 시점이 없다면 최근처럼 정부가 3천억원 수준으로 출연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모의 출연은 심각한 경기침체시의 비용을 반영하지 않으므로 실질적인 재정부담이라고 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미래의 재정위험을 없애려면, 심각한 경기침체에 대비하여 매년 일정 규모의 적립이 필요하다. 3천억원 수준의 출연 규모는 보증잔액의 1.0%에 해당하므로 최근 8년간만을 기준으로 하면 예상치 못한 경제상황에 대비하여 적립하여야 할 규모는 매년 보증잔액의 0.7%가 된다. 보증

재정부담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하나는 주요한 경제 상황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기존의 제도를 유지할 때 정부가 출연하여야 하는 재정 규모이다. 다른 하나는 예상치 못한 경제상황의 변화로 정부 부담이 증가하는 것이다.

5) 추정된 대위변제 규모에서 각종 운영비용 등을 더한 다음, 보증료 수입과 금융기관 출연금을 차감하면 필요한 정부 출연의 규모가 계산된다. 이렇게 계산된 정부 출연의 규모와 실제 정부 출연 규모를 비교하면 정부 출연 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다.  
6) 기간이 충분히 길 경우에는 다른 모든 기금도 동일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정부가 신용보증제도를 운용할 때 재정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정부의 출연금 규모는 예상 비용에서 수입을 차감한 규모가 되어야 하며, 예상치 못한 경제 변화에 대비하여 매년 일정액을 적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잔액이 30조원이라면 약 2,100억원 수준의 적립이 필요하다. 물론 외환위기 이후 시점이 기준이 되고 있으므로 신용보증기금의 재정악화에 대비한 적립의 규모는 이보다 작을 수 있다. 앞서서도 이미 논의한 것처럼 향후 더 풍부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상적인 경제상황하에서 필요한 출연금 규모와 예상치 못한 경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적립 규모를 정밀히 추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3〉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잔액 대비 정부출연 비율

(단위: 억원,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보증잔액	225,912	312,679	325,142	327,337	335,708	310,988	296,340	285,000
정부출연	5,100	12,230	5,250	6,560	5,210	3,000	3,000	1,300
출연비율	2.3	3.9	1.6	2.0	1.6	1.0	1.0	0.5

####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공적신용보증의 재정부담 또는 재정위험을 살펴보았다. 정부는 공적 신용보증제도를 운용하기 위하여 2006년의 경우 1조 7,570억원의 재정부담을 지고 있다. 또한 공적신용보증제도의 보증잔액은 약 69.5조원에 이르고 있으므로 경제 사정이 악화된다면 대규모 대위변제로 인한 재정부담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재도 다수의 공적신용보증제도가 대위변제 급증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면 관리비용이나 운용수익 등을 제외할 경우 신용보증제도의 비용은 대위변제 기대값이며, 수입은 보증료가 된다. 그리고 대위변제 기대값에서 보증료 수입(금융기관 출연금 포함)을 차감한 금액이 정부의 재정부담이 된다. 이러한 재정부담은 운용배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특별 출연을 포함한 정부부문의 기존 부담이 신용보증제도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나타낸다고 생각하고 신용보증기금을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2007년의 경우 필요한 정부 출연의 규모는 실제 출연금 규모인 3천억원보다 많은 4,900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정부가 신용보증제도를 운용할 때 재정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정부의 출연금 규모는 예상 비용에서 수입을 차감한 규모가 되어야 하며, 예상치 못한 경제 변화에 대비하여 매년 일정액을 적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가 반드시 적립을 통하여 재정



위험에 대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 연구는 공적신용보증제도로 인한 비용이 단순히 정부출연금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제도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KIF**

### <참고문헌>

- 류덕현 · 박기백, 『재정위험 요인분석-정부신용보증기금과 공기업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 2006. 7.
- 박형수 외, 『재정위험 측정 및 관리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7. 12.
- 홍법교 · 박기백 · 전택승, 『신용보증 운용성과와 적정 출연금 산정방식』, 한국조세연구원, 2003. 10.
- Becker Torbjörn, “Public Debt Management and Bailouts,” IMF Working Paper, WP/99/103, July 1999.
- Blanchard, Oliver, Jean-Claude Chouraqui, Robert P. Hagemann and Nicola Sartor, “The Sustainability of Fiscal Policy : New Answers to An Old Question,” *OECD Economic Studies*, No.15, Autumn 1990.
- Buiter, Willem H., “Notes on “A Code For Fiscal Stability,” NBER WP 6522, April 1998.
- Cohen, Daniel, “Fiscal Sustainability and a Contingent Trust Fund,” *Government at Risk*, Brixi and Schick edited, World Bank,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 Doran, A. and J. Levitsky, “Credit Guarantee Scheme for Small Business Lending-A Global Perspective,” Vol. I, Graham Bannock and Partners, Ltd., 1997.
- Hemming, Richard and Murray Petrie, “A Framework for Assessing Fiscal Vulnerability,” IMF WP/00/52, March 2000.
- Kirby, M and D. Angus, “The Official Report on Crown Financial Institutions,” the Standing Committee on Banking, Trade and Commerce, 1996.
- Kruger, Coen, “Valuing and Managing Risk Associated with Government Contingent Liabilities,” Presentation at the Second Sovereign



- Debt Management Forum, Washington, D.C., November 1-3.  
World Bank, 1999.
- Merton, Robert C., "An Analytical Derivation of the Cost of Deposit Insurance and Loan guarantees,"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1, 1977, pp. 3~11.
- Mody, Ashoka, and Dilip Patro, "Valuing and Accounting for Loan Guarantees." World Bank Research Observer 11 (February): 1996, pp.119~142.
- Polackova, Hana, "Contingent Government Liabilities: a Hidden Risk for Fiscal Stability."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1989, World Bank, Washington, D.C., 1998.
- World Bank and IMF, "Guidelines for Public Debt Management," 2000.  
<[www.worldbank.org/fps/](http://www.worldbank.org/fps/)>



# 예산절감을 위한 정부구매카드제도의 개선방향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kimjaejin@kipf.re.kr)

## I. 서론

현 정부는 내년까지 20조원의 예산절감 목표를 제시하였다. 세부적으로는 모든 정부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일부 사업은 중단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으며,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하기로 하였다. 또한, 지속적인 예산절감을 위하여 제도개선과 선진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을 정하였다. 절감된 재원은 감세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성장동력의 확보 등 국정과제 추진에 사용할 예정이다. 요약하면, 현 정부가 추진하는 예산절감의 목적은 낭비성 사업은 최대한 줄이고, 추가 재정의 부담 없이 서비스 수준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려는 것이다.

정부구매카드는 개편된 국가재정관리체계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한 국가재정관리를 위하여 정부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이다. 미국에서는 이미 1980년대부터 정부구매카드제도를 시행하였으며, 우리나라는 미국의 제도를 참조하여 정부구매카드제도를 도입하였다. 우리나라 정부구매카드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의 제도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정부구매카드제도는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소액 물품을 조달하기 위하여 1980년대 후반에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후 국가업무평가위원회가 소규모 물품경비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업무처리 수단으로 구매카드를 도입하면서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었다. 정부구매카드제도는 소액 구매와 관련된 문서절

정부구매카드는 개편된  
국가재정관리체계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한 국가재정관리를  
위하여 정부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고금의 투명한 관리 및 세수 확보를 위해

2003년 1월 대통령령으로

「국고금 관리법」을 시행함으로써

기존의 국가공공기관 법인카드제도를

전면폐지하고, 국가기관은

의무적으로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차의 간소화를 통해 비용절감 및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는 시스템으로 당시 여러 정부기관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고금의 투명한 관리 및 세수 확보를 위해 2003년 1월 대통령령으로 「국고금 관리법」을 시행함으로써 기존의 국가공공기관 법인카드제도를 전면폐지하고, 국가기관은 의무적으로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본고에서는 「국고금 관리법」에 의거하여 2003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부구매카드제도를 예산절감 측면에서 검토해보고 조달업무의 효율적 개선방안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 II. 미국의 Government Purchase Card 제도

### 가. 도입배경

미국 정부가 정부구매카드(Government Purchase Card; GPC)를 도입하기 이전의 물품 단순구매는 3단계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기존의 이러한 3단계 구매절차는 소액의 물자를 조달하기 위하여 과도한 행정업무와 행정비용을 유발한다는 점과 상당부분의 구매가 일부 국가산업체로 제한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고,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림 1] 구매카드제도 시행이전의 물품구매 과정



이에 따라 미국 조달청(Government Services Administration; GSA)은 소액구매의 지불절차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986년 Pilot Program으로



시행하였으며, 1989년부터 본격적으로 정부구매카드제도를 시행하여 현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공공기업에서도 동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미국의 정부구매카드제도는 연방정부 예산사용에 관한 통제·감독·관리의 향상을 위한 도구적 장치로 활용되면서 정부와 각 연방기관의 지시와 법령에 상응하여 1980년대 후반부터 급속하게 확대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 나. 발전과정

미국은 정부구매카드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기존의 3단계 구매절차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복잡한 행정서류절차를 간소화시킴으로써 과도한 행정비용과 구매주문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절감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정부구매카드제도는 연방정부 예산사용에 관한 통제·감독·관리의 향상을 위한 도구적 장치로 활용되면서 정부와 각 연방기관의 지시와 법령에 상응하여 1980년대 후반부터 급속하게 확대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 1) 효율적 정부물품 구매·조달방안 논의

1982년 행정명령에 의하여 정부구매카드를 통한 소규모 물품구매 논의가 시작되었다. 상무부에서 1986년 구매카드제도의 실현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시범운영을 하였으며, 결과가 성공적으로 나타남으로써 정부구매카드(Government Purchase Card)의 사용이 기타 조달방법보다 우수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1989년 예산관리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는 범정부적 조달권한으로 조달청에 소액물품구매시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할 것을 요청하였다. 주로 재화와 서비스 조달시 사용하는 purchase card는 전체 구매금액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부출장 경비와 차량 유지보수로 사용하는 travel card와 fleet card는 각각 26%와 4%를 차지하고 있다.

〈표 1〉 지출항목별 카드종류

	세 부 내 역
Purchase Card	재화, 서비스의 조달
Travel Card	공식적인 정부출장 경비
Fleet Card	차량의 연료 및 유지보수
Integrated Card	위의 카드를 편의성 측면에서 통합

자료: www.gsa-smartpay.com



정부구매카드의 도입으로  
과거 정부조달기관을 통한  
업무처리방식이 각 정부부처가  
납품업체로부터 직접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대체되었다.

2) 정부구매카드제도 시행

정부구매카드의 도입으로 과거 정부조달기관을 통한 업무처리방식이 각 정부부처가 납품업체(vendors)로부터 직접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대체되었다. 연방정부의 구매카드 사용은 1993년 클린턴정부가 부통령 앨 고어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업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업무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National Performance Review(NPR)<sup>1)</sup>란 보고서에 제시하였으며, 정부구매카드제도의 도입도 그 보고서에서 제시한 정책 중 하나로서 도입되었다. 특히 동 보고서(NPR)는 2,500달러 이하의 소액구매에 대해서는 정부구매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러한 권고는 구매카드의 사용이 정부기관에서 필요한 물자와 용역을 획득하는 데 좀 더 저렴하고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3) 소액구매에 대한 확대 적용

1993년 연방조달정책국(Office of Federal Procurement Policy; OFPP)은 공약 프로그램(Pledge Programme)을 통하여 정부구매카드의 사용 확대정책을 추진하였다. 초기에는 상무부, 재무부, 내무부 등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나 이후 인사관리처, 연방위기관리국 등 점차 참여부처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후 구매량의 증가에 힘입어 프로그램 참여기관들은 업무책임자와 非조달업무 직원에게도 카드를 발급하여 사용을 권장하면서 구매카드 사용이 대폭적으로 확대되었다.

4) 제도개선

재무부의 조달집행관이 구매카드자문위원회(Purchase Card Council; PCC)를 설립하여 정부구매카드 사용을 확대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동 위원회(PCC)의 임무는 연방정부부처가 서명한 프로그램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등 다음과 같은 내용에 중점을 두었다.

〈구매카드자문위원회의 역할〉

- ① 카드사용 장려
- ② 진전사항에 대한 논의
- ③ 카드홍보
- ④ 비용-편익분석 수행
- ⑤ 카드사용과 관련한 행정 및 규제장벽에 대한 이의제기

1) 클린턴 대통령은 미국 행정부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1993년 3월 앨 고어 부통령을 책임자로 하는 국가성과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6개월간 연방정부를 평가하고 정부 개혁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개발하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를 보고서 내용으로 담은 것이 National Performance Review (NPR)로 출간되었으며, 그 내용이 대부분이 정책화되었다.



그러나 초기의 정부구매카드제도는 실무적으로 다양한 난관에 부딪쳐 확산되지 못하였다. 구매카드자문위원회(PCC)는 초기 정부구매카드의 확산 저해요인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였다.

〈정부구매카드사용시 수반되는 문제점〉

- ① 카드사용에 대한 연방조달규정 범위의 결여
- ② 카드수용에 대한 관련부처 직원들의 회피
- ③ 복잡한 논쟁 프로세스
- ④ 판매세를 부과하고 환불해주지 않는 판매상

정부구매카드를 통한 거래금액은 동 제도가 도입된 이후 꾸준히 상승하여 2000년에는 약 122억달러 수준이었으나 2007년에는 약 187억달러까지 증가하였다.

이후 정부기관들이 구매카드 사용 확대를 위하여 정보를 상호공유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속적인 연구 성과에 힘입어 정부구매카드제도는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다. 즉, 미국 정부는 조달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1994년에 연방조달개선에 관한 연방조달간소화법(Federal Acquisition Streamlining Act; FASA)과 대통령령(Executive Order; EO)을 개정하였다. 연방조달간소화법(FASA)은 혁신적 조달기술을 소개하고 225개 이상의 법령을 수정하였으며, 시장구매가 가능한 소규모 구매절차를 단순화하였다. 이처럼 법령개정을 통한 구매절차의 변화는 정부기관들의 소액 구매에 대한 정부구매카드 사용기회를 크게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대통령령(EO)은 정부구매카드의 사용 확대를 장려하고, 소액물품 구매에 대한 구매카드의 사용을 확대할 것을 권고하였다.

**다. 현황**

미국정부의 정부구매카드 사용실적은 지난 10여년간 급속하게 성장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조달총액뿐 아니라 거래량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은 카드사용 자격을 충족하는 직원의 수를 증가시킴으로써 구매카드의 사용을 촉진하고 장려하였다.

정부구매카드를 통한 거래금액은 동 제도가 도입된 이후 꾸준히 상승하여 2000년에는 약 122억달러 수준이었으나 2007년에는 약 187억달러까지 증가하였다. 정부구매카드 담당자 수는 2000년보다 오히려 감소하였는데, 그 이유는 연방정부가 구매카드 발급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고 미사용 카드를 회수함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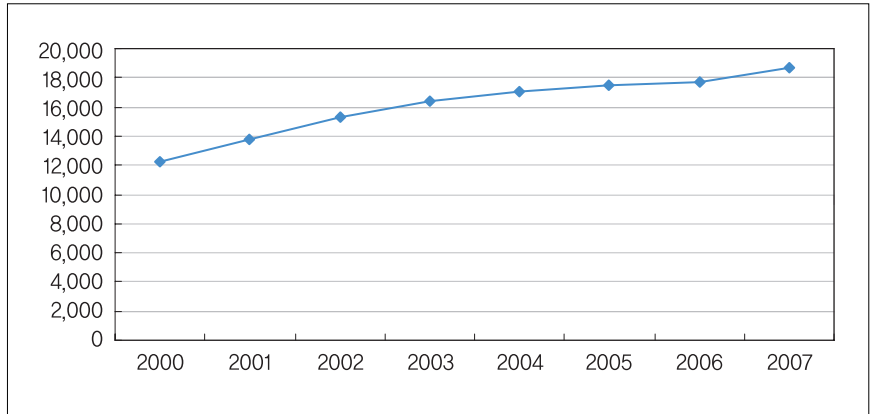


신용카드는 거래승인 요청 시  
신용카드사에서 금액한도초과  
여부를 체크하지만, 정부구매카드는  
해당 카드발행 정부기관에서  
설정된 기준에 따라 예산통제  
또는 물량통제를 받는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따른 것이다.

[그림 2] 구매카드 사용실적<sup>2)</sup>

(단위: %)



	업무담당자(명)	거래량(천건)	금액(백만달러)
2000	670,374	23,457	12,289
2001	414,787	24,444	13,788
2002	392,576	25,752	15,248
2003	326,850	26,494	16,371
2004	310,861	26,524	17,083
2005	301,216	25,932	17,433
2006	299,564	25,343	17,758
2007	283,861	24,726	18,693

자료: www.gsa-smartpay.com

2) travel, fleet 카드는 통계집계에서 제외

3) 즉, 가맹점에서 정부구매카드에 의한 거래승인 요청 시 동 정보는 기존의 신용카드 인프라를 통하여 신용카드사에 접수되고, 신용카드사는 동 승인요청 정보를 해당카드를 발행한 정부기관으로 전송하여, 해당 정부기관의 예산통제를 거쳐 신용카드사로 전송을 하고, 다시 신용카드 인프라를 통하여 가맹점에 승인정보를 전송하게 된다.

4) 예를 들면 업종통제 (Merchant Category Control: MCC)로서 보석상점 또는 유흥음식점 등에서의 정부구매카드 사용을 규제하는 것이다.

5) 예를 들면 물량통제(Quantity Control)로서 주유소에서 특정카드에 허용된 유류사용한도를 설정하거나, 문구류 구매 시 해당 부처별로 허용된 품목별 물량한도를 설정하여 이를 초과할 경우 결제승인이 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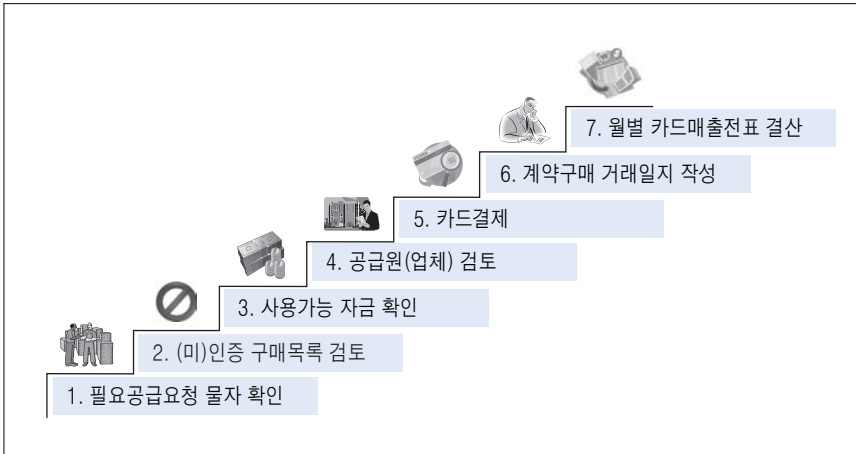
### 라. 구매절차

미국의 정부구매카드는 기존의 신용카드 인프라에 의존하여 운용되고 있다<sup>3)</sup>. 일반적인 신용카드는 거래승인 요청 시 신용카드사에서 금액한도초과 여부를 체크하지만, 정부구매카드는 해당 카드발행 정부기관에서 설정한 기준에 따라 예산통제<sup>4)</sup> 또는 물량통제<sup>5)</sup>를 받는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여 계약 및 구매업무를 수행할 경우 일반적으로 아래의 7단계의 업무처리 과정을 밟아 진행한다.



[그림 3] 구매카드에 의한 구매절차 7단계



정부구매카드는 일반적으로 관서운영에 필요한 모든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에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으나, 연방조달규정에서는 사용불가 물자항목을 명시하여 정부구매카드 오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1단계는 구매가 필요한 물품의 공급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단계로서, 필요한 물자에 대한 정확한 사양과 수량, 예상가격 및 출처 등을 명시하여 공급을 요청하며 이 절차는 정부구매카드 주문요청 및 수령 확인서를 작성함으로써 완성된다. 2단계는 미인증 구매목록이 있는지 검토한다. 즉, 정부구매카드는 일반적으로 관서운영에 필요한 모든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에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으나, 연방조달규정에서는 사용불가 물자항목을 명시하여 정부구매카드 오용(misuse)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미인증 구매목록〉

- ① 현금, 여행자수표
- ② 연간 \$2,500 초과하는 계약
- ③ 개별적인 여행비용
- ④ 전문서비스에 대한 비용(의학, 법률, 디자인 등)
- ⑤ \$2,000 이상의 공사비용

3단계는 사용가능한 예산의 유효성을 판단한 후 실질적인 구매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예산이 배정되지 않으면 구매를 위한 다음 절차로의 진행은 불가능하다. 4단계는 공급업체를 검토하는 단계로, 연방조달규정에는 필요물



정부구매카드제도는 사전적인 Vendor Negotiation을 통하여 기존의 구매절차와 방법에 비하여 획기적인 예산절감이 가능하다.

자는 우선순위 업체 순으로 구매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카드보유자는 반드시 필요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 중에서 우선순위 업체 순으로 발주를 하게 된다. 카드보유자들은 충분한 자격을 갖춘 업체들 가운데 가능한 다양한 업체에 순차적으로 발주를 하고 있다.

〈우선순위업체 목록〉

- ① 지구별 자급식 공급센터(Agency Inventories)
- ② 연방교도소 산업체
- ③ 국내맹인산업체연합/국내중증장애인산업체연합
- ④ 연방공급서비스
- ⑤ 대규모 도매공급업체
- ⑥ 일반 상업적 업체

5단계는 결제단계로, 카드결제는 전화, 팩스, 인터넷을 통한 구매에서 사용 가능하며 구매결과 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필요물품 구매 시에는 반드시 구매카드를 사용한 것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6단계는 물품구매계약을 하고 이에 대한 구매일지를 작성한다. 대장 작성은 내부통제 기능을 수행하므로 필수적인 사항이며 거래가 체결된 뒤에는 반드시 최신 현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7단계는 월별로 정부구매카드 매출전표를 결산한다. 카드소지자는 전반적인 계약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구매대장을 결산하며, 이후 지급청구 금액을 중간관리자에게 제출한다. 중간관리자는 3일 이내에 물품구입 내역을 검토하여 카드소지자로부터 받은 지급청구서와 카드은행사의 지급청구서를 상호 대사하여 확인한다.

마. 도입효과

미국정부는 정부구매카드제도를 공공부문에 도입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창출하여 효율적인 조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첫째, 정부구매카드 도입효과로 예산절감을 들 수 있다. 정부구매카드제도는 사전적인 Vendor Negotiation<sup>6)</sup>을 통하여 기존의 구매절차와 방법에 비하여 획기적인 예산절감이 가능하다. 미국정부는 기존의 구매주문 거래방식 대신에 정부구매카드를 도입함으로써 소액구매지출에 있어서 매년 약 1억 3천만달러

6) Vendor Negotiation의 사례로는 해당부처의 전체 승용차 유류소비량을 기준으로 사전 단가협상을 하고, 해당 주유소에서 주유 시 해당 단가를 적용하거나, 해당 부처 인근의 음식점과의 메뉴별 단가를 협상 및 적용하거나, 대형할인점과의 문구 종류별 단가를 협상 및 적용하는 것이다.



를 절감하게 되었다. 이처럼 정부구매카드제도를 이용함으로써 행정절차의 단순화 및 행정비용을 절감이 가능한 것은 정부구매카드를 이용하여 구매한 물품에 대한 Level III(Line Item) 정보를 입수하여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7)</sup>. 이러한 Line Item 정보는 사전지출 통제, 사후적인 감사 또는 차년도 예산수립 등과 관련된 행정노력 및 행정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게 된다.

둘째, 사용금액의 일정비율을 환급받음으로써 재정수입의 증대를 가져왔다. 카드사들은 정부구매카드 사용금액의 일정비율을 해당 부처에 환불(rebate)해 준다. 따라서 정부는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면서 얻게 되는 환급금을 통해 재정수입이 증대된다<sup>8)</sup>.

셋째,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접속(electronic access to data) 방식으로 구매물품에 대한 상세 거래내역을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행정비용의 절감은 물론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넷째, 정부구매카드는 전도금이나 현금소지의 필요성을 없애준다는 측면에서 매우 안전한 지불수단이다. 따라서 부정사용의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활용성이 매우 높다.

다섯째, 정부구매카드를 이용하면 지역적 제약 없이 물품의 조달이 가능(worldwide acceptance)하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며, 동일한 물품을 가장 저렴한 곳에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달성할 수가 있다.

## 바.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

정부구매카드제도의 전반적 발전과 잠재적인 효율성 증진을 위해 2006년 CPAG(Corporate Partner Advisory Group)는 정부구매카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소액구매(micro-purchase)의 금액한도 제한을 2,500달러 이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더 많은 물류 공급업체들이 level-III 품목명세 자료를 공급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Level-III 품목명세 자료는 품목설명서, 수량, 측정단위, 가격 등과 같은 세부적인 구매정보를 제공하며 이러한 정보는 주요 정부기관 부서가 회계 및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이며 지급정보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합시키는 데 유용하기 때문이다.

**카드사들은 정부구매카드 사용금액의 일정비율을 해당 부처에 환불해 준다. 따라서 정부는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면서 얻게 되는 환급금을 통해 재정수입이 증대된다.**

7) Level III 정보란 개별 항목별 정보로서, 문구류가 아니라 복사지 1박스 또는 볼펜 1박스 등의 품목별 정보를 의미한다. 이러한 정보의 입수는 Vendor Negotiation시 POS(판매정보실시간 관리시스템) 등에 의하여 해당 정보를 카드 발급기관에 전달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가능해진다.

8) 실제로 2001년의 경우 미국 정부는 카드사로부터 총 7,500만달러를 환급받았다.



2003년 1월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도입함에 따라 정부부처 예산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중앙정부기관은 20개 특정비목에 대하여 정부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예산을 지출하도록 하였다.

〈표 2〉 단계별 세부정보 내역

구 분	Level - I	Level - II	Level - III
추가내용	거래내역(transaction)	구입내역(purchase)	상품내역(product)
상세내용	총구입액 구입일시 공급자이름	판매세 구매자 정보 조세 ID 번호 구매처 우편번호	상품단위 상품코드 상품구매량 상품설명서

자료: www.gsa-smartpay.com

둘째, 일부 기관들은 독자적으로 정부구매카드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불필요한 통제력의 강화가 오히려 비생산적일 수 있다는 것에 기인한다. 또한 정부기관을 선별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방안임을 언급하며 카드의 오용에 대한 취약성이 각 정부기관별로 상이하므로 전체적으로 통제를 하는 것보다는 선별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것이 효율적임을 제안하였다.

셋째, 개인 혹은 소규모 사업자는 높은 카드 가맹점수수료 때문에 정부구매카드를 지불수단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은행과 협의하여 소규모 공급업체에 유리한 수수료를 책정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 Ⅲ. 우리나라 정부구매카드제도

#### 가. 도입 배경

기존 공공기관의 일상경비에는 지출편의적인 측면에서 지급경비의 종류가 불필요하게 중복 운영되어 정부예산의 관리에 허술함이 많았을 뿐 아니라 지급 방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국고관리 및 회계처리의 투명성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국고금 관리법」은 국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1997년부터 재정관리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작업을 추진하여, 2003년 1월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도입함에 따라 정부부처 예산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중앙정부기관은 운영비, 여비, 관서활동비, 업무추진비 등 20개 특정비목<sup>9)</sup>에 대하여 정부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예산을 지출하도록 하였다.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은 대상기관에서 제외되었다.

9) 운영비, 여비, 관서활동비, 업무추진비, 보전금, 보상금, 복리후생비, 시설부대비, 시험연구비, 자산취득비, 특수활동비 등이 해당한다.

## 나. 현황

중앙행정기관의 관서운영경비는 정부구매카드에 의해 집행이 되며 업무추진비의 적절한 사용을 위해 클린카드<sup>10)</sup>를 발급받아 사용한다. 정부구매카드는 일반 법인카드와는 달리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해 발급신청을 하고 사용내역 및 회계처리 또한 동 시스템하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된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법인에게 발급이 가능한 법인카드를 신용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아 사용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카드는 정부구매카드와 달리 별도의 통합관리시스템이 없고 신용카드사에서도 일반 법인카드와 구분해서 관리하지 않는다.

중앙정부기관의 정부구매카드 사용실적은 도입초기인 2003년에는 약 2,700억원 수준이었으나, 그 후 매년 약 3~4%씩 성장하여 2007년에는 약 3,200억원을 기록하였다. 정부구매카드는 농협이 약 8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은행계 카드사가 약 10%, 삼성카드가 약 9%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농협의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이유는 정부부처 청사내에 입점된 은행점포의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용의 편리성이 높기 때문인 것을 판단된다. 정부구매카드의 가맹점수수료율은 2.3%<sup>11)</sup> 수준이며, 모든 카드사가 동일하게 정부구매카드 취급고의 1.0%를 국고에 귀속(Cash-back)시킨다.

정부구매카드는 일반 법인카드와는 달리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해 발급신청을 하고 사용내역 및 회계처리 또한 동 시스템하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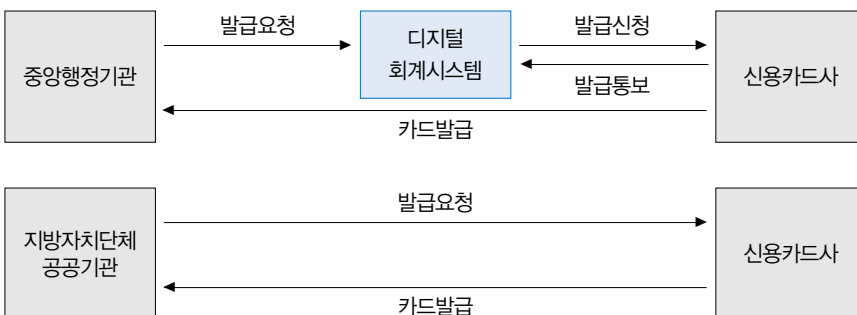
〈표 3〉 정부구매카드 사용실적

(단위: 억원)

구분	2004	2004	2005	2006	2007
규모	2,700	2,880	3,000	3,100	3,200

자료: 여전협내부자료

〈그림 4〉 법인(공공)카드 발급체계



10) 공식적인 직무수행과 관련이 적은 특정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업종 제한기능이 부여된 법인카드로서 사용제한 업종은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11) 일반카드사의 법인카드 가맹점 수수료율과 동일한 수준이다.



정부구매카드는 결제가 최소 10일에서 최대 24일로 월2회 진행되어 기존 법인카드의 절반 수준으로 단축되었다. 신용공여기간이 단축됨으로써 국고관리의 안정성이 강화되었다.

### 다. 구매절차

#### 1) 카드발급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 전산망 연계가 완료된 1개의 카드사를 선정하여 기획재정부가 정하는 표준약정서에 따라 약정을 체결하고 카드는 예산항목, 사용자별로 발급받게 된다. 카드의 발급신청은 담당공무원이 필요한 숫자만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면 된다.

#### 2) 카드사용

카드사용자<sup>12)</sup>는 소지하고 있는 카드 중에서 예산과목별로 사용한도액 범위 내에서 사용용도에 맞게 지출해야 한다. 카드 사용한도는 출납공무원이 교부받은 예산과목별 사용한도에서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지급할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며 이 금액은 출납공무원이 카드사에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해 통보한다.

#### 3) 사용대금 결제

카드사는 정부구매카드 사용대금에 대해 출납공무원에게 월2회 지급을 청구하며 카드이용대금은 국고예금계좌에서 자동결제가 이루어진다. 출납공무원은 카드사에서 전송된 대금지급요청서에 따라 지출관계서류를 작성하여 지출을 처리한다.

#### 4) 집행내역 관리

카드사가 통보한 카드사용내역에 따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의해 대장이 작성되는 등 집행내역이 자동 관리되며 카드사용내역은 익일 오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으로 전송되며, 출납공무원이 지출서류 작성 등으로 활용하기도 한다<sup>13)</sup>.

### 라. 도입효과

#### 1) 신용공여기간 단축

과거 신용공여기간은 최소 23일에서 최대 50일까지 월1회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고관리에 허술함이 존재했다<sup>14)</sup>. 정부구매카드는 결제가 최소 10일에서 최대 24일로 월2회 진행되어 기존 법인카드의 절반 수준으로 단축되었다. 신용

12) 발급받은 카드는 카드사용자, 즉 출납공무원, 과장, 국장 등에게 교부된다.

13) 기획재정부, 「관서운영경비 지출제도 및 정부구매카드제도 운용방안 및 조치사항」, 2002. 12 (www.most.go.kr)

14) 이로 인해 실제로 공공기관의 법인카드를 이용한 횡령사건이 간헐적으로 발생하기도 했다.



공여기간이 단축됨으로써 국고관리의 안정성이 강화되었다.

2) 국가재정정보시스템 개선

국고금 관리법이 시행되면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 구축되어 카드사는 정부구매카드 사용현황을 매일 관련 정부기관에 전송해주었다. 디지털회계시스템과 카드사의 전산카드시스템이 일원화로 연동되어 국고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횡령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3) 정부전용의 차별화

카드사용액의 1%씩 누적되는 캐쉬백(cash-back)제도가 폐지되는 대신에 카드회사는 이용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1년에 2번으로 나누어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한국은행 계좌로 입금하고 계산근거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정부는 연간 150억원을 국고수입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공공기관의 모든 업무용  
법인카드를 클린카드화하여  
업무와 무관한 업종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고  
명확한 사용기준을 마련했다.

마. 최근의 제도개선

매년 엄청난 규모의 관서운영경비가 법인카드로 집행되고 있으나 불법 현금화, 위장가맹점을 통한 편법사용 등 불법사용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예산낭비는 물론 정부의 신뢰성 저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예산을 절감하고자 2007년 10월 국가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올바른 법인카드 사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발표<sup>15)</sup>하고 제도 개선은 2008년 5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첫째, 이전에는 클린카드의 사용 제한업종에 대한 공통적 기준의 부재로 업무와 무관한 상당수 업종이 사용 제한업종에서 제외됨으로써 법인카드의 방만한 사용을 초래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의 모든 업무용 법인카드를 클린카드화하여 업무와 무관한 업종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고 명확한 사용기준을 마련했으며, 클린카드 사용 의무적 제한업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업무와 무관한 업종에서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15) 국가권익위원회, 「공공기관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2007.10. www.acrc.go.kr



신용카드사와 협조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법인카드와 민간 법인카드가 구별되어 관리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신용카드사의 실시간 감시대상에 공공부분 법인카드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의무적 제한업종〉

- ① 유흥업종(유흥주점, 단란주점)
- ② 위생업종(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등 대인서비스)
- ③ 레저업종(골프장, 노래방)
- ④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 ⑤ 기타업종(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둘째,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후 이용대금을 입금하는 행위와 개인카드를 업무용으로 사용한 후 기관경비로 회계 처리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셋째, 법인카드 전표 서명시 사용자의 실명을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법인카드 사용자의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기로 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법인카드는 사용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의 실명 서명의 무가 없어 추후 실제 사용자의 확인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넷째, 각 기관별로 내부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감사 및 회계부서에서 매일 모니터링하는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sup>16)</sup>하고 국민에 의한 외부감시 차원에서 일반 카드와 쉽게 구별될 수 있도록 법인카드의 색상 및 디자인을 특화하기로 했다.

[그림 4] 사용내역 모니터링 체계

구 분	현 행	개 선
사용내역 조회방법	카드사 → 디지털 회계 시스템 ← 회계 처리 ← 카드사	카드사 → 디지털 회계시스템 또는 신용카드사 홈페이지 ← 회계 처리 ← 회계 · 감사
조회가능자	회계담당자	회계담당자 및 감사부서
조회목적	회계처리	투명한 사용

자료 : 국가권익위원회, 「공공기관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16) 사용자, 사용일시, 사용금액, 업종 등의 사용내역을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사와 협조 체계를 구축한다.

17) 신용카드사의 실시간 감시(Fraud Detection System)는 신용카드 사용대금 연체를 예방하기 위해 카드사용자의 결제형태, 이용금액, 이용시간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비정상적 거래자를 적발하는 시스템이다.

다섯째, 신용카드사와 협조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법인카드와 민간 법인카드가 구별되어 관리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신용카드사의 실시간 감시<sup>17)</sup>대상에 공공부분 법인카드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는 신용카드사가 지방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발급하는 법인카드와 민간기업에 발급하는 일반 법인카드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 관리함에 따라 법인카드의 효율적 관리에 어려움이 존재해 왔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정부구매카드 시스템은 사전적인 통제 목적이 아니라 사후적인 예산지출증빙을 전자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 IV. 우리나라 정부구매카드의 문제점

##### 가. 근본적으로 미국과 상이한 제도

우리나라의 정부구매카드제도는 법인카드와 동일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 사전예산통제를 받고 있는 미국의 Government Purchase Card제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일부 MCC (Merchant Category Code)제도를 준용하여 유흥음식점 등에서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기는 하지만, 예산의 낭비 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미국의 제도와는 상이한 시스템이다.

우리나라의 정부구매카드 시스템은 사전적인 통제 목적이 아니라 사후적인 예산지출증빙을 전자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미국의 경우 2,500달러 미만의 지출의 경우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구매카드 이외의 방법으로도 소액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 나. 이원화된 전산 데이터 구조

미국의 경우 정부예산회계 시스템에 의해 사전 통제를 받기 때문에 모든 정보가 예산회계제도의 목적에 부합하게 관리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구매카드시스템의 경우 사후적으로 신용카드 회사가 정부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정부예산회계 시스템과의 데이터 구조가 상이하여 정보관리의 효율성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구매카드 사용실적정보를 2차적으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정보의 조작 또는 은닉처리가 가능하며, 사전 지출통제, 사후적인 행정감사 및 차기 예산수립 등에서의 행정 효율성 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하기에 미흡하다.



우리나라는 양호한 유무선 인터넷 또는 전화망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 인프라와 독립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능하다.

### 다. 과도한 가맹점수수료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는 업종에 따라 1.5~4.5%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수료에는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처리비용(processing fee) 이외에도, 대손비용, 신용공여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비용, 마일리지 혜택 등 각종 benefit program 제공에 따른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sup>18)</sup>. 정부 구매카드의 경우 대손 위험이 없고, 카드 이용대금 결제 주기가 최소 10일에서 최대 24일로 월2회 진행되어 기존 법인카드의 절반 수준으로 단축되어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이 크게 감소하였지만 가맹점에게는 일반 법인카드와 동일한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신용카드사에게는 정부구매카드가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상품이지만, 카드수수료를 부담하는 가맹점의 입장에서는 불합리하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 된다.

## V. 개선방향

미국의 Government Purchase Card는 신용카드 인프라를 배제한 독자적인 정부구매카드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유지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VISA, Master 등을 중심으로 7천개 이상의 신용카드회사 등이 회원관리를 하고 있으며, 수많은 신용카드채권 매입사가 복잡한 구조로 얽혀 있어 소수의 카드사와의 계약체결을 통하여 모든 가맹점에서 범용적인 결제가 불가능하고, 가맹점에 설치된 단말기를 기술적으로 통합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7개의 신용카드사가 각기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가맹점 단말기 인프라도 특정 카드사 의존방식이 아니다. 또한, 양호한 유무선 인터넷 또는 전화망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 인프라와 독립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능하다.

### 가. 법/제도의 정비 및 시스템의 구축

예산회계법 또는 예산지출증빙제도 등의 수정 또는 보완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정부예산지출 시스템이 새롭게 구축되어야 한다. 거래건당 사용한도는 일정금액(예를 들면 200만원) 미만으로 한정하되, Split Transaction Processing을 금하도록 한다. 적용 대상기관은 중앙정부에 우선 적용하고, 점

18) 신용카드사의 원가구조는 크게 이자비용(Interest Fee), 대손비용(Bad Debt Expense), 업무처리비용(Processing Fee), 마진(Operating Margin)을 구성된다.



차적으로 지방정부 및 공기업 등에 확장 적용한다.

### 나. IC 카드 발급 및 오남용 방지

카드의 기술규격은 금융 IC카드규격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카드 사용한도 등은 정부기관의 실정에 맞도록 비목별 금액별 한도를 부여하여 통제를 한다. 다만, 현금인출 또는 계좌이체 등을 제한한다. 해외여행 등의 특수 목적 카드는 현행 법인카드 시스템을 사용하되 별도의 강화된 통제절차를 통하여 처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보안기능이 강화된  
금융 IC카드 단말기에 관련  
프로그램을 추가시킴으로써  
시스템의 작동이 가능하다.

### 다. 지출대행은행의 지정

지정은행(시금고)을 통하여 가맹점 입금 등의 절차를 수행한다. 가맹점의 입금은 익일 결제 시스템으로 운영하여 금융비용을 절감하고, 가맹점에는 최대 0.5% 수준의 수수료를 부담시킨다. 이러한 조치는 가맹점에게 신용카드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제도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 라. 가맹점 및 단말기

가맹점은 정부기관별로 Vendor Negotiation작업을 거쳐 지정한다. 동 협상 시 level III 정보의 제공의무가 부여되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보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금융IC카드 의무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바, 기존의 가맹점의 단말기는 금융IC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로 대부분 교체될 예정이며, 최근의 신용카드 단말기는 고성능 Mini POS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 Level III 정보 입수도 용이하게 처리될 수 있다. 즉, 보안기능이 강화된 금융 IC카드 단말기에 관련 프로그램을 추가시킴으로써 시스템의 작동이 가능하다. 동 단말기는 거래실적에 따라 신용카드 VAN사 등에서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어 단말기 교체와 관련하여 가맹점의 추가적인 자원부담이 없다. 또한, 슈퍼마켓 등에는 이미 POS 시스템이 대부분 보급되어 있어, 소프트웨어의 변경만으로 구매관련 Level III 정보입수가 가능하다.



기존의 정부구매카드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구매·행정업무가 단순화되고, 지출결의·승인·처리 및 사후 감사절차의 단순화로 행정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이다.

## VI. 기대효과

새로운 정부구매카드제도를 도입할 경우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소액지출 예산에 있어서 낭비적인 요인을 제거하여 소액지출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가 있다. 둘째, 기존의 정부구매카드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구매·행정업무가 단순화되고, 지출결의·승인·처리 및 사후 감사절차의 단순화로 행정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이다. 셋째, 소액 현금관리가 단순화되고 구매절차의 개선이 이루어져 행정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이다.

정부구매카드를 신용카드 인프라와 독립된 시스템으로 구축할 경우 다음과 같은 효과를 추가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

첫째,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획기적으로 절감시킬 수 있다. 일반적인 신용카드의 경우 대손율, 신용공여기간의 이자 또는 마일리지 혜택 등의 비용부담 때문에 비교적 높은 수준의 수수료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구매카드의 경우 결제승인 후 익일 지불시스템의 도입 체제를 갖출 경우 정부구매카드결제와 관련하여 가맹점이 부담하여야 할 비목은 단순한 Processing Cost이다. 현행 주류결제 시스템은 0.14% 정도의 수수료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경우, Processing Cost는 결제금액의 최대 0.5% 수준으로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기존의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가 업종에 따라 1.5%~4.5% 수준임을 고려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므로, 자영업자의 평균적인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지금보다 크게 절감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금융감독원의 숙원 사업인 금융 IC카드 단말기 조기 확대 설치에 기여하게 되어 금융사고 예방 및 사회적인 비용절감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 VII. 결론

우리나라는 지난 수 십 년간에 걸쳐 재정지출의 투명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조달행정 분야의 혁신을 통하여 재정투명성을 높이고, 재정지출의 누수 또는 낭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의회의 견제 및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감시활동 등으로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상당 수준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도 소액으로 지출되는 재정지출분야에서는 투명성이 결여된 지출처리 또는 재정낭비현상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정부구매카드 제도를 도입하여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노력을 시도하였으나, 아직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상태이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소액구매 및 지출분야에서 투명성 확보 및 재정지출 누수현상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새로운 정부구매카드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새로운 정부구매카드제도는 미국의 Government Purchase Card를 벤치마킹하였지만,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우리 환경에 적합한 한국형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한국의 특수한 상황요인은 탄탄한 IT 인프라, 외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높은 신용카드 단말기 보급률 또는 인터넷 전자상거래 비중 확대 등이다.

새로운 정부구매카드 시스템의 도입으로 소액으로 지출되는 예산의 절감 및 재정누수현상을 차단할 수 있으며, 조달·구매분야의 행정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영세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절감시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금융 IC카드 인프라 보급을 촉진시켜 금융보안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환경조성으로 사회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KIPF**

새로운 정부구매카드 시스템의 도입으로 소액으로 지출되는 예산의 절감 및 재정누수현상을 차단할 수 있으며, 조달·구매분야의 행정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영세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절감시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참고문헌>

국가권익위원회, 「공공기관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2007, [www.acrc.go.kr](http://www.acrc.go.kr)  
 기획재정부, 「관서운영경비지출제도 운용방안」, 2002, [www.mosf.go.kr](http://www.mosf.go.kr)  
 남문섭, 『정부구매카드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2005  
 Aaron Bills, 3Delta Systems, “How many ISOs are leaping the benefits of this growing payment trend,”  
 Al Gore, “creating a government that works better& costs less,” *National Performance Review*, 1994  
 “The Federal Purchase Card: Use, Policy and Best Practice,” AGA CPAG Research Series, 2006  
 The GovCon Report Newsletter, 2007, [www.fccc.org](http://www.fccc.org)



Wade Tetsuka, “How can level-3 information processing lower your costs,” electro e-biz forum, 2007

“Worldwide Purchase Card Program Manual,” United States Agency International Development, 2007

# 정책토론포트

## ■ 납세자 권리보호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 본 원고는 2008년 6월 18일 한국조세연구원이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납세자 권리보호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의 주제 발표 및 토론 요약입니다. 주제 발표 및 토론의 내용이 소속기관이나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 납세자 권리보호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 정책토론회 개요

- 주 제      납세자 권리보호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 일 시      2008년 6월 18일(수) 14:00~18:00
- 장 소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
- 진행순서
  - 13:30~14:00 등록
    - ▶ 전체사회    최원석 한국납세자연합회 사무총장(서울시립대 교수)
  - 14:00~14:15 개회사 및 축사
    - ▶ 개 회 사    유경문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서경대 교수)
    - ▶ 인 사 말    홍범교 한국조세연구원 원장직무대행
    - ▶ 축 사      나성린 국회의원
  - 14:15~16:15 [제1부] 우리나라 납세자운동과 납세자를 위한 조세정책 과제
    - ▶ 사 회 자    이필우 한국납세자연합회 명예회장
    - [제1주제] 우리나라 납세자운동의 성과와 향후 과제
    - ▶ 발 표 자    김두형 경희대 법학부 교수
    - ▶ 토 론 자    최영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 하승수 제주대 법학부 교수
    -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부 교수
    - [제2주제] 납세자를 위한 조세정책 과제
    - ▶ 발 표 자    안중범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 ▶ 토 론 자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유일호 국회의원
    - 이희수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16:15~16:30 휴식
  - 14:15~16:15 [제2부] 납세자를 위한 조세행정 개선방안
    - ▶ 사 회 자    송쌍중 한국지방세협회 회장(서울시립대 명예교수)
    - ▶ 발 표 자    박 훈 서울시립대 교수
    - ▶ 토 론 자    김완일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
    - 김진수 한국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장
    - 서희열 강남대 부동산·세무학부 교수
    - 양병수 국세청 법규과장
    - 이현석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 18:00      폐회

(가나다 순)

**제1부****우리나라 납세자운동과  
납세자를 위한 조세정책과제****제1주제 발표요약****우리나라 납세자운동의 성과와 향후과제**

김두형/ 경희대 법학부 교수

**1. 납세자운동의 의의 및 성과**

납세자운동이란 납세자들이 주체가 되어 그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조직적 활동이다. 정부는 OECD 가입을 계기로 선진국이 채택한 조세행정절차 및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각종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조세행정에 획기적인 걸음을 내딛었다. 이를 계기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납세자연합회와 한국납세자연맹으로 대표되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예산감시운동, 정보공개운동, 조세개혁운동, 납세자교육 등으로 구성되는 납세자운동이 크게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납세자운동은 매우 미흡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납세자운동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일부 의식 있는 시민들만이 동참하고 있을 뿐이고 납세자단체가 하는 일을 이해하고 그들의 활동이 자신들에게 얼마나 유용하고 필요한지 인식하고 있는 국민들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납세자운동이 궤도에 오른 최근에도 납세자가 정부에 대해 자신의 권리를 적극 주장하지 못하고 우리 사회에 조세정의가 실현되었다고 믿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양대 납세자단체인 한국납세자연합회와 한국납세자연맹이 설립 이후 지난 10년간 보여준 활동은 정말 눈부시고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합회는 우리나라 최초로 설립된 납세자운동 시민단체로서 국민들에게 민주시민으로서 납세의무의 중요성과 책임감을 깨닫게 하였고, 또한 정부가 납세자를 존중하고 납세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게 하는 등 세무행정 분야에 있어서 납세자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활동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다. 대표적으로 공직선거 후보자의 납세실적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한 것은 납세의무가 병역의무만큼 중요한 국민의 헌법상 의무임을 알리고 이를 공직 진출자 도덕성 판단의 중요한 잣대로 삼게 하였다. 또한 선진국처럼 영수증에 세금을 별도로 구분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바르게 이해시키고 사업자에게도 소비자에게 전가된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하도록 유도하였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우리나라 시민단체로서 최고의 방문자 수를 기록하고 있는 홈페이지를 근간으로 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매우 주목할 만한 결과를 성취하였다. 지난 2002년 교통분담금 환급운동을 처음 시작한 이래 정부를 상대로 환급기간 연장운동을 펼쳐 당초 1년에서 5년으로 이루어졌으며 연맹의 환급대행서비스를 통해 50만명이 교통분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2003년 10월부터 부당한 학교용지부담금 불복운동을 전개하여 2005년 3월 31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 위헌결정을 이끌어냄으로써 결실을 거두었고, 나아가 이미 부담금을 납부하고 소송기간이 도과한 권리구제가 불가능한 납부자에게 소급하여 환급해주는 입법을 추진하여 2008년 2월 22일 특별법으로 이를 관철시켰다.

참여연대는 전문적인 납세자단체는 아니지만 잘 조직화된 구성원의 끈질긴 노력으로 그 동안 우리 사회의 성역처럼 여겨졌던 재벌가문 등 거대세력과 당당히 맞서며 조세정의 및 조세부담의 공평 실현을 위해 놀랄 만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대표적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재실시, 삼성그룹의 변칙 상속 및 증여

에 대한 문제제기로 증여세에 있어서 완전포괄주의를 입법화하는 계기를 만들었고 불법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과세를 촉구하여 입법을 관철시켰다.

## 2. 문제점

우리나라 납세자단체들의 활동은 그동안의 성과만큼이나 문제점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첫째, 회비와 후원금을 내는 회원의 뒷받침없이 몇몇 명망가들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어서 '시민 없는 시민운동'이란 소리를 듣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 납세자단체는 구성원의 한계로 인하여 정책기능이 부족하다.

셋째, 납세자단체는 주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홍보 및 활동에 치중하고 있다.

납세자운동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납세자단체 운영상의 문제점을 극복하여야 한다.

1) 단체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목적을 명확히 하여 그 목적을 지향하는 활동과 운영을 하여야 한다.

2) 시민단체의 운영이 비민주적이거나 시민단체의 지도자가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그 운동은 시민의 이름을 빌린 국가에 대한 폭력이나 다름없게 되므로 민주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3) 시민단체의 힘은 무엇보다도 전문성에서 나온다. 정책의 방향을 정하고 그것을 전문적 학식과 경험을 토대로 이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4) 재정의 취약성 극복을 위해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회비납부가 있어야 한다.

5) 정보화 사회에 걸맞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6) 국제적 연대 강화를 통한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 3. 향후 과제

납세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향후 중점적으로 노력해야 할 분야는 다음과 같다.

1) 납세자의 권리운동은 납세자가 걱정된 세금을 납부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납부한 세금이 적절히 지출되는지 감시하는 데도 미치는 것이므로 조직적인 예산감시운동이 필요하다.

2) 납세자소송제도를 도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납세자인 국민에게 국가 등의 위법한 재정행위에 대한 쟁송권을 인정함으로써 객관적인 법질서를 확보하고 재정의 건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3) 납세자 입장에서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세법의 개정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4) 대(對) 국민교육 및 홍보의 체계화하여야 한다.

5) 적정신고를 위한 납세신고매뉴얼 발간 및 납세협력 지도

정부가 대규모 납세자가 가입한 납세자단체를 정부가 납세협력단체로 인정하여 과세의 적정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6) 과세관청의 부정부패 및 비리 고발

**제 1주제 토론요약****시민단체 기능은 감시기능에 중점을 뒀야**

현진권/아주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이번 기회를 통해 조세와 관련된 시민단체의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많이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시민단체의 역할은 크게 감시기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정책비판기능으로 나눌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조세 관련 시민단체들은 감시기능과 정책비판기능 중 감시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시민단체 역사는 외국에 비해서 짧은 편에 속하고, 앞서 말한 감시기능과 정책비판기능의 두 가지 기능이 혼합되어서 때때로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시민단체에 대한 개선 방향을 나름대로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발표자께서는 시민단체의 방향에 대해서 전문성을 강조했지만, 시민단체는 중학교 정도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시민들이 정책에 힘을 실어줄 수 있게 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시민단체가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정책방향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많고 합의를 보기 힘든 것이다. 특히, 조세정책의 정책방향은 다른 정책들보다 더 정책자들의 가치관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에도 조세를 어떻게 걷어들이 것인가라는 정책비판기능보다는 걷어들인 세금을 어떻게 쓰는가에 대한 감시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다. 조세를 어떻게 걷어들이 것인가에 대한 것은 기술적이고 전문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시민단체에서 간섭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았을 때, 시민단체에서 조세를 어떻게 걷어들이 것인가

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은 조세 원칙 중 형평성이다. 하지만, 조세정책을 만족시켜야 되는 원칙으로는 형평성뿐만 아니라 단순성 및 효율성도 고려해야 된다. 경제학자들이 논의를 많이 하는 부분은 효율성인데, 효율성은 일반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경우에도 형평성에 관한 주제는 10% 정도 가르치는 데 반해 효율성은 90% 정도 가르치게 된다. 그만큼 재정학에서 효율성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따라서, 조세정책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개입하면 전문성이 부족하고, 시민단체가 조세정책에 대해서 개입하는 경우 오히려 특정인에 집중되는 위험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시민단체의 기능 중 조세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가에 대한 감시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물론, 감시기능은 국회에서 하고 있고 이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국민들이 선출한 것이다. 다만, 민주주의의 구조상 이해집단과 국회의원 및 관료들의 이해관계가 같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뜻에 반하는 지출구조를 갖기 쉽다. 특정 이해단체가 국회의원한테 로비를 할 때, 국회의원 입장에서 침묵하는 다수보다 행동하는 소수의 입장에서는 것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고, 관료 역시 이해단체의 입장에 치우치기 쉽다. 즉, 경제적 이익 및 비금전적 이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자들이 뭉쳐지기 쉽다고 생각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뜻에 반할 수 있으므로 시민단체의 감시기능이 더 강조되어야 하며, 지금 시민단체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 점검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한다.

## 예산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 등이 필요

하승수/제주대 법학부 교수

1990년대부터 시민단체 활동에 관여하면서 조세정책이나 예산감시활동과 관련된 활동에 참여했다. 최근에는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예산이 잘 쓰이도록 하는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오늘 발표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을 공감하였다.

오늘 발표내용에 대해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다.

첫 번째, 납세자운동이란 가치중립적이지만 가치가 개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조세정책이나 국가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에 대해서는 가치가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감시기능은 가치중립적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납세자운동은 이 두 가지의 기능이 혼재되어 진행되어 왔다. 감시활동은 납세자운동의 기본활동이라고 생각하고, 가치관이 개입되는 정책의 영역은 서로 가치가 다를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활발한 토론문화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 서로를 존중하면서 합리적인 토론이 이루어지는 문화가 뒷받침된다면 시민단체가 굳이 한 가지 소리를 낼 필요는 없을 듯하다. 그리고, 전문가들 간에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토론을 통해서 좀 더 좋은 제안이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시민단체의 의견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예산 및 재정지출에 대한 감시기능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지출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고, 지자체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예산낭비 구조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납세자소송제도가 있다. 이 제도를 도

입하는 것에 대해 한국납세자연합회, 참여연대, 함께 하는 시민행동같은 시민단체들이 협력을 해서 국회에서도 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16대 국회 때의 일이다.

노무현 정부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되었으나 과제로 채택되지 못하였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납세자소송제도를 국민소송제도라고도 불렀는데, 실제로 이러한 제도가 예산낭비를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의 도입과 함께 정부의 예산 및 지출에 대한 정보가 충실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정보공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관청들이 비공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예산과 관련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시민단체의 감시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보의 공개를 위해서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 납세자운동을 조세정책운동으로 진화시켜야

최영태/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부담없는 주제이지만, 현재까지의 우리의 활동을 돌이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다.

참여연대의 활동 초창기에는 국가권력이 일방적인 우위에 있는 상태였고 그 당시에는 납세자의 권리를 되찾는 활동에 주력했었고 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던 것 같다. 또한 현재의 납세자운동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세출 쪽의 감시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감한다. 이제까지는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고, 지금까지 입법을 추진해 왔던 납세자소송법, 예산감시제도 등이 입법화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점은 이러한 납세자운동만으로 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납세자운동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이 당위성이 있다. 즉, 세법의 입법에서 국가가 국민에게 과도한 의무를 지우거나 국가 일방의 이익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 입장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 이제는 더 나아가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납세자운동의 방향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납세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추가적인 제도의 추진이 필요하고 이는 복지제도와 연관이 있다. 이는 현재 나타난 갈등을 주목해 봐도 명확해진다. 첫 번째는 납세계층 간의 갈등이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세부담, 소득/소비/재산에 대한 세부담에 대한 갈등이 그 예이다. 감세나 증세냐에 대한 논란은 이 갈등의 대표적인 예이다. 두 번째로는 세부담을 현재 세대가 하느냐 미래 세대가 하느냐에 대한 갈등이다(예를 들면 국민연금의 갈등). 또한 어떤 지역 간에도 과세 갈등이 있다(예를 들면 서울과 지방, 강남과 강북 간의 세부담에 대한 갈등). 마지막으로 국가간에도 조세갈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예를 들면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지나친 조세감면 혜택). 따라서, 납세자운동은 현재에 대한 내용을 넘어서서 방향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 향후 납세자운동은 이러한 궁극적인 부분을 다룰 필요가 있다.

요약해서 말하면, 납세자운동은 향후에는 조세정책으로 진화해야 할 필요가 있고, 현재의 납세자운동 부분에서는 미약했던 세출문제를 추가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현 교수께서 납세자운동은 정책판단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인데 조세정책의 조화를 위해서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조세 현상을 요약하면, 과거에는 국가권력에 대한 갈등으로 비교적 단순하고 평면적이고 당위

적이었으나 이제는 좀 더 다면적이고 철학적 사고가 동시에 요구되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앞으로도 조세에 대한 실험이 계속 나올 것이고 이것이 이념적 좌표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선진국은 복지국가로 이미 나아간 후에 진로를 수정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복지국가로 나아가지도 못한 채 진로를 정하여야 하는 어려움에 있다. 따라서 우리의 입장에서 어떤 정책을 취할 것인가를 충분히 고민하여야 한다. 이러한 고려가 바로 조세정책운동이다. 따라서, 납세자운동은 조세정책운동으로의 진화가 필요하다.

## 제2주제 발표요약

### 납세자를 위한 조세정책 과제

안종범/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 1. 서론: 재정포폴리즘과 소외

세금은 잘 거둬서 잘 써야 한다. 잘 쓰는 문제는 예산낭비를 줄이고 실효성을 높이는 정부지출개혁을 통해서 풀 수 있는 반면, 잘 거두는 문제는 효율성, 형평성, 편의성 등과 같은 조세의 기본 기능을 최대한 살리면 해결 가능하다. 이처럼 세금을 잘 거두는 문제가 바로 납세자를 위한 조세정책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납세자는 세금을 부담하는 주체이자 수혜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그동안 세금의 부담주체와 수혜주체로서 납세자가 얼마나 재정포폴리즘에 이용당했고 또 세금으로부터 소외되었나를 살펴보고, 이러한 포폴리즘과 소외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로서 납세자를 위한 조세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나아가 납세자를 위한 소득세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 2. 납세자를 위한 조세정책의 기본과제

### 1) 알기쉽고 단순한 조세체계

현행 조세체계를 단순화하고 지나치게 많은 비과세 및 감면조항들을 줄이면서 세율을 낮추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세수 기여도가 낮은 세목과 수수료 성격이 강한 세목은 폐지하고, 유사한 세목은 통합하며, 목적세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조세체계의 정비와 함께 서식을 간소화하는 것도 납세자들이 알기 쉬운 세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 2) 재정 및 조세정보 개선

재정포폴리즘의 피해를 받게 되는 것은 국민들이 재정과 조세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거나 왜곡된 정보를 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납세자를 위한 조세정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 기본방향은 과학적인 정책평가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폭적인 정보공개를 하고 이를 위해 국세통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 3) 물가연동세제 도입을 통한 예측가능성 제고

물가상승에 따른 세부담상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물가연동세제를 도입함으로써 조세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 물가연동제의 경우, 선진국들의 사례를 검토하여 세율구간만 조정할 것인지 아니면 각종 공제까지 조정할 것인지 그리고 매년 조정할 것인지 아니면 3년에 한번씩 할 것인지 등등 우리 실정에 가장 적합한 방안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물가상승을 반영하여야 하는 조세에는 소득세뿐만 아니라 재산관련세, 소비세, 법인세 등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물가연동세제의 도입은 정책의 재량성과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 3. 납세자를 위한 소득세 정책과제

### 1) 소득세제 개선의 2단계 전략

납세자를 위한 소득세 정책과제는 1단계에서는 '소득세제 정상화'를, 2단계에서는 '소득세제 선진화'로 구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정상화 단계에서 소득세 세수 비중을 확대시켜 소득세 기능을 강화한 후 2단계인 선진화 단계에서는 선진국처럼 소득세 비중은 낮추고 소비세 위주의 과세체계로 정비한다는 의미이다.

### 2) 공제제도 개선

특별공제의 한도를 확대하거나 새로운 공제항목을 신설하는 등 특별공제제도를 확대 개편해야 한다. 그러나 특별공제의 항목별 한도를 인상하거나 새로운 항목을 신설하는 방안들은 기존의 어려운 소득세법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특별공제의 근본적인 개편 방안으로 공제제도를 단순화하기 위해 미국에서 사용하는 개산공제(概算控除; standard deduction)를 도입하여 기존의 특별공제제도를 유지하면서 개산공제도 병행하여 근로자가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특별공제제도의 확대 개편을 계기로 선택적 근로복지제도(카페테리아 플랜: Cafeteria Plan)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 선택형 근로자 복지제도는 근로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줌과 동시에 세제혜택을 부여한다는 것이 핵심사항이 된다.

### 3)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조세정책

퇴직연금의 세제유인을 강화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연금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우선, 퇴직연금 가입 유도를 위해 근로자 추가 납입금에 대해서 개인연금과 별도로 소득공제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연금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일시금보다 연금이 유리하도록 세제지원을 해야 한다. 연금소득에 대한 공제폭을 확대하고

일시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4) 근로장려세제의 개선과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하에서의 근로능력자를 근로장려세제 체제로 흡수함과 동시에 소득세제도하에서 면세점을 인하하고 과표구간과 세율체계의 조정을 통하여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세청은 별도의 소득과약 노력을 해야 한다. 즉, 저소득층의 소득과약은 초기에는 기존의 과세자료를 충분히 활용하되 새로운 소득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 5) 효율과 형평의 조화를 통한 자본소득과세의 개혁

자본소득세의 경우 형평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선택형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추진이나 주식양도차익과세의 부분적 시행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주식양도차익의 경우, 단기양도차익과 장기양도차익을 구분하여, 단기 중과·장기 경과의 원칙으로 세율, 면세점 등의 차등 설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주식투자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소득공제혜택을 부여하여 주식으로 손실을 본 만큼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식매매로 본 손실에 대해 별도로 내는 부담을 없애줄 수 있다.

### 4. 결론: 조세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 제고

납세자를 위한 조세정책은 무엇보다 신중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가장 빈번하게 세제개혁을 단행한 국가 중의 하나이다. 즉, 한 가지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또 다른 정책을 시도함으로써, 조세정책의 효과를 제대로 검증하기조차 힘들 정도가 되었다. 따라서 철저한 「사전평가-세제개편-사후평가」의 환류체계(feedback system)를 활용해야 한다. 결국

우리의 세금에 있어서도 이처럼 일관성을 유지하고 실효성을 전제로 한 평가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납세자를 위한 조세정책에는 책임성도 중요하다. 점에서 정책실명제를 도입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 제2주제 토론요약

### 찾은 세제개편은 문제, 지속성 담보해야

유일호/한나라당 국회의원

납세자를 위한 정책과제가 아닌 그냥 조세정책과제로 봐도 무리가 없는 논문인 것 같다. 평소에 이런 아이디어나 방안이 안 교수와 의견이 같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드릴진 없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로 볼 수 있는 것은 『세무조사 백서』를 만들자는 의견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런 것을 축적해나가는 것이 정보 축적의 시작이므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

감세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 한나라당이 어느 정도의 감세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 많이 공감하고 감세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감세정책이 마치 가진 사람에게 더 주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물가연동세제는 원칙론으로 봐서는 찬성할 만한 아이디어로 외국에서 적용하고 있다. 감세를 위한 물가연동세제 도입으로 보여지진 않지만 실질적으로 감세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시 인식 측면에서 본다면 항상 정치권에서 공약을 할 때 면세점을 올리는 것을 주장해왔다고 지적하였는데, 물가연동세제 도입 시 면세점을 올리게 되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식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된다. 지금은 그런 아이디어를 내지 않았지만 한동안 계속 면세점을 인

상해 왔기 때문에(물가연동세제가 아닌) 너무 면세점이 높다고 하여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묶어놓고만 있으면 물가가 올라가면서 과도한 면세점 인상효과가 언젠가는 상쇄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불과 얼마전까지 재정학자들과 나누었다. 물가연동세제가 도입되면 그와는 반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이것이 상당히 복잡하다는 것은 발표자께서도 동의하시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에 원칙론적으로 받아들여질만한 아이디어지만 세제실에서 세부적으로 정책을 입안하는 것은 보통 복잡한 일이 아닐 것이다. 세법이 말은 쉽지만 운영부분은 어려운 일이 많다. 실제로 도입할 때는 상당히 신중해야 하고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얕은 세제개편도 세법·세제의 안정성 보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매년 큰 세제개편에 준하는 세법개정은 문제가 있다. 연금과세문제와 현재 걱정하고 있는 근로장려세제, 자본소득과세의 개혁이 소득세제 개편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리라 생각한다. 사실상 개선공제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하여튼 논문에도 지적되어 있지만 결국 의도와 달리 점감구간에서 근로의욕 저하문제는 항상 남을 것으로 생각된다. 어떻게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을지 여기 계신 분들이 새로운 안을 내시면 저희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주식양도차익 과세문제는 비록 단기적 부작용이 있더라도 그것을 감수하는 태도로 가면 훨씬 나은 장기적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여러번 주식양도차익 과세문제가 나왔을 때 쑥 들어간 이유가 바로 주식시장이 하락했기 때문인데 그것을 감수하고라도 결국 증권거래세를 없애는 패키지로 했다면 국민들이 이해하고 결국은 균형으로 돌아오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다른 조세정책과제도 많은데 중부세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포괄적으로 다뤘으면 그것도 납세자를 위한 조세정책과제가 아닐까 생각된다.

## 조세의 단순성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앞선 토론자와 중복되지 않는 몇 가지 점에서 첨언을 하고자 한다.

토론자는 제3장 기본과제와 제4장 정책과제 중에서 알기 쉽고 단순한 조세체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세금을 제대로 징수하는 여러 가지 기준 중 형평성·효율성에 치우치고 단순성에 대해서는 등한시한 경향이 있다. 토론자는 단순성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복잡함에 따르는 세무비용이 개인적으로는 얼마 되지 않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크므로 이를 줄여서 다른 곳에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추진되었지만 다른 나라의 경우, 영국은 1996년부터 TLRP(Tax Law Rewrite Project)에 매년 500만파운드를 투입하여 40명의 전문가가 full-time으로 동원되어 영국 세법을 납세자가 이해하기 용이하도록 작업을 해오고 있다. 호주의 경우 TRIP(Tax Law Improvement Project)를 1994년부터 1999년까지 6년간 매년 1천만호주달러와 연간 40여명의 전문가가 동원되어 추진하다가 당초 목표의 약 40~50%밖에 완성하지 못하고 기존 세법을 알기 쉽게 다시 쓰는 작업 이전에 조세의 구조 자체를 단순화하는 작업을 선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작업을 중단하고 조세체계를 단순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두 나라의 예에서 보면 단순화는 비교적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하고 국가적인 과제였고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작업이었다. 우리나라는 경우에는 근본적인 검토는 하지 못하고 단순검토만 한 상태에서 중단된 경험이 있다.

세법의 단순성은 다음의 네 가지 측면에서 측정할 수가 있다. 첫째, 세법이 얼마나 쉽게 기술되어 있는

지? 둘째, 세법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셋째, 납세자와 조세행정가들이 세법에 어떻게 적응하는지? 넷째, 조세를 운영하는 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지? 앞의 두 가지 요소를 법적 단순성(legal simplicity)라고 하고 뒤의 두 가지 요소를 경제적 단순성(economic simplicity)이라고 하며 운영 비용(operating cost)에 의하여 측정된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납세 협력비용이 예상보다 크다는 것이 밝혀졌다.

다음은 조세정보 개선과 관련된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정책이 아쉬웠고 조세정보는 국민에게 많이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2006년 국세청에서 통계기획팀을 발족하여 국세 관련 통계를 납세자들에게 제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이고 추가적인 자료를 얻기도 어렵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의 적극적 자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감세와 관련해서는 법인세를 인하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고 이러한 방향에 대해서는 동감하지만, 감세 시 재정균형을 어떻게 달성할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할 필요가 있다.

물가연동제의 경우에는 방향은 근본적으로 옳다고 생각하지만, 보다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매년 하는 것이 좋을지 3년 정도마다 하는 것이 좋을지 등 정책 유연성의 측면에서 보다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단계의 정책과제 부분의 중요성에 동감하고 있다.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과세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항이지만, 토론자의 의견으로는 거래세 폐지와 양도차손 공제를 동시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공제제도와 관련해서는 일단 개산공제의 경우 용어에 대하여 혼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즉, 공제에는 standard deduction, itemized deduction으로 구분되므로 저자가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 구창모의

석사학위 논문 「근로소득세 공제제도 개선방안: 개산공제제도 도입을 중심으로(2005)」의 p.23과 저자가 원윤희·임병인·구창모 교수와 공저로 『공공경제』 제11권 제1호(2006)에 발표한 「소득세 공제제도 개편의 정책모의실험」의 p.74에서 동일하게 개산공제(applied standard deduction)를 “납세자의 공제액을 필요경비별 실제지출액이 아니라 증빙서류 없이 소득수준과 가구원수에 비례하여 일괄적으로 공제액을 산정하는 제도”라고 정의하였다. 하지만 본 발표문에서는 개산공제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이에 대한 의미도 동일하지만 영문표기는 “standard deduction”이라고 표기하여 혼란스럽다.

원칙적으로 특별공제는 실액공제인 itemized deduction과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로만 구분된다. 기존 소득세법에서 필요경비의 개산공제로서는 근로소득공제와 퇴직소득공제(김완서 저 『소득세법론』 참조)가 있다. 소득세법에서의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와 특별공제가 있으며, 근로소득자는 특별공제를 실액공제와 표준공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자는 표준공제만 적용하게 되어 있다. 이는 증빙을 갖춘 경우 실액공제를 해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만을 적용하게 되어 있어 세법상 증빙서류 유무에 따라 공제를 달리 적용하며 납세자의 입장에서도 실질적인 혜택과 편의성과의 trade-off관계가 있다. 실액공제액이 표준공제액보다 더 큰 이유는 근거과세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조치이다. 따라서 중·중기적으로 조세정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근거과세의 기반이 확충되어야 하므로, 증빙자료에 의한 실액공제의 적용이 확대되어야 하며, 이러한 정신을 반영하여 외국에서도 실액공제액이 표준공제액보다 일반적으로 더 높으며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증빙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표준공제만 허용하는 것이다.

발제자의 의견이 개산공제에 대한 정의에서 밝혔듯이 아무런 증빙서류 없이 소득수준과 가구원수에

비례하여 일괄적으로 공제액을 산정하는 제도라고 하면, 기존의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에 소득수준과 가구원수를 반영하는 제도로 개선하자는 안과 다름이 없다고 하겠으며, 따라서 applied standard deduction이라고 외국에서도 사례가 없는 용어를 사용하기보다는 기존 표준공제에 소득수준과 가구원수를 반영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증빙서류를 갖추어서 근거과세의 기반을 확충한다는 대원칙하에서 납세자의 편의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

## 국민 세부담 완화 및 납세협력비용 축소 추진

이희수/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납세자 권리보호는 조세제도보다는 세정의 문제 즉, 세무조사를 투명하게 한다든지 납세자 권리구제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과 같은 차원의 문제가 많다고 본다.

다만, 세정 차원의 납세자권리보호 문제는 다음 세션에서 별도로 논의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세제부분에 한정하여 제 생각을 밝히고자 한다.

세제 차원의 납세자보호 문제는 크게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양적인 측면에서는 소위 '적정 조세부담률 수준'과 관련된 문제로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 등이고, 질적인 측면에서는 '납세협력비용 축소 문제' 즉, 똑같은 세금을 징수하더라도 납세자가 편안하고 쉽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과거 조세부담률 수준을 이야기할 때 선진국에 비해 높지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였다. 그러나 이는 절대수준만을 비교한 것이기 때문에 '체감조세부담

률'과 다를 수 있다. 국민들이 느끼는 조세부담 수준은 조세부담 자체의 절대적인 수치보다는 상대적인 비교, 즉 "작년에 비해 세부담이 얼마나 증가하였는가"라는 변화속도에 의해 좌우된다고 생각한다.

과거 분석자료를 보면 지난 5년간 OECD의 평균 조세부담률은 0.4%포인트 낮아졌지만,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동안 3.1%포인트가 증가하였다. 조세부담률이 국제적으로는 낮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증가하기 때문에 소위 '세금폭탄'이라는 말도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한다.

또한, 국민들은 세금뿐 아니라 사회보장부담금도 일종의 세금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모두들 알다시피 사회보장부담금이 많이 올랐다. 이러한 점도 국민들이 세부담이 과중하다고 느끼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정부는 앞으로 감세와 규제완화를 두 가지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해서 경제도 살리고 미래 성장잠재력도 확충할 계획이다. 2007년 현재 22.7%인 조세부담률을 현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12년까지 20%대로 낮추겠다는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올해 들어 상당히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정권 출범 초기에 대선·총선과정에서 나타난 민심을 반영하여 시급한 감세조치는 2~3월에 이미 시행하였다. 예를 들면,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인상을 통한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세부담 경감 조치, 수입물품 긴급 할당관세 적용으로 많은 원재료 수입에 대한 관세 무세화 조치, 유류세 10% 인하 등이 그것이다.

현재는 2단계 감세조치로서 비교적 세수감소 규모가 크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임시국회에서 입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가장 큰 사안은 법인세율 인하조치로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다. 다음으로 최근에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는데, 기름값 인상

분을 유류세 환급을 통해 근로자, 자영업자에게 돌려주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련 법률안이 지난 6월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현재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다.

마지막으로 정기국회에서는 세제 전반에 걸친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전반적인 조세체계와 세부담의 적절성에 대해 차분하게 살펴볼까 한다.

이와 같은 3단계 감세정책으로 나라경제도 살리고 국민들이 느끼는 실질적인 세부담도 줄어나갈 계획이다.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질적인 측면에서는 납세협력비용 감축문제를 말씀드렸다. 저희가 세금 업무를 처음 배우기 시작할 때는 국세행정의 효율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 징세비용이 낮다는 점을 자주 언급했었다. 그런데 납세자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이 늘어나서 징세비용이 줄어든 효과는 없었는지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납세협력비용을 줄이는 문제는 OECD를 비롯한 대다수 선진국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우리도 세제개편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 단계로 과연 납세협력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야 할 것이다. 납세협력비용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가 쉽지 않지만, 현재 관련기관에서 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납세협력비용 개념이 정착되면 주기적으로 납세협력비용을 측정하여 객관적인 지표를 갖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단계로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 보완을 검토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신고납부 횟수가 많은 평가가 있어 세목별로 신고납부 횟수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국세청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사전 답변제도(advance ruling)' 도입도 검토 대상이다. 이는 납세자가 국세청에 구체적 사실관계

에 대한 과세여부 등을 사전에 질문하면 국세청이 공식적인 견해를 표명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확보해주는 제도이다. 이 외에도 각종 서식이나 제출 서류의 중복문제도 살펴보고 가능한 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신용카드 국세납부 범위 확대와 전자신고 대상 세목을 늘리는 방안 등도 검토해서 우선 실행가능한 것부터 추진하고자 한다.

제2부

납세자를 위한 조세행정 개선방안

제2주제 발표요약

납세자를 위한 조세행정 개선방안

박 훈/서울시립대 교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논의는 “있는 법”과 “있어야 할 법”이 일치하고 있는가에 대한 입법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조세행정의 문제도 관련된다. 종합부동산세 도입에서 보였던 납세의무자의 조세저항은 국가가 필요하니 국민은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는 논리로 세금을 과세관청 편의의 관점에서만 걷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이해와 설득을 전제로 한 조세의 부과 및 징수가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지만 조세회피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에게 무조건 편의만을 제공할 수 없다.

이 글은 이러한 편의성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내국세, 관세, 지방세 등 조세 전반에 있어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대해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과세관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납세자는 자신의 경제활동에 대해 얼마만큼의 세 부담을 지는지를 알기 원하고 실제 부담하게 될 세부담액에 따라 경제활동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세금만을 줄이기 위해 왜곡된 경제활동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세부담을 포함한 비용부담을 예측하지 못하는 것 역시 문제라 할 수 있다. 세법령이 방대하고 자주 개정이 되면서 납세자는 과세처분에 대해 세부담을 예측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개별 세목과 관련된 세법령은 법률은 1,200여개, 시행령은 1300여개, 시행규칙은 500여개로 총 3,000

여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법의 가장 기본적인 법률인 민법의 경우 마지막 조문이 1118조까지로 되어 있다. 민법은 시행령, 시행규칙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령으로 세법령과 민법을 비교한다면 단일법으로만 보면 민법이 방대하기는 하나 특별법을 제외한 법령으로만 보면 세법령이 민법의 3배에 달할 정도로 방대하다고 볼 수 있다.

소득세법과 지방세법의 경우는 제·개정 수가 100번이 넘고, 법인세법, 관세법은 50번이 넘는다. 민법은 1958.2.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이후 제개정 수는 17번에 불과하다. 주요 세목에 대한 세법은 1년에 한번 이상 개정될 정도로 잦은 개정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예규가 실제 과세실무상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세법령의 특징하에서 과세여부를 질의회신의 형태로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질의회신 형태의 예규 자체도 동일한 쟁점에 대해 과세관청의 입장이 바뀔수 있다. 이 때문에 납세자는 자신의 사안에 대해 하나의 예규만을 보아서 안되고, 유사한 예규를 놓고 종전의 예규와의 관계까지 검토하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주로 1980년대에 도입된 기본통칙은 이러한 예규를 좀더 잘 정리놓은 행정규칙이라 할 수 있는데, 최근까지 그 개정이 잘 되지 않아 그 해석기준을 정립하려는 원래의 목적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납세의무자가 과세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본고에서는 1) 수수료 받는 질의회신제도의 도입, 2) 종전 기본통칙의 개정 및 종합부동산세법 기본통칙 제정, 3) 개정세법의 납세자별 실효성 있는 홍보방안 강구를 주장하였다.

1) 납세자의 경우 과세여부에 대해 과세처분이전에 과세전적부심과 별개로 예측가능성을 미리 제거하여 경제적 이득을 누린다는 점에서 수수료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현행 질의회신제도에서도 질의가 구체적이라면 과세관청이 의지에 따라 기속력 있

는 회신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질의 및 회신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수수료까지 부담하는 경우에 기속력을 원칙적으로 인정해주고 세무조사 중인 경우 또는 소송 진행 중인 경우 등 수수료를 부담 하더라도 기속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만을 규정하는 방식이 타당하다.

2) 법인세법이 2007. 5. 11.에 개정되어 비교적 최근의 개정인데, 다른 세법도 최종 개정일 이후 생산된 예규를 반영하여 기본통칙개정시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기본통칙 자체가 없는 증권거래세법, 교육세법 등의 경우에도 예규를 정리하여 기본통칙을 제정하는 것은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해석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종합부동산세법의 경우는 2005년 1월이 법이 제정되었고 조문도 25개에 불과하지만 192건의 예규가 있다는 점에서 기본통칙의 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개정세법의 홍보도 주유소 앞 입간판을 이용한 자동차세 홍보의 경우처럼 납세홍보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납세자에게 맞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잦은 세법개정으로 자신의 조세채무에 대해 잘못 알거나 알지 못하는 납세자를 실제로 돕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세무행정은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를 피하는 경우 장점과 단점을 함께 내포하는 경우가 많고 본고에서 주장한 세법령을 둘러싼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세 가지 방안 역시 그러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수수료를 받아 보다 기속력 있는 질의회신제도를 도입하고 최근 예규의 변화를 종합정리하여 기본통칙 개정과 새로운 기본통칙을 제정한다면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세무행정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 제2부 토론요약

### 국선세무대리인 법제화와 납세자권리보호

홍기용/인천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국가는 납세자가 편안하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세금을 낼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이는 세제를 통해서도 이루어지지만 많은 부분은 세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영세납세자의 경우 세법에 대해 자세히 몰라 세금을 내면서 어려움을 겪으며, 그 후에는 세무조사에 벌벌 떨기도 한다. 이러한 것은 국가가 풀어주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곧 납세비용(납세 순응비용)을 줄여주는 것이며, 국민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세무행정을 통한 납세자 권리보호에 대해 위해 몇가지 제시한다.

첫째, 국세청은 『세무행정개선 백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납세자의 불편사항, 질의가 많은 사항, 충돌 사항, 재량범위가 넘는 사항, 해석오류가 많은 사항, 이의신청이 많은 사항 등을 스스로 찾아내어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되도록 하여 법제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하여 정부는 납세자권리보호를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개선하려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또한 시민단체 등에게도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이라는 주제로 매년 정기적으로 용역을 주어 연구보고토록 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납세자보호의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세무행정개선 백서』에 수록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모두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현재 국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운영중인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장 중 90% 이상이 세무사인데, 가급적 관할지역에 있는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을 배제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더욱 공정한 납세자 권리보호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셋째, 세무조사를 함에 있어서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 차원에서 국선세무대리인의 제도를 도입하여 납세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 영세납세자의 경우 세법 등의 이해 부족으로 자기 방어권이 없다는 면에서 이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 만약 세무조사가 잘못되어 형사고발로 이어진다면 검찰에 송치된 후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보다는,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납세자를 사전에 보호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국세기본법에서 과세정보를 공개하는 대상은 주로 과세확보, 범죄정보 목적이므로 납세자 권리 보호와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바람직한 세무 관련 연구 및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통계자료 및 정책연구 목적의 정보공개를 국세기본법상 공개사유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조세개혁 방향

서희열/강남대 교수

납세자연합회와 한국조세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오늘 정책토론회에서 '납세자권리보호를 어떻게 향상 시킬 것인가', '납세자연합회의 설립 목적이 무엇인가' 등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경희대 김두형 교수께서 발표한 원고를 살펴보면 '한국납세자연합회는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조세정의를 통한 경제적 정의를 향상시켜서 궁극적으로 민주시민사회 발전에 기여' 한

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조세정의의 개념이 나오는데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포함된 조세개혁이 필요하다. 즉 조세제도, 조세행정, 조세의식 개혁을 통해서 조세정의 실현이 가능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정책토론회에서 조세제도 개혁은 안중범 교수께서 소득과세를 중심으로 설명하였고, 행정개혁은 박훈 교수가, 의식개혁은 발표자께서 홍보와 교육의 중요성을 말씀해주셨다. 추가적으로 조세제도 개혁방안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공평한 조세와 효율적인 조세를 실현하는 것이다. 조세행정 개혁방안으로 탈세 척결, 조세비용 최소화와 오늘의 주제와 같은 납세자 권리증진 및 보호라고 할 수 있다. 조세의식 개혁방안은 교육과 홍보의 강화를 통해 납세자는 납세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권리도 가지고 있으며, 탈세는 범죄로 인식되도록 하여야 한다.

조세행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하다. 미국 국세청(IRS) 출입문에 가보면 '조세는 문명사회의 대가로 지불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타계하신 고 최명근 교수님의 책을 보면 '조세행정은 거위가 소리를 내지 않도록 하면서 털을 뽑는 기술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다. 거위가 살아 있는 생물인데, 자기의 몸에서 털을 뽑는 데 고통없이 세금을 징수한다는 것은 곧 조세행정이 얼마나 정교하고 어려운 일인가로 이해할 수 있다.

박훈 교수가 발표하신 것을 포함하여 조세행정의 발전방향을 말씀드려 볼까 한다.

첫째, 건전한 조세행정이 정착되어야 한다. 조세행정은 행정 자체가 합리적, 활동적, 신속하고 정중하고 사려깊게 집행되어야 한다. 세수를 목표로 해서 목표치를 초과하여 징수하려는 세무행정은 바람직하지 않고 합리적이 행정이 바람직하며 이를 통해 건전한 세무행정을 구현할 수 있다. 세무조사와 관련해서 '과세권은 세무조사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세무조사를 비롯한 세무행정이 무소불위가 아니고 조세법률주

의에 따라 세무행정의 과학화, 투명화, 합리화로 구현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제도 정비로 제도는 세원이 자동적으로 노출이 되는 조세인접제도의 정비와 확충이다. 제도 정비를 보면 박훈 교수가 발표한 알기 쉬운 세법제정과 관련하여 법령 정비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또한 안종범 교수가 지적한 주식양도차익 과세, 음성탈루소득 과세방안, 사업소득세 과세정상화가 계속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셋째, 납세의식의 제고방안으로 납세의식이라는 것은 사실 정부에서 볼 때 '심리적인 세원, 제2의 세원'으로 볼 수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납세자들이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이 조성되면 과세관청의 무리한 세무행정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세 가지 방안 중에서 '납세의식'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 정규 학교 교육프로그램에서 조세교육을 강조해야 한다. 초등학교에서는 조세납세 이유에 대하여 교육을 하고, 중등학교 이상에서는 세법과목을 개설하는 것도 필요하다. 국세청도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하는데 그 예로 매년 연말에 국세청에 "지난 한 해 성실한 납세에 감사드립니다"라는 포스터가 붙어 있다. 이러한 홍보는 저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국세청의 적극적인 홍보 사례이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는 성실한 납세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개선과제

이현석/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유료 질의회신제도의 도입, 기본통칙의 제정 및 개정, 개정세법에 대한 실효성 있는 홍보 등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안들이라고 공감하면서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현재 국세청에서 도입을 검토중인 사전답변제도의 도입은 기업 활동의 불확실성을 줄여줄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사전답변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사항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고, 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하여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나 기존의 정보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 재확인을 위해 신청을 하는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표현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술하는 것도 중요하다. 법조문의 특성상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어렵다면 가이드라인이나 사례집을 발간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과 잦은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들은 세법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여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각종 조세지원 제도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복잡한 세법, 개정된 세법 등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각종 조세지원제도를 잘 알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 같다.

발표한 내용에는 없지만 납세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한다.

현재 세무조사의 선정기준이나 절차 등은 지침과 같은 국세청 내부규정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이를 외부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납세자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세무조사기준을 제시하고 또 조사의 경위, 조사방법, 조사내용 등을 사전통보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정기조사일 경우에는 결산기, 주주총회 기간과 같은 바쁜 시기를 피해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업자등록증을 우편이나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으로 등록증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자등록증 발급절차가 간소화되었으면 한다. 또한 업종추가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할 때 각종 신고 및 납부의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 성실사업자라면 현장 확인을 생략하고 교부해주었으면 한다.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어 금년부터 사업자단위과세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지만 주류를 취급하는 대규모 유통업체와 같은 주세법 적용대상 사업자, 자동차 제조·판매업과 같은 개별소비세법상의 납세의무자 그리고 주유소를 운영하는 정유업체 등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납세의무자 같은 특정 사업자는 관리감독상의 이유로 세무행정 업무처리지침에 의해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승인대상에서 제외되어 각 사업장 단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수취,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여전히 남아 있다.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이들 사업자에 대해서도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승인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자신고제도가 도입되어 기업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지만 서면제출 요구 관행을 개선하고 시스템의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전자신고의 대상도 확대해서 부속서류 등도 가능하도록 해 주었으면 좋을 것 같다.

협력의무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세율도 인하되었으면 한다. 지급조서나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잘못 제출하였을 경우 2%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대부분 고의가 아닌 담당 직원의 실수로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신뢰도 제고를 위한 조세행정 개선방안

김완일/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

발표자께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확보방안을 중심으로 납세자를 위한 조세행정 개선방안에 대해서 연구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본인은 2001년 6월에 일본에서 납세자권리헌장을 만드는 회의에서 “한국의 납세자권리헌장 제정과 그 동향”이란 주제로 우리나라의 납세자권리헌장의 도입 과정과 그 이후의 납세자권리보호를 위한 과세관청의 동향에 대해서 발표한 바가 있다. 그 때 일본 측의 분위기는 대헌장이나 권리청원, 권리장전 등과 같은 시민권은 시민들의 노력에 의하여 쟁취된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납세자권리헌장은 정부 입법에 의하여 1997년에 시행되어 관심이 많았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에는 아직도 납세자권리헌장이 도입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납세자권리헌장 도입 배경이 그러하듯이 국세기본법 제7장의 2에서 장식하고 있는 “납세자의 권리”에서 규정한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과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등과 같은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때가 된 것 같다. 국세청에서 최근 납세자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조세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어렵게 하는 세법이나 예규 등이 정비되지 않는 한 납세자의 신뢰도 향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어렵게 하는 세법의 적용 사례나 예측가능성을 어렵게 하는 부과처분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에 유사사례가액에 의한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규정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규정은 2004년도부터 정부에서 증여세 완전포괄과세제도를 도입한 것과 발맞추어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도 시가에 적합한 가액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시가의 범위를 조정하

는 세법개정을 하였다. 그동안 상속 및 증여재산의 시가 평가는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감정·경매 등의 사례가액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규정은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기간 내에 거래가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에 따라 납세자간 부담세액의 차이가 발생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설되었다. 이 규정은 당해 상속 및 증여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보도록 하였다. 이 규정의 신설로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상속 및 증여재산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당해 재산과 유사한 재산의 거래가액 등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현실적으로 납세자는 유사사례가액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과거의 관행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시세에 맞게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

구체적인 사례가액은 일반적으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당해 평가대상 재산과 유사한 부동산이 평가기준일 전후에 거래된 가액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부동산중개업법 제16조의 2에는 비밀유지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중개업자를 통하여 사례가액을 확인하는 것은 위법행위에 해당되어 부득이하게 납세자가 각 은행 인터넷에서 공개하고 있는 시세표를 확인하거나 국토해양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조회하여 신고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은 적법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관청만이 보유하고 있는 사례가액이 높은 경우에는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은 무시되고 이를 시가로 결정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 납세자가 불복청구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 규정이 시행된 지 5년째이고 단일 조항에 의하여 가장 많은 분쟁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지만 이에 대해 개선하려는 노력도 없이 그대로 적

용되고 있다. 납세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과세관청에서 상속세신고를 위한 조회를 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회신하여야 신뢰도를 향상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에 의한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의 규정이다. 이 규정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처분대금과 인출금액, 채무부담액 중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입법취지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처분한 재산가액 등이 과세자료로 노출이 쉽지 않은 재산으로 변환하여 상속인에게 이전함으로써 상속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우려하여 그 입증책임을 과세관청에서 납세의무자에게 전환하였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상속세의 경우에는 상속개시 후 1년 정도 경과된 시점에 과세관청으로부터 상속세 조사를 받게 된다. 이러한 상속세 조사에서 갑작스럽게 상속을 받은 가족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처분재산 등의 사용처를 해명하지 못하여 난처한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상속추정규정에 의하여 가족을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시점에 상속세 조사를 받아본 상속인 이에 대하여 해명하지 못하여 상속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조사에 대하여 신뢰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국세청에서는 각종 과세자료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는 국세통합시스템(TIS)이 구축되어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에 의한 금융재산의 일괄조회 권한도 있다. 그럼에도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가액 등의 사용처에 대하여 입증하도록 함으로써 입증책임을 전가하고 있어서 상속인의 성실한 납세의무를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피상속인의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의 규정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과세관청이 부담하도록 하여 변칙

상속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을 때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도록 하여야 납세자 신뢰도를 향상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최근 지방세에서는 그동안 반복적으로 동일하게 생산한 예규에 대해서 이를 신뢰하고 따른 납세자에게 신의성실을 저버리고 새로운 예규에 의하여 소급 과세함으로써 조세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사례도 있다.

그 예로서 현행 지방세법 제138조에는 '대도시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세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 제1항 제3호에서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3배 중과세하고 있다. 이 규정에 대한 그동안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은 일관되게 법인 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법인은 비록 휴면법인이었다 하더라도 부동산 취득에 따른 등록세 중과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왔다.

그러나 이 해석은 최근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그동안 '대도시내 법인부동산등기에 중과세 규정'에 대해서 법인설립일 기준으로 5년 경과여부를 판단하던 것을 새로운 행정해석에 의하여 변경하였다. 이 예규에서 "외형상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는 것에 불과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할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지는 경우, 즉 법인격을 남용하는 경우라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대법원판례(97다21604, 2001. 1. 19.)의 취지 및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 등을 반영하여 휴면법인의 인수일을 변경법인의 실질적인 법인신설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것으로 해석하기에 이르렀다.

이 예규에 근거하여 서울시 산하 25개 구청에 행정안전부의 질의 회신문을 첨부하여 등록세 중과업무에

참조하라는 공문을 보내어 등록세 중과세를 하고 있다. 이에 일선구청에서는 행정안전부의 변경된 유권해석에 따라 법인설립일로부터 5년이 지난 법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등록세 중과세를 납발하고 있어서 납세자와 조세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이와 같이 새로운 세법이나 새로운 예규가 생산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납세자에게 적용가능한지, 또는 새로운 해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존의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예측가능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자가 성실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세법령이 예측가능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것이 정착되었을 때 납세자 신뢰도는 향상될 것이다.

## 조세체계를 단순하고 알기 쉽게 만들어야

김진수/ 한국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장

전통적으로 조세행정이 세금을 부과·징수하고 세무조사를 통한 탈세행위를 적발·처벌하는 납세의무 측면을 강조하였다면, 납세자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조세행정을 접근하는 다양한 움직임은 조세 민주화를 위한 바람직한 진일보라고 볼 수 있다.

오늘 세미나의 발표주제로 박훈 교수께서 발표한 '납세자를 위한 조세행정 개선방안'은 납세자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동시에 권익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전반적인 조세행정이 아닌 예규를 중심으로 서술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직접적으로 실천 가능한 세무행정을 중심으로 제안하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본 논문은 먼저 납세자의 과세처분에 대한 예측가

능성의 저해요인으로 예규의 중요성과 한계, 방대한 세법령, 세법령의 잦은 개정, 현행 예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기본통칙 등 네 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대체로 이러한 지적은 타당하다고 생각되지만 방대한 세법령을 납세자의 과세처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 중의 하나로 지적한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 본 논문에서는 개선방안으로서 기존 예규를 정리하여 기본통칙의 개정 및 제정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보더라도 세법령이 방대하다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조문이 많아지더라도 과세요건을 세법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논문은 납세자의 과세처분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으로서 수수료 받는 질의회신제도의 도입, 종전 기본통칙의 개정 및 종합부동산세법 기본통칙 제정, 개정세법의 납세자별 실효성 있는 홍보방안 강구 등의 세 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첫 번째 개선방안인 수수료를 받는 질의회신제도의 도입은 최근 국세청에서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사전답변제(advanced ruling)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과거 엔화스왑에 대한 과세문제, 하나은행의 법인세 과세문제로 볼 수 있는 조세의 불확실성을 많은 부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사전답변제는 현재 OECD 30개 회원국 중에서 27개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9개국에서 수수료를 신청인으로부터 징수하고 있다. 만일 수수료를 받는 질의회신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현재 별도의 수수료 부담 없이 납세자가 이용할 수 있는 국세종합상담센터의 민원질의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추가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수수료의 유무에 따라 법적 구속력의 존재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신중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 수수료의 부담을 요구하는 경우 수수료율을 결정해야 하는데, 납세자 수입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004년에 국세청에서 도입한 납세마일리지제도(tax mileage)와 연계할 수도 있을 것이

다. 왜냐하면 성실납세자에게 부여하는 납세마일리지를 수수료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면 최소한의 부담으로 사전답변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세정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전답변제의 경우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납세자에게 불리한 유권해석 결정이 날 경우 납세자가 불복신청 또는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절차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개선방안인 종전의 기본통칙 개정과 종합부동산세법 기본통칙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한다. 다만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히 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의 경우 예규의 수가 엄청나게 많으므로 그 중의 어떤 내용을 기본통칙에 반영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기본통칙이 세법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해석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볼 때, 기본통칙에 반영되는 예규의 내용은 이러한 전제를 만족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개선방안인 개정세법의 납세자별 실효성 있는 홍보방안 강구에 대해서도 공감한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현재까지 생산된 예규를 정리하여 관련된 기본통칙을 개정하고 외부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업무를 게을리하면 안 될 것이다. 다만 수많은 예규와 기본통칙의 제·개정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점과 IT 환경하에서 전자매체의 접근 가능성이 높은 현실을 감안할 때, 2007년 7월부터 일반 국민에게 제공되고 있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이용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오늘 정책토론회에서는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조세행정의 개선방안을 예규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납세자 권리증진을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방안도 함께 고려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첫째, 우리나라의 조세체계가 복잡하고 세법이 어려워 납세자의 납세준용비용(compliance cost)이 과

다하게 발생하므로 조세체계를 단순화하고 알기 쉬운 세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조세체계가 복잡하게 된 요인은 다양한 목적세와 개별소비세가 존재하고, 본세에 부가되는 부가세(surtax) 형식의 과세 제도가 존재하고, 유사한 목적을 가진 세금이 중복적으로 과세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제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복잡하고 어려운 현행 조세법을 알기 쉽게 다시 씌으로써 조세 법률관계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 제고, 납세협력비용의 감소와 납세순응도 및 조세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징세행정비용의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2000년 국세청 훈령인 「납세자보호사무처리 규정」의 내용 중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와 고충민원처리제도는 법률로 승격시킬 필요가 있다. 국세기본법의 제7장의 2편에 ‘납세자의 권리’에 그 내용을 담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납세자가 조세행정에서 자신의 권리에 대한 규정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셋째, 납세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조세행정 절차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좋은 법제도와 시스템을 갖추고 있더라도 그것을 운영하는 과세관청과 세무공무원이 고객지향적 서비스 마인드를 가지고 조세행정을 펼칠 때 납세자와의 신뢰 관계가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명확한 세법해석 체계의 구축으로 국세행정 신뢰도 제고

양병수/국세청 법규과장

최근에 국세행정의 중요한 화두로서 어떻게 납세자의 신뢰를 제고할 것인지, 또한 세금문제와 관련하여 편안한 납세와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해 국세청의

할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집행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오늘 발표의 주된 내용은 세법해석에 관한 것이다. 조세제도는 복잡하고 전문적·기술적이어서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빈번한 개정으로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이와 더불어, 또 다른 측면에서 세법해석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있다. 명확하지 않은 세법해석 기준이나 과세관행이 그것인데 이는 납세협력비용을 증가시키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한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납세협력비용 축소와 예측가능성 제고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첫째, 발표문은 수수료를 받는 새로운 질의회신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인데 유사제도로서 선진국에서는 advance ruling을 많이 운영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부분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세법개정을 추진중에 있고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질의회신제도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예규는 일반화된 세법해석 기준이고 질의회신은 개별 건에 대한 국세청의 해석이다. 예규 중에서 중요하고 추상적으로 세법해석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을 조문화하여 정리한 것이 기본통칙이다. 실무적으로 예규·질의회신·기본통칙은 납세자 입장에서 모두 같은 것이다. 납세의 기준이나 부과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구속력이 있고 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세청에서 개별 민원질의에 대한 질의회신을 어떤 식으로 개선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어 제도개선을 추진중인데, 가칭 ‘세무문제에 대한 사전답변제도’가 그것이다. 이 부분의 핵심은 제도를 법제화하여 질의한 개별 사안에 대해 과세관청에 구속력을 부과한다는 것인데, 납세자에게 비과세라고 국세청이 책임 있게 답변하였다면 나중에 설령 법령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불이익하게 처분할 수 없다는 의미로 신뢰보호 차원에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일반화될 수 없지만, 구속력을 부여한다는 데 의

미가 있고 그 전제로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제시해야 한다. 실명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여 명확하게 임박했거나 또는 과세대상 거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현실적인 세무문제에 대해 법령해석을 요구했을 때 그 사실관계를 토대로 정확하게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다. 엔스왑이나 역합병이 그 사례에 해당한다. 새로운 제도에 대한 법규정이 없거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칙이나 제18조 제3항의 이미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과세관행 내지 세법해석을 바꿈으로써 과세할 수 없다는 매개규범을 통해 개별적으로 보호될 여지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세기본법상의 규정은 사법까지 구속되도록 하는 강한 신뢰 보호가 수반되지 아니하므로 법제화를 통해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특히 기업 현장에서 시급하게 도입해 달라는 요구가 많다. 이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고 우선적인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만약 입법이 지연되었을 때 신속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세청 내부의 훈령이나 지침을 통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지만 매개규범을 통해 좀 더 책임있고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세무상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세제실과 협의중에 있다. 이 경우도 최종적인 유권해석 권한은 기획재정부에 있기 때문에 국세청 답변이 부정될 경우 신뢰 보호가 깨질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빨리 시행하겠다.

둘째, 일부 기본통칙은 잦은 세법령의 개정, 업무사정 등으로 정비된 지 오래되었으나 현재 적극 정비중이며 일차적으로 2008년 3월에 단순 통칙정비를 하였고, 6월까지 소득세법 기본통칙 개정안을 준비하였으며, 재산세제나 다른 세법에 대한 기본통칙 정비도 진행중이다. 발표문의 개정건의대로 앞으로 주기적으로 정리하여 납세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참고로 기본통칙은 제·개정 절차가 복잡하고 시

간이 많이 걸린다. 개별적인 질의회신이나 예규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이나 회계세무분야 인터넷 사이트에서 상세한 내용이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사이트에서 질의회신내용이 실시간으로 검색가능하므로 어떤 면에서는 기본통칙의 활용성이 예전보다 떨어지지만, 중요한 질의회신이나 예규는 충분히 검토하여 기본통칙이 신속히 업데이트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기본통칙 제정건의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의 선행세제는 지방세 중 재산세이기 때문에 지방세에서 주로 문제되고 있다. 국세청에서도 합산배제와 관련한 회신사례가 다수 있다. 이 부분 중에서 일부 통칙화할 수 있는 부분은 금년중에 추진하겠다.

마지막으로 개정세법 홍보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세법개정내용을 제공하고 있고, 개정세법해설책자나 기타 세목별 주제별 책자를 만들어 일부 배포하고 있다. 또한 이메일(PCRM)을 이용하여 세법개정 내용을 홍보하고 있다. 앞으로는 세무대리인뿐만 아니라 영세중소납세자 및 농민 등 세무대리인과 거리가 있는 분들이 활용하기 쉽도록 개정세법홍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시행하겠다. KIP



## 정책연구

-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 정책과제의 경제적 분석  
김승래 · 박명호 · 홍범교
- 보건 · 의료부문 장기재정 모형 구축  
김종면 · 김우철
- 한국의 민간기부에 관한 연구  
손원익 · 박태규

#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 정책과제의 경제적 분석:

## - 과세베이스 확대를 중심으로 -

김승래 /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박명호 /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홍범교 /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근 들어 양극화 심화나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따라 복지지출, 통일 및 안보 관련 등의 재정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경제사회 환경하에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는 조세체계의 효율성 증진과 안정적 세수확보 차원에서 그 역할과 비중이 지속적으로 커지는 방향으로의 개편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1977년에 처음 도입·시행된 부가가치세제는 그동안 우리나라 국제 조달의 중추적 기능을 해왔으며, 세정 및 납세의식의 현대화에도 적지 않은 공헌을 하여 왔다. 2005년도 부가가치세 세수는 약 36조원으로 간접세수의 80%를 차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약 30%로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는 그 세율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세부담의 전가와 귀착이 경제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경제주체의 행위 변화를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과학적인 방법에 의거하여 부가가치세제에 관련된 경제적 이슈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이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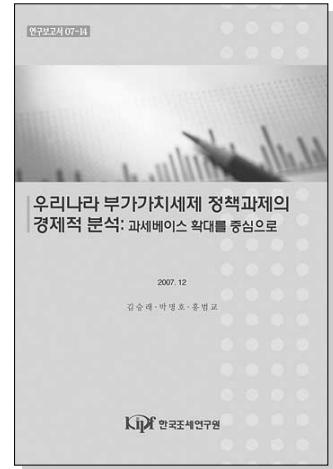
주요 쟁점이며 또한 향후 부가가치세제 개편에서도 주요 정책과제로 제기될 수 있는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와 세율 그리고 간이과세자 문제를 중심으로, 이들 주요 정책현안들에 대한 각종 제도와 정책평가 및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우선, 소득과 자본에 대한 과세 비중이 줄어들고 소비세의 역할이 점차 증가하는 경제환경의 변화와 그동안 부가가치세제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정책과제로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면세는 1977년 법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그 대상이 확대되어, 현재 면세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것은 새로운 재화와 용역이 등장하면서 과세와 면세의 구분이 모호해져 과세 형평성과 누적효과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즉 일부 품목이 면세대상에 포함됨으로써 유사한 성격의 재화나 용역에 대한 면세화 요구(exemption creep)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면세가 최종 단계가 아닌 중간 단계에서 이루어질 경우에는 환수효과 및 누적효과로 인하여 오히려 세부담이 더 커져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세수에 있어 그 역할 증대가 예상되는 소비과세로서 부가가치세는 그 면세범위의 조정에 대한 검토가 먼

저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금융·보험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를 살펴보면, 금융·보험 서비스의 부가가치세 부과 문제는 현실적으로 그 대가를 다른 요인에 의한 대가와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다. 다만, 현 단계에서도 수수료를 명시적으로 수취하는 부수적인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이 가능하다고 보며, 더 나아가 금융회사들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금융서비스에 대한 영세율 적용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의료보건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공익성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면세를 허용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보건용역의 면세 허용범위가 EU 등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나라들보다 광범위한 편이다. 이에 향후 부가가치세 세율 확대를 위해 의료보건용역의 면세 허용범위를 공익성을 가지되 인간과 관련된 부분으로 제한하여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른 나라들의 경우 재정규모의 확대 및 국제적인 조세경쟁 환경 속에서 소비세 비중이 점차 커지는 것을 반영하여 부가가치세율을 꾸준히 인상한 반면,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의 도입 초기부터 10%의 세율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의 복지 재정이나 통일비용 등 재정지출의 확대가 필요하다면, 현행 조세체계의 근본적 개혁 차원에서 현재의 기준세율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세율 인상을 고려할 경우 일부 생필품 관련 품목에 대하여 경감세율을 적용하는 복수세율 체계에 대한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1990년대 후반 들어 인터넷 사용의 급증으로 인해 새로운 거래 유형인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기존의 소비지 과세원칙을 적용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이에 따라 특히 OECD를 중심으로 전자상거래 시대의 조세체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전자상거래를 위한 조세체계는 전자상거



B5변형/185면/2007. 12/  
값 7,000원

래와 전통적인 상거래 간에 중립적이어야 하고, 징세비용은 최소화되어야 하며, 세법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쉽도록 명확하고 단순하여야 하며, 조세 회피 및 탈세를 방지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갖추고, 아울러 기술과 경제발전에도 맞출 수 있도록 유연성 있는 제도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OECD 및 EU 지침을 준용해야 할 것이다.

그 밖에 부가가치세 관련 정책과제로는 주로 세정에 관한 문제들을 들 수 있다. 우선 2008년부터 도입되어 실시되는 사업자단위 과세제도는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을 갖춘 기업에 한하여 사업자단위 과세로 전환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ERP시스템을 구비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주사업장에서의 신고·납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면적인 전환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세금계산서의 허위 발급 문제와 매입세액 불공제 범위의 축소 문제도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또한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보다 알기 쉬운 세법체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앞에서 제시한 부가가치세 관련 정책과제로서 과세베이스의 확대와 관련된 분석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베이스, 유효세율 및 세수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보기 위하여 Gottfried and Wiegard(1991)의 일반균형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업종별 일반균형 I-O 실효세율과 상대가격구조, 세수, 물가 그리고 소득분배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우선 주요 면세품목을 과세로 전환한 후 세수 변화 효과를 분석한 결과, 현재 면세품목인 미가공식료품·농림축수산물 부문은 1조 4천억원, 정부·정부대행기관 부문은 5조 6천억원, 여객운송용역 부문 1조 1천억원, 금융·보험용역 부문 8천억원, 의료보건·교육용역 부문은 4조 7천억원의 세수 증가 효과를 가져왔다. 반면, 도서·신문·잡지 부문은 예외적으로 약 64억원의 세수감소 효과를 보였다.

또한 현행 면세품목들의 과세 전환에 따른 상대가격 및 물가과급효과는 미가공식료품·농림축수산물 부문(0.65%)과 정부 및 정부대행기관 부문(0.26%)을 제외한 도서·신문·잡지 부문(0.02%), 여객운송용역 부문(0.06%), 금융·보험용역 부문(0.07%), 의료보건·교육용역 부문(0.08%)에서는 대체로 그 효과가 일시적이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면세품목들의 과세 전환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는 생필품(음·식료품 관련) 등 일부 주요 품목을 제외하면 그다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경우 시대적 환경 변화에 따라 일부 정책적 실효성이 과거에 비해 미약해진 면세품목들을 점진적으로 과세 전환하여 부가가치세제 과세베이스를 확대하고, 추가로 확보된 세수를 저소득층을 위한 직접 지원프로그램의 확대 등에 효과적으로 사용한다면 관련 정책의 소득재분

배 효과는 더욱 커질 수도 있다.

최근 OECD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과다한 면세범위는 소비형 부가가치세제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부가가치세제의 선진화 및 과세범위의 확대를 위하여 면세대상 품목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를 감안해 볼 때, 우리나라도 과거 금융서비스 등 매출 파악이 힘들거나 단순히 저율과세의 대안으로 면제되었던 품목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현행 부가가치세제 운용상의 효율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향후 부가가치세제의 과세기반 확대와 관련하여 현행 면세 품목의 과세 전환에서 세수 대비 물가나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그다지 유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일반소비세로서의 효율성, 안정성, 단순성 등 각종 긍정적 측면들을 적극 고려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제 과세기반 확대와 관련된 세제개편의 방향은 급진적 구조 조정을 수반하는 근본적 조세개혁 방식보다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접근 방식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향후 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 소비 관련 세제로 세원을 강화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기능할 필요도 있다.

또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면제점은 2000년 이후 동결되어 있어 경제성장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면제점 수준이 하락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제 납세의무 면제점 수준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Keen and Mintz(2004)의 단순모형과 Zee(2005)의 모형으로부터 캘리브레이션을 통해 우리나라의 적정 면제점을 도출한 결과, 현행 면제점 수준은 적정 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사실은 현행 면제점 수준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여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킬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면제점 수준을 현행 1,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소폭 상승하는 경우의 면제자 수 및 세수에 미치는 효과를 예측해 본 결과, 2005년 2기 기준으로 여타 조건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경우 면제자 수는 약 10만 7천건(8.05%)이 증가하고 부가가치세 세수는 연간 355억 5천만원(0.09%)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간이과세자들의 부가가치세 부담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현재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실제 부가가치율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간이과세자들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실제 부가가치율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정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구하는 방식만을 제시하고, 매년 또는 매 3년마다 재평가를 통해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계산하여 시행규칙 등을 통해 공표하는 것이다.

그리고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업종을 보다 세분화하여 부가가치율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도 세부담 감소를 통해 간이과세의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금액이나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금액을 동결하여 가급적 간이과세자를 줄이려는 정책방향과 상반된 것이므로, 간이과세자 관련 정책방향은 일관성 있게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점검하는 재정수요에 대비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조정과 간이과세 등 주요 정책현안 이슈에 대한 체계적이고 보다 심도 있는 경

제적 효과 분석 및 정책평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KIP**

\* 이 원고는 한국조세연구원이 발행한 연구보고서 07-14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 정책과제의 경제적 분석』의 요약 및 정책시사점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 보건 · 의료부문 장기재정 모형 구축

## - 과세베이스 확대를 중심으로 -

김종면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김우철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본 보고서에서는 건강보험 장기 추계의 기존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었던 문제, 즉 사망률 하락의 속도에 대한 재검증에 따른 인구 추계와, 연령별 진료비(급여비)의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등 두 가지 요인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장래의 건강보험 지출 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사회보장 분야의 지출 장기 추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변수가 장래 연령별 · 성별 인구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는 이에 대한 독자적인 분석을 시도하지 않고 거의 전적으로 통계청이 발표하는 장래 인구 추계에 의존하였다. 물론 이는 국가기관에서 제시하는 공식통계에 기초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신뢰도를 보장하려는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선진국의 경험을 볼 때 각국의 통계 전담기관이 발표했던 장기 인구 추계는 사망률 하락의 속도를 과소추계하여 인구 전망도 그만큼 오차가 발생했던 사례들이 있고, 무엇보다 장기 지출추이에 대한 연구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건강보험 지출의 장기 추계 과정에서 가장 기초적인 변수인 인구의 장기 추계와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 중 건강보험 지출이 주로 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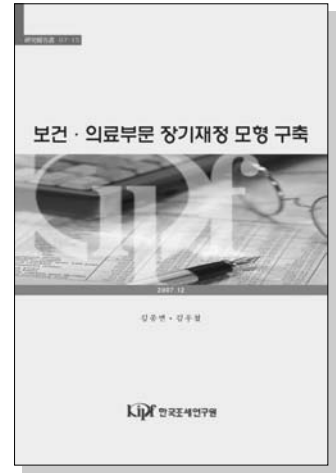
령층 인구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출산율보다 장래 사망률의 장기 예측 개선에 주력하였다.

본 보고서의 새로운 인구 추계는 대체로 통계청(2006)의 인구 추계와 정성적인 측면에서 그리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총 인구가 통계청보다 다소 높게 예측되었다. 정점의 인구는 통계청이 2018년에 49.3백만명으로 예측하였음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2020~2025년에 49.7백만명으로 예측되었으며, 2020년 이후에는 점차 전망치의 격차가 커져서 2050년의 총 인구는 통계청의 42.3백만명보다 약 4% 많은 44.0백만명으로 추계되었다. 그러나 고령화 진행에서는 더 큰 차이가 있어, 2005년에 9.0%로 동일하던 비중이 2020년 이후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여 2050년에 이르러서는 통계청은 38.15%, 본 연구는 41.16%로 거의 8%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보다 세밀한 비교를 위해 양 연구가 전망하는 인구 연령구조를 살펴본 결과, 50대의 장년층 인구는 2050년까지도 양 연구의 전망에 거의 차이가 없으나, 6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2030년에 양 연구 결과 간에 다소의 차이가 보이기 시작하며, 2050년

에 이르러서는 고령층 인구 전망의 차이가 뚜렷하며, 특히 여성보다 남성의 고령층 인구에서 본 연구가 통계청 추계결과보다 높게 나왔다. 이러한 차이는 80세 이상의 초고령층의 사망률 추계에서 통계청(2006)은 연구에 참고하였던 Lee & Carter(1992)가 제시한 방식과는 달리 상당히 보수적이면서 높은 Brass Logit 기법을 채택한 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Lee & Carter(1992)와 마찬가지로 Coale-Guo(Coale-Kisker) 기법을 사용하여 80세 이상 초고령층의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하락할 것으로 가정하였기 때문이다.

인구 추계의 문제와는 별도로, 본 보고서에는 진료비 수준의 상승을 추계하는 방법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기존의 연구 방법에 따른 소득탄력성 기법과 더불어 새로이 연령별 진료비의 향후 변화를 Factor analysis 기법으로 추계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Factor analysis 기법으로 추계할 경우, 기존 연구가 건강보험의 향후 급여비가 2050년경에 GDP 대비 약 6~7%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는 것에 비해, 이보다 상당히 높은 약 13% 수준까지도 전망치를 도출할 수 있음을 보였다. 이는 기존 연구와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어찌보면 그리 비현실적인 전망이 아닐 수도 있다. 건강보험 급여가 국민의료비 중 약 절반 또는 그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큰 무리가 없으며, 이미 선진국 중에서 의료비가 높은 국가는 국민의료비가 GDP 대비 약 15% 수준에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며, 2050년경에는 우리의 고령화 수준은 물론, 소득 수준 역시 현재 관측되는 선진국 수준을 충분히 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2050년경에는 국민의료비가 GDP 대비 15~20% 수준에 이르고, 건강보험은 그 중 절반을 넘어서 국민의료비의 약 60~70%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하면, 건강보험



B5년형/151면/2007. 12/ 값 7,000원

급여가 GDP의 10% 또는 그 이상의 수준에 다다른 것은 상당히 현실성이 있는 시나리오라고 사료된다.

본 보고서에는 그보다는 상당히 보수적인 수준으로 연령별 진료비의 증가가 제약될 것으로 상정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보고서에서 재추계한 인구 전망을 사용하였을 경우, 기존의 소득탄력성에 기반한 추계 결과보다 건강보험 급여비가 2050년 기준으로 약 10% 더 높게 전망되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감안할 때, 기존의 연구나 장기 재정계획에서 상정한 것보다도 의료비 전반과 건강보험 급여지출 수준이 향후 더 높을 가능성에 상당한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국정의 중장기 운용계획은 이러한 가능성을 감안하여 충분한 검토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KIPF

\* 이 원고는 한국조세연구원이 발행한 연구보고서 07-15 『보건·의료부문 장기재정 모형 구축』의 요약 및 정책 시사점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 한국의 민간기부에 관한 연구

## - 규모, 구조와 특징, 관련 정책방향 -

손원익 /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태규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우본 연구에서는 개인과 기업 모두를 포함하는 민간기부의 현황에서부터 기부와 관련된 조세제도, 기부와 관련된 이론적·실증적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 기부의 동기 규명을 위한 실증분석, 기업기부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선행연구에 대한 문헌고찰, 세제의 기업기부에 대한 효과 및 기업기부의 동기 규명을 위한 실증분석 등이 수행되었다.

기부와 관련된 조세제도는 최근에 개정된 세제를 포함하고, 주요국의 기부 및 비영리단체 관련 세제를 소개하여 제도적 측면에서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도록 노력하였다. 특히, 비영리단체의 투명성과 관련된 내용이 주요국별로 정리된 것은 기부 활성화를 위해 비영리단체의 투명성 제고가 요구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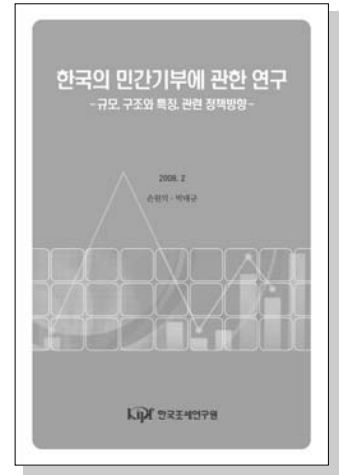
### 1. 개인기부 및 기업기부에 대한 실증분석

기업의 기부와 관련된 이론적 연구와 이론적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검증하기 위한 실증분석 연구에 대한 폭 넓은 심층적 문헌고찰이 이루어졌으

며, 우리 기업의 자료를 활용하여 기업의 기부 동기 및 세제의 영향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기업 기부의 소득공제 한도(현재 소득의 5%) 때문에 기부가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이윤극대화 모형에서도 세율이 기업의 기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며, 기존의 이론적 논의에 따르더라도 소득공제 한도의 소진 여부와 추가적인 기부와의 관계에 따라 동일한 기업에서도 기부의 동기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본 연구에서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향후 기업의 기부와 관련된 조세정책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판단된다. 즉, 기업의 기부와 관련된 조세정책은 개별 기업의 기부규모와 당해기업의 소득공제 한도와의 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대상기업들의 예상 기부행태를 분석하여 정책의 기대효과를 산출한 후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개인의 기부에 대한 외국의 선행 연구에서는 기부자의 소득, 기부금에 대한 세제감면 그리고 연령, 성별 등 인구사회적 변수들이 개인기부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처럼 어느 사회에서든지 개인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는 것은 개인기부의 활성화에 필요한 대책을 마

련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런 외국의 연구들에서 개인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반드시 우리 사회의 개인기부에 영향을 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기부는 그 사회의 문화적, 사회적 요인 등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개인기부에 대한 분석에서 개인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앞서 설명한 기부금 관련 조세제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인기부금에 대한 공제한도가 확대되고 특정 사회복지성 기부금에 대해 공제한도가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기부금 총액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다<sup>1)</sup>. 그러나 앞서 설명한 바대로 우리 사회의 개인기부 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기부금 총액의 증가도 중요하지만 기부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의 수를 나타내는 기부참가율, 개별 기부자들의 기부금액, 그리고 기부자들이 얼마나 자주 기부활동에 참가하는지가 중요한 지표이다. 현재로서 이런 세 가지 중요한 지표에 영향을 동시에 주는 요인으로는 자원봉사의 경험이다. 자원봉사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 기부참가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기부에 참가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기부자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보다 많은 금액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sup>2)</sup>.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사회의 공익적 활동에 자신들의 시간을 기부하는 자원봉사를 통해 금전적 기부인 기부활동의 의미와 역할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로 삼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원봉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 기부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을 뿐 아니라 기부한 사람들 중에



B5변형/241면/2008. 2/ 값 8,000원

서 보다 많은 기부금을 기부하는 결과를 가져다주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 2. 개인기부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안

한국 사회에서 개인기부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서구사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기부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을 높이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기부활동에 참여하는 개인들의 비율이 늘어나게 되면 이들 중에서 정기적으로 기부활동에 참여하는 기부자들의 숫자가 늘어나게 될 것이며 또한 개별적으로 기부하는 개인들의 기부금액뿐 아니라 전체 개인기부금액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면 우선 개인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한데 이는 두

1) 기부금에 대한 세법상 공제제도가 기부에 미치는 효과는 2002년의 자료분석에서는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Park, T. & S. Park, "An economic study on charitable giving of individuals in Korea: some new findings from 2002 survey data," 6th ISTR Conference, Toronto, Canada, 11-14 July 2004 참조.  
 2) 자원봉사와 기부참가율, 기부금액에 대한 영향은 1999년과 2001년의 자료분석에서 모두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태규·정영석(2003), Park, T. & S. Park, "An economic study on charitable giving of individuals in Korea: some new findings from 2002 survey data," 참조.

가지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는 기부활동에 이미 참여하는 기부자들이 대부분 간헐적으로 기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정기적인 기부자로 전환시킬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기부자들의 기부금액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중요하다. 둘째, 이미 기부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기부횟수와 기부금액을 증가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부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을 기부활동에 참여토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기부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왜 기부활동에 참여하지 않는지에 대한 문제를 해소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정책적 지원방안이 될 수 있다. 이상의 두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사회에서 개인기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 가. 기부에 대한 조세정책의 지원과 관리제도의 강화

개인기부활동에 대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우리 사회에서 개인들이 기부에 참여하는 비율과 기부금액에 조세혜택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소득세의 기부금 공제비율이 5%에서 10%로 증가한 이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기부금에 대한 조세혜택이 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인기부에 대한 소득세법상 지정기부금에 대한 공제비율이 5%로 한정되었다가 2000년 12월 세법개정을 통해 10%로 상향조정되면서 개인기부금의 규모가 증가되는 현상을 보였다.

그러나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악용하는 경

우가 있다. 이런 기부금 악용의 사례가 숫적으로는 적을지라도 이는 기부문화 정착에 커다란 저해요인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기부금에 대한 허위, 부당공제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 강화 제도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 나. 자선단체 운영의 투명성 제고방안


개인기부와 관련한 설문조사에서 기부에 참여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기부에 참여하고 있는 기부자들의 경우에도 우리 사회에서 개인기부를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자선단체를 비롯한 기부의 대상기관들의 투명성 부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자선단체의 재정상태에 대한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도록 하는 정책이 점진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비영리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기부금에 대한 세법상의 우대자격을 받는 경우에는 재무회계상의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도록 하는 정책적 방안이 요구된다<sup>3)</sup>. 또한 기부금에 대한 세제상 혜택을 받고 있는 자선적 단체들의 경우 세제감면의 혜택을 부정하게 이용하는 경우가 사회의 자선단체에 대한 인식을 나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민간기부의 자율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정부의 관리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 즉,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공익단체의 허위 영수증 발급에 대해 가산세를 상향 조정해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과 지정기부금단체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키는 등 자선단체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3) 2007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정에서 동법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 등이 결산서류를 공시토록 하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 다.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통한 개인기부문화의 정착

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서 자원봉사의 경험이 개인들의 기부활동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원봉사를 통해 자원봉사의 사회적 의미와 역할뿐 아니라 기부의 사회적 의미와 역할을 깨닫는 중요한 계기로 나타나고 있다.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에 대한 법적,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2006년에 제정되어 자원봉사를 지원하기 위한 단체의 법적 지위 획득,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등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적인 인프라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세계적인 측면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자원봉사 참여자들에 대한 기회비용의 일부(일정비율 또는 일정금액)를 지정기부금과 같이 소득세법에서 처리해 주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이 원고는 한국조세연구원이 발행한 기타보고서 『한국의 민간기부에 관한 연구』의 요약 및 정책시사점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 최신 조세 · 재정 해외동향

### 조세정책 ·

#### 러시아 등 식량수출 규제 완화

주요 식량수출국들이 가격 급등의 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수출규제를 완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일 보도했다.

선진 8개국(G8) 가운데 유일하게 곡물 수출을 규제해 온 러시아는 곡물 가격이 급등하자 작년 11월 밀에 10%, 보리에 30%의 수출관세를 부과했다. 이어 지난 1월에는 밀의 수출관세율을 40%로 올렸다. 하지만 올해 작황이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자 곡물에 대한 수출관세를 1일부터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도 지난달 초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경제 포럼에서 “수출규제는 장기적인 식량난을 불러온다”며 러시아도 식량 가격 급등 대책에 공헌할 뜻을 내비쳤다.

우크라이나는 작년 가을부터 밀과 보리 등의 수출 규제를 강화했으나 지난 5월 하순에 철회할 방침을 정했다.

세계 2위 쌀 수출국인 베트남도 6월 하순, 쌀 수출을 재개할 방침을 발표했다. 베트남은 병충해 등의 피해를 이유로 정부가 미리 계약한 물량을 제외하고 수출을 금지해 왔다. 신문은 작황이 호조인 영향도 있지만 오는 7~9일 세계 식량난을 주요 의제로 열리는

G8 정상회의에서 비난의 화살을 면할 속셈도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아시아경제 2008-07-01]

####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 ‘덴마크’

- 한국 4단계 추락... 세계 37위

덴마크가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한 ‘기업하기 좋은 나라’ 1위에 올랐다. 지난해 1위였던 미국은 4위로 떨어졌다. 한국은 지난해 33위에서 4단계 하락, 37위에 머물렀다.

포브스가 전 세계 121개국을 대상으로 국가별 기업 경영 환경을 분석해 3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덴마크는 저인플레이션, 저실업률, 기업인 우대, 낮은 세금 등으로 기업이 활동하기에 가장 좋은 나라로 뽑혔다. 이어 아일랜드, 핀란드, 미국, 영국이 2~5위를 차지했다.

포브스는 2006년부터 다양한 사회경제학 지표들을 근거로 매년 ‘자본친화지수’를 발표해 왔으며, 올



해는 이를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명칭을 바꿔 공개했다. 헤리티지재단의 경제자유지수, 세계경제포럼의 세계경제력보고서,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지수, 프리덤하우스의 개인자유지수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 항목에 반영됐다고 포브스는 밝혔다.

지난해 4위에서 1위로 등극한 덴마크와 더불어 아일랜드와 핀란드, 영국,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의 선전이 돋보인다. 아일랜드는 지난해보다 무려 19계단이나 뛰어 올랐으며, 핀란드도 지난해 7위에서 7계단 뛰었다. 영국과 스웨덴도 각각 5계단, 3계단 올라섰다. 이들 국가는 정부 관료의 간섭을 제한하고, 과세를 적게 하는 방식으로 기업활동에 이득을 주고 있다고 포브스는 지적했다.

반면 아시아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일본이 지난해 3위에서 무려 24위로 급락했으며, 한국도 33위에서 37위로 내려앉았다. 홍콩과 타이완은 한 계단씩 뒤처졌다. 포브스는 40%가 넘는 법인세와 외국인 직접투자 규제 등이 일본의 기업경영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신문 2008-07-01]

## 美, 휘발유 가격 유럽의 절반 수준

- 美 갤런당 4달러, 유럽 10달러 육박... 세금 차이 때문

미국 휘발유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지만 여전히 유럽 지역에 비해서는 싼 편이라고 뉴욕 타임스(NYT)가 2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갤런당 2달러를 넘지 않았던 휘발유 가격은 최근 4달러를 돌파하면서 미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 지역의 휘발유 가격은 미국보다 두 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휘발유 가격 조사업체인 트릴비 런던버그는 6월 각

국의 휘발유 가격을 조사한 결과 미국의 휘발유 가격은 선진국 중에서도 저렴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 휘발유에 부과되는 세금이 0.49달러인 데 반해 유럽 국가들은 3~5달러 수준의 높은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많은 세금을 내는 국가인 네덜란드의 경우 휘발유의 갤런당 세금이 5.57달러로 미국보다 10배 이상 많다. 이로 인해 네덜란드의 휘발유 소비자 가격은 10.05달러에 달해 4달러인 미국의 2.5배 수준에 이르고 있다.

벨기에의 휘발유 가격은 9.23달러인데 세금만 5.27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독일의 휘발유 가격은 8.98달러, 이탈리아는 8.85달러, 영국은 8.71달러에 달했다.

한편 남미 최대 산유국인 베네수엘라의 휘발유 가격은 미국의 16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갤런당 0.25달러로 조사됐다. 베네수엘라에서는 휘발유 가격이 생수나 우유 가격보다 더 싸다. 석유수출국기구(OPEC)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휘발유 가격도 갤런당 0.6달러로 낮았다.

중국은 2.84달러, 러시아는 3.79달러, 일본은 4.73달러 등으로 조사됐다.

[아시아경제 2008-06-30]

## 세금이 뭐길래...佛, 부유세에 국적포기 부유층 늘어

- 美 해외 진출 기업들 법인세 깎아주니 세수 180억달러 증가

나라마다 세제와 그에 따른 효과는 천차만별인 것이다. 특히 최근 들어 미국의 '고용창출법안'과 프랑스의 '부유세'를 둘러싸고 극명하게 명암이 갈려 눈길을 끈다.

미국에서는 해외 진출 기업의 법인세를 1회에 한해 감면해 주는 이른바 고용창출법안 시행 이후 세수가 180억달러(약 18조 7천억원)나 늘었다고 뉴욕타임스가 25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미 의회와 국세청은 고용창출법안을 2004년 도입해 해외 진출 기업들의 본국 송금 이익에 부과하는 최고 35%의 법인세율을 5.25%로 깎아줬고 그 효과는 즉시 나타났다. 843개에 이르는 미국 기업이 해외에서 쟁진 순이익 3,620억달러를 본국으로 송금했기 때문이다. 송금액 3,620억달러 가운데 감세 대상은 3,120억달러였고, 그 가운데 기업이 2006년까지 돌려 받은 금액은 무려 2,650억달러에 달했다. 기업당 평균 3억 7천만달러의 세금을 감면받은 셈이다. 하지만 미 세무당국도 세금 180억달러를 추가로 거둬들일 수 있었다.

미국의 한 조세 전문가는 “법인세 감면법은 해외 순이익을 본국으로 송금하도록 유도했다는 점에서 성공작”이라고 호평했다.

반면 프랑스에서는 요즘 ‘자산에 대한 연대세(ISF)’, 다시 말해 부유세 폐지를 둘러싸고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들어 국적까지 포기하는 부유층이 늘고 있다고 일간지 르 피가로가 25일 보도했다.

특히 프랑스 최고의 요리사로 알려진 알랭 뒤카스가 얼마 전 프랑스 국적을 포기하고 모나코 국적을 취득하면서 부유세 논쟁에 다시 불이 붙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프랑스에서는 77만유로(약 12억 5천만원) 이상의 순자산 보유자에게는 소득세 외에 부유세가 따로 부과된다. 이에 반발해 2006년 프랑스를 등진 부유층 수도 843명에 이르며, 이들이 해외로 빼돌린 자산도 28억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997~2006년 사이 10년간 총 4,568명의 프랑스인이 186억유로를 해외로 빼돌렸다는 것이다.

[아시아경제 2008-06-26]

## 日 정부, 법인세 감면 시사... 외국인 투자 독려

- 일본 경제재정성 정책 초안서 검토 시사
- 법인세율 인하해 외국인 투자 자극할 듯

일본 정부가 법인세 감면을 검토할 것을 시사해, 외국 투자자의 일본 투자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23일 보도했다.

일본 경제재정성이 지난 주 발표한 경제·재정정책 초안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현행 40.7%의 법인세율 인하를 재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피터 맨델슨 통상 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4월 일본이 선진국 가운데 가장 폐쇄적인 시장이라며 외국인 투자에 더 많이 개방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가 취임 이후 처음 내놓을 경제정책은 이 같은 비판을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통신은 전했다.

실제로 일본의 법인세율은 독일(29.8%), 영국(28%), 중국(25%) 등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다.

다이이치 생명 연구소는 일본 정부가 법인세율을 5% 인하할 경우에 외국인 직접투자가 연간 12.7% 증가해, 일본 경제에 6년간 약 3조 8천억엔(약 36조 5천억 원)의 자본이 흘러들어올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이날 일본 내각부와 재무성이 발표한 2분기 대형 제조업체 경기판단지수(BSI)는 -15.1을 기록해, 지난 1분기 -12.9보다 더 악화됐다.

[이데일리 2008-06-23]

## 中 통계국 “경제 과열 진정.. 안정권 유지”

중국 경제가 과열에서 안정 상태로 완전히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경제의 과열 척도를 알 수 있



## 재정정책 ·

게 하는 거시경제경기 예고지수가 지난 5월 113.3을 기록, 경기 안정을 의미하는 '녹색등'을 기록했다고 1일(현지 시간) 통계국의 발표를 인용해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거시경제경기 예고지수는 이상점인 100에 가까워지면 경기 안정을 의미하는 '녹색등'을 켜다. 지수가 100 이하를 기록하면 경기 냉각을 의미하는 '파란등'이 켜지고 100을 초과할수록 경기 과열 조짐을 보이는 '황색등', 경기 과열을 의미하는 '빨간등'으로 변한다.

예고 신호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이래 중국의 거시경제경기 예고지수는 4개월 연속 '황색등'을 켜 후 올해 1월부터 5개월 연속 '녹색등'을 밝히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가 과열 위험에서 안정권으로 진입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편 거시경제경기 예고지수의 부분 항목인 정부의 재정수입은 12개월 연속 '빨간등'을 켜고 있어 재정수입의 과열된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아시아경제 2008-07-02]

가 인구의 추계를 토대로 국내총생산(GDP)의 성장률을 추산한 결과다. 연구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냈다.

일본의 총인구는 2005년 1억 2,777만명에서 2050년에는 9,515만명으로 감소한다. 15~64세의 생산연령인구 역시 2005년 8,442만명에서 4,930만명으로 무려 40%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감소의 영향 때문에 일본 GDP 성장률은 2010년 1.55%에서 점차 떨어지기 시작, 2030년대 후반에는 성장을 멈춰 마이너스로 들어서 2040년 마이너스 0.19%, 2050년 마이너스 0.22%를 기록한다. 기술 향상으로 생산성이 높아지더라도 생산인구의 감소로 생산성을 지탱할 수 없다는 논리다. 연구소는 "경제성장을 지속하려면 자녀 양육 지원책과 사회보장비에 대한 현역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연금·의료보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이와 관련, 저출산·고령화 업무를 총괄하는 후생노동상의 '부총리급' 격상을 비롯, 사회복지를 위한 갖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신문 2008-06-26]

## 日, 2030년 마이너스 성장 저출산 따른 인구 감소 탓

일본 경제가 오는 2030년 후반부터 마이너스 성장에 들어간다는 예측이 나왔다.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다. 경제의 '빨간불' 경보인 만큼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일본 재무성의 재무종합연구소

## 日, '新에너지정책'

- '태양광발전' 주택 보조금 · 세제 혜택

일본 정부가 태양광 발전 주택의 보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보조금제 부활, 세제 우대 등 새로운 에너지

지 정책을 도입한다. 또 3~5년 사이에 주택용 태양광 발전의 설치가격도 현재의 절반으로 낮춘다.

2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의 자문기관인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는 오는 24일 지구온난화의 방지와 고유가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정책을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 관련 법안은 내년 1월 정기 국회에 상정, 오는 2010년 시행에 들어간다.

신에너지정책은 지난 9일 지구온난화 종합대책인 '후쿠다 비전'에서 제시한 '2020년까지 신축 주택의 70% 이상에 태양광 발전을 설치토록 한다.'는 목표를 구체화한 것이다. 현재 태양광 발전의 주택당 설치비용은 230만엔 정도로 고액인 탓에 일반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태양광 발전의 주택 보급은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에 비해 전체 가구의 1% 가량인 40만 가구에 불과하다.

게다가 지난 1994년 태양광 발전의 내수 진작을 위해 도입했던 보조금제가 2005년 폐지됨에 따라 보급률도 사실상 정체 상태다.

때문에 정부는 앞으로 개인이 태양광 발전의 구입 때 일정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세제 우대책도 신설하기로 했다. 대상은 일반 주택뿐만 아니라 아파트 등도 넣을 계획이다. 단열재의 사용 유무만을 규정한 현행 신에너지전기이용법(RPC)에 태양광 발전의 설치도 포함시키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 태양광 전지기술 개발을 위한 국제적인 기초연구거점의 설치도 추진하는 한편 석유와 가스 공급업체에 대해 현재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화석연료 이외의 바이오 가스·수소 등 바이오 연료를 반드시 일정 비율 이상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서울신문 2008-06-23]

## 2008 美 대선, “부의 공평한 분배 위해 노력”

— 오바마, WSJ 인터뷰서 경제정책 언급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 지출을 대폭 확대하고,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세제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법인세를 소폭 인하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경제정책을 밝혔다. 오바마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오바마는 17일자 월스트리트저널에 실린 인터뷰 기사에서 급속하게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중국, 인도와 같은 개발도상국과 경쟁하고 이른바 ‘승자독식 사회화’로 인한 경제력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제와 정부지출을 적절하게 펼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는 특히 “세계화와 첨단기술, 자동화가 노동자의 입지를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경제적 부가 좀 더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부유층에 대해서는 세금을 인상하고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세금감면 혜택을 늘려 빈부격차를 줄여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인세 인하 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세제를 간소화하고 기업들의 법인세 감세혜택을 줄여 법인세 인하분을 흡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의원은 한·미 FTA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오바마는 16일 미시간주 플린트에서 행한 연설에서 한·미 FTA가 ‘현명한 협상’이 아니라면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한·미 FTA에 반대할 때 애용하는 논리인 양국간 자동차 수출입의 불균형 문제를 꺼냈다. 그는 “한국이 수십만 대의 차를 미국에 수출하면서 미국 차의 한국 수출은 수천 대로 계속 제한하도록 한 협정은 현명한 협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미국 자동차산업의 중심인 미시간주에서 유권자들을 다분히 의식한 연설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미국 최대 노동자단체인 전국노동자총연맹-산업별노동조합(AFL-CIO)이 오바마 의원을 조만간 공식 지지할 것이라고 AP통신 등 외신들이 전했다. 오바마는 18일과 19일 이틀간 AFL-CIO 지도부 및 다른 노조 지도부와 비공개로 만나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AFL-CIO는 존 매케인에 대한 반대 운동을 시작했다.

[서울신문 2008-06-19]

# 정책 흐름



-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요구 현황
- 경제안정 종합대책: 2008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보도 관련 입장
- 6월 및 08년 상반기 소비자물가 동향 및 대응방향
-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
- 신용카드전표 보관의무 폐지 및 공제신청 간소화
- 지방 미분양주택 취·등록세, 빠른 곳은 7월 1일부터 감면
- 행안부, 지방세제 개편을 통한 중산·서민층 유류비 지원 및 서비스 산업 활성화 도모

#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요구 현황

\* 이 자료는 2008년 7월 10일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에서 발표한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요구 현황」의 일부입니다. <편집자 주>

## I. 2009년도 요구안 현황

- 각 부처가 요구한 '09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규모는 276.2조원으로 '08년보다 7.4% 증가
- 예산은 7.4%, 기금은 7.5% 증가

### <2009년도 요구 현황>

(단위: 조원)

	'08예산	'09요구	%
총지출	257.2	276.2	7.4
• 예산	182.6	196.1	7.4
• 기금	74.5	80.1	7.5

\* '08. 6. 30일까지 50개 중앙관서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요구서 기준

- 분야별로는 통일·외교(21.6%), 사회복지·보건(9.6%), 교육(8.8%), 국방(8.8%) 분야 요구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 SOC(△2.4%), 문화·관광(△1.3%), 농림수산(△0.7%) 분야는 '08년 예산보다 축소 요구

### <분야별 요구 현황>

(단위: 조원)

분 야	'08 → '09요구	분 야	'08 → '09요구
사회복지·보건	67.7 → 74.1(9.6%)	문화·관광	3.3 → 3.2(△1.3%)
교육	36.0 → 39.2(8.8%)	환경	4.5 → 4.5(0.5%)
국 방	26.6 → 29.0(8.8%)	농림수산	16.0 → 15.9(△0.7%)
공공질서·안전	11.7 → 12.2(4.5%)	통일·외교	2.8 → 3.4(21.6%)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12.6 → 12.8(1.7%)	일반공공행정	45.9 → 47.9(4.4%)
SOC	19.6 → 19.1(△2.4%)	(지방교부금)	(29.0 → 30.7, 6.1%)

\* 국방비는 일반회계 총계 기준

- 사업별로는 에너지 절감, 취약계층 지원, 중소기업 창업 지원, 공공안전 강화 등 특색 있는 다양한 사업을 요구

## II. 2009년도 요구안 주요 특징

### 1) 과다요구 관행에서 벗어나 한 자릿수 예산요구 정착

- 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제도 도입 전 25% 내외 수준의 요구증가율에서 벗어나, 최근 3개년 평균 증가율(7.4%) 수준으로 요구

〈예산요구 증가율 추이〉

(단위: %)

연도	제도 도입 전			제도 도입 후				
	'02	'03	'04	'05	'06	'07	'08	'09
요구 증가율	24.5	28.6	24.9	9.4	7.0	6.8	8.4	7.4

\* '01~'04년: 예산총계 기준, '05~'09년 총지출 기준

② 의무적 지출 및 정책과제 소요 대폭 증액 요구

- 의무적 지출 소요(예시)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재정교부금 : +4.5조원
  -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 : +1.7조원
  - 4대 공적연금 지출 : + 2.9조원
- 주요 정책과제 소요(예시)
  - 서민주택안정 지원 : +1.8조원
  - 맞춤형 장학제도 지원 : +0.3조원
  - 여수 EXPO 지원, 새만금지구 개발 : +0.4조원
- 고유가 민생안정대책 소요(예시)
  - 신재생에너지, 저소득층 유가보조 : +0.2조원

〈의무적 지출 및 정책과제 소요(예시)〉

(단위: 억원)

사업명	'08예산	'09요구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06,388	333,454	8.8
• 지방재정교부금	289,567	307,109	6.1
• 기초노령연금	15,948	24,391	52.9
• 노인장기요양보험	1,353	3,375	149.4
• 서민주택자금 융자	50,352	68,073	35.2
• 맞춤형 장학제도 지원	4,673	7,247	55.1
• 새만금지구 개발	1,800	3,367	87.1
• 여수 EXPO 지원	23	1,700	1,031.3
• 신재생 에너지 지원	5,327	6,670	25.2

③ 예산 절감·활용을 적극 추진

- '09년 요구안을 토대로 집계한 결과, 각 부처 사업비 절감규모는 7.4조원 수준
-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추가 예산 절감·활용 추진
  - 전 사업을 Zero-Base에서 재검토, 유사·중복사업 통합 등 구조조정 추진

Ⅲ. 향후 예산편성 계획

-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7~9월까지 각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
- 예산안 편성지침(유형·비목별 매뉴얼) 등에서 제시한 편성방향, 공통기준 등을 적용하여 각 부처 요구안을 협의·조정
  - 이명박 정부의 국정방향에 따른 정책과제를 최대한 지원
  - 고유가 민생안정대책 추진을 차질 없이 뒷받침

■ 향후 주요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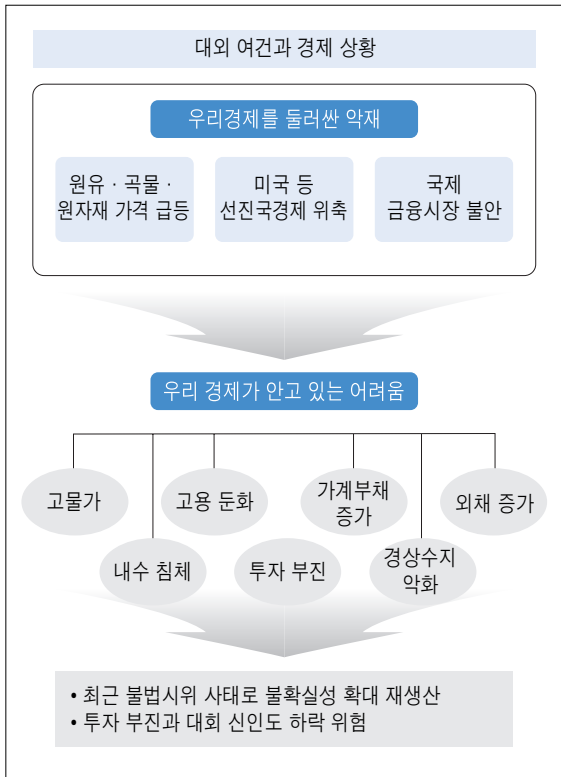
■ 7~9월	• 부처 예산·기금 요구안 협의·보완 • 재정정책자문회의, 시도지사회의, 기금정책 심의회 등 개최 : 9. 16~17(잠정)
■ 9월말	• 정부안 확정
■ 10.2일까지	• 국회 제출

# 경제안정 종합대책

## - 2008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

\* 이 자료는 2008년 7월 2일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에서 발표한 「경제안정 종합대책2008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확정·발표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I. 추진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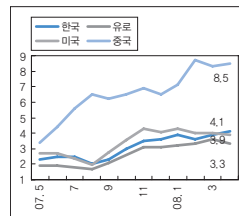
◇ 급격한 원유·곡물·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 여건 악화로 인해 물가가 상승하고, 고용 둔화, 가계부채 증가, 내수와 투자 부진이 심화되는 가운데 대외부문의 불균형이 발생

- ① 원유·곡물·원자재 가격 상승 등 비용측면 요인 (Cost-push)으로 인해 물가 상승세가 확대
  - 석유류 가격 및 개인서비스 요금 상승 등의 영향으로 6월 소비자물가가 5.5%(전월비 0.6%) 상승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추이(전년 동기 대비, %, %p)

	2007년				2008년					
	1/4	2/4	3/4	4/4	1	2	3	4	5	6
소비자물가	2.1	2.4	2.3	3.3	3.9	3.6	3.9	4.1	4.9	5.5
근원물가	2.3	2.4	2.3	2.4	2.8	2.8	3.3	3.5	3.9	4.3
유가(Dubai)	△5.2	△0.2	6.1	44.6	68.6	61.3	64.4	62.0	84.8	94.2
곡물가(밀)	25.3	35.7	38.7	43.3	97.3	125.7	136.9	86.2	59.4	45.6
철근(고철)	38.6	20.1	10.7	19.2	47.5	40.4	44.5	74.5	102.6	114.7

※ 외국의 물가 동향 : 고유가 등으로 인한 글로벌 인플레이션 확산에 따라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큰 폭으로 물가 상승



(단위: 상승률, %)

	연간	'07			'08			
		10	11	12	1	2	3	4
미국	2.9	3.5	4.3	4.1	4.3	4.0	4.0	3.9
유로	2.1	2.6	3.1	3.1	3.2	3.3	3.6	3.3
중국	4.8	6.5	6.9	6.5	7.1	8.7	8.3	8.5
싱가포르	2.1	3.6	4.2	4.4	6.6	6.5	6.7	7.5

**② 취업자 증가 등 고용 여건이 빠르게 악화**

- 5월 취업자 증가규모가 18만명에 그치는 등 증가세가 크게 축소 ('07년 월평균 28만명보다 약 10만명 감소)
- 산업별로는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가운데, 건설업 취업자도 감소
-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 중 저소득·비정규직 계층인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대폭 감소

	2007년					2008년
	1/4	2/4	3/4	4/4	연간	1~5월
취업자 증감(만명)	26.4	28.9	29.6	27.8	28.2	20.0
▶제조업	△5.1	△5.5	△.0	△3.7	△4.8	△2.3
▶건설업	4.6	3.0	△0.6	△0.9	1.5	△2.1
▶서비스업	30.9	36.7	42.4	39.2	37.3	30.0
▶임금근로자	42.4	37.4	46.7	41.3	42.0	30.8
·상용직	35.0	37.6	51.3	42.3	41.6	44.5
·임시·일용직	7.4	△0.3	△4.6	△1.0	0.4	△13.7

**③ 고용부진에 따른 소득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가계부문 차입이 증가하면서 가계부채가 증가**

- \* 가계부채 규모(조원) : (02)439 → (06)582 → (07)631
- \*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비율(%) : (02)118 → (06)143 → (07)148
- 경기하강 국면이 지속될 경우 부채비율이 높고 가계소비가 가처분소득을 초과하고 있는 저소득 계층의 어려움 가중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 금융부채비율(%, '07)	164	117	108	122	127
• 월평균 흑자(만원)	△34	10	37	79	205

주 : 월평균 흑자는 '07년 통계청 발표 가계수지 조사결과

**④ 견조한 수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내수부진이 심화되어 성장 속도가 크게 위축 (전기비 07. 4/4 1.6%→08. 1/4 0.8%)**

- 특히, 고유가로 인한 구매력 손실로 소득(GNI)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면서 실제 피부로 느끼는 경기는 더욱 악화

	2007년				2008년	
	1/4	2/4	3/4	4/4	1/4	2/4
GDP 성장률(전기비,%)	1.0	1.7	1.5	1.6	0.8	-
GDP 성장률(전년 동기 대비,%)	4.0	4.9	5.1	5.7	5.8	-
GNI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	3.6	4.6	5.2	2.6	1.3	-
수출증가율(전년 동기 대비,%)	14.6	14.1	9.4	18.2	17.3	23.3

**⑤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기업 심리 위축으로 투자부진 지속**

- 설비투자가 크게 위축되고, 건설투자는 감소세

	07.연간	1/4	2/4	3/4	4/4	08.1/4
설비투자(전년 동기 대비,%)	7.6	10.9	11.0	2.3	6.5	1.7
건설투자(전년 동기 대비,%)	1.2	3.7	1.6	△0.1	0.4	△0.7

- 고유가 등으로 미래 수익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투자심리가 냉각되고 있어 당분간 부진 지속 예상
- \* 전 산업 BSI(전경련) : (07. 10) 116.3→(07. 12)103.4→(08. 4)98.1→(08. 6)95.3
- 경상수지 악화·외채 증가 등 대외부문의 불균형이 발생
- (경상수지) 수출호조에 불구하고 유가 상승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폭이 크게 축소되면서 '08. 1~5월중 적자(△71.7억불) 시현

	'03	'04	'05	'06	'07	1~5	08.1~5
경상수지(억불)	119.5	281.7	149.8	53.9	59.5	△29.0	△71.7
▶상품수지	219.5	375.7	326.8	279.1	294.1	98.0	10.3*
▶서비스수지	△74.2	△80.5	△136.6	△189.6	△205.7	△90.6	△72.1
- 여행수지	△47.4	△62.8	△96.0	△130.6	△150.9	△59.3	△47.2
원/달러 상승률(%)	△4.9	△4.2	△11.7	△7.2	△2.8	△3.1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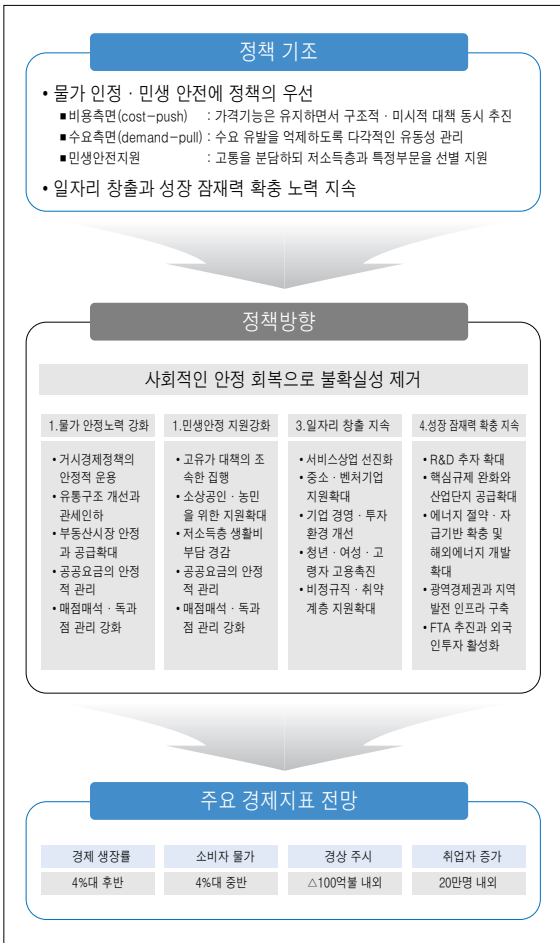
\* '08. 1~5월중 원유가격 상승에 따른 수지 악화규모 : 95억불

- (대외채무) 총외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선물 환 매도에 따라 단기외채가 증가하고 있어 순채무국으로 전환될 가능성

	'03	'04	'05	'06	'07	1/4	'08.1/4
총외채(억불, 기말)	1,574	1,723	1,879	2,601	3,822	2,817	4,125
(증감)	159	149	156	722	1,221	806	1,308
단기외채(억불, 기말)	508	563	659	1,137	1,603	1,287	1,765
순채권(억불, 기말)	705	1,119	1,207	1,066	355	956	149
외화보유액(억불, 기말)	1,556	1,991	2,104	2,390	2,622	2,439	2,642

주: 총외채 증감액 중 분기말 금액은 전년 동기 말 대비 증감액임

## II.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 기본방향



## III. 하반기 주요 정책과제

### 1. 물가 안정 노력 강화

#### ① 거시경제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용

- (통화 · 신용) 국내 경기 · 물가동향을 감안하여 안정적으로 운용하되 과도한 시중 유동성에 대한 건전성 차원의 관리 추진

(단위 : 말잔 대비 증감액, 조원)

	'06년	'07년				'08년	
		1/4	2/4	3/4	4/4	1/4	4월
M2(평균 증가율, %)	8.3	11.5	11.0	11.1	11.2	13.3	14.9
가계대출	40.9	2.4	2.3	6.1	6.9	4.0	3.4
주택담보대출	26.8	1.3	△0.5	1.1	2.7	2.6	2.4
대기업 대출	△1.3	0.0	2.6	3.3	2.4	7.3	3.5
중소기업 대출	43.5	14.3	23.2	14.9	12.8	15.1	7.4

\* 은행권 원화 대출 기준(산은 · 수은 제외)

- 특히, 금융회사의 대출확대 · 외형자산 경쟁으로 인한 유동성 증가에 대하여 건전성 차원의 관리 강화

→ 가계대출은 DTI/LTV 등 상환능력 중심의 여신심사 · 건전성 관리

→ 기업대출은 대기업의 경우 과도한 M&A 대출을 억제하고, 중소기업은 자금지원을 계속 강화해 나가면서, 신용정보 · 리스크 관리 등을 통해 건전성 관리도 지속

→ 금융회사간 무분별한 자산 확대 경쟁을 막기 위하여 수익성 · 건전성에 대해 집중적 관리

• (환율) 실물경제 흐름과 괴리되지 않도록 하되, 급변동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지지 않도록 안정화 노력 지속

• (재정) 감세를 통해 조세부담률을 낮춰나가되 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재정지출을 운용

\* 조세부담률 인하 목표 : (07 잠정) 22.7% → (12) 20% 수준

- '09년 예산도 서민생활 안정지원과 성장동력 확충, 재정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편성

## ② 유통구조 개선과 관세 인하

- (농수산물) 농수산물 직거래 확대, 산지유통의 전 문화와 규모화 등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지속 추진
- 금년 중 사이버 농·수산물 거래소 설립방안을 마련하고 소비자 직관장을 단계적으로 확대('07년 191개소 → '08년 220개소)
- "1군 1유통회사" 및 "품목별 대표조직"(하반기중 3개 품목)을 육성하고 농협의 산지유통기능 강화
- 국제곡물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선물거래 기능 활성화, 비축 강화 등 국제곡물 가격상승 대응체계 강화('08 하반기)
- (석유제품) "정유사-대리점-주유소"로 수직 계열화되어 있는 석유제품 시장의 경쟁을 촉진
- 대리점 및 주유소 간 수평거래를 허용하고 석유제품 선물시장 상장기반 조성을 통해 석유제품 가격 투명성 제고
- 정유사·주유소 간 부당한 배타적 공급계약 등 석유시장의 경쟁제한적 요인을 제거
- (화물 운송구조) 화물운송 가맹사업 활성화 등 다단계 운송거래 개선 대책을 마련('08. 12)하고 표준운임제 시범운영('09년) 및 이를 위한 법제화 추진
- (관세 인하) 수입원자재에 대한 관세부담 완화 추진
- 가격 및 수급상황을 점검하여 가격안정을 위해 필요시 '08년 말 종료되는 긴급할당관세를 연장
- 최근 가격이 급등한 수입 원자재와 일부 완제품에 대한 관세 추가 인하 검토

## ③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택 공급 확대

- (부동산 시장 안정) 시장동향에 대한 상시 점검과

함께 물가 안정에 직결되는 전·월세 수급상황을 밀착 관리

- 개발사업 지역의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시장불안 발생시 주택거래 신고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을 확대 지정
-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의 가을철 집중 입주 추진
  - \* 수도권 하반기 입주물량(13천호) : (3/4분기) 6천호 (4/4분기) 7천호
- (주택공급 확대)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연 30만호)을 차질없이 추진하되 수요가 많은 도심에 공급을 확대하여 수급안정 기조 구축
- '도심내' 공급활성화를 위해 단지형 다세대 도입('08. 10월), 재건축 절차개선('08. 10월) 및 역세권 고밀개발 시범사업 추진
- 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상복합 분양가 가산비 개선('08. 9월)
- 이미 지정된 신도시 사업 등 공공택지 개발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택 수급안정의 저변 강화
  - \* 분양 : 김포(7~12월 : 7천호), 광고(9~11월, 2천호), 입주 : 판교(12월)

## ③ 공공요금의 안정적인 관리

- (중앙공공요금)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부담이 크지 않은 철도·상수도·고속도로 통행료 등은 하반기에도 동결
- 일부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경영합리화 등을 통해 최대한 흡수하도록 하고 인상시기를 분산
- (지방공공요금)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상·하수도, 쓰레기 봉투료 등은 원가절감 등을 통해 안정 유도
- 공공요금 등 지역물가 안정에 노력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

5 매점매석·독과점 관리 강화

- (매점매석 단속) 지정부·국세청 등 합동으로 철근에 대한 매점매석 여부를 연말까지 중점단속하여 시장 가수요를 억제
- (담합·독과점 감시)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석유, 이동전화 서비스, 자동차, 의료, 사교육 등 5개 분야에 대하여 가격 담합·독과점 등을 집중 감시

6 원유·곡물·원자재 등 주요 수입결제자금의 안정적 지원

- 수입업체 결제자금 적기 지원 등을 통해 자금수급 안정 도모

7 물가 및 민생안정 점검체계 강화 및 국민적 협력 유도

- (점검체계 강화) 물가 및 민생안정 장관급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범정부적 물가 및 민생안정 노력 강화
- (국민적 공감대 확산) 언론매체, 블로그를 통한 홍보 등을 통해 물가 안정을 위한 국민적 협력 분위기 확산

2. 민생 안정을 위한 지원 강화

- 고유가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 종합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

1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의 조속한 집행

- (민생안정 예산·세법개정 추진) '07년 세계잉여금 잔액(4.9조원)을 활용하여 민생안정 예산을 편성·집행(개원국회)
- 유가환급금·보조금 등의 지급을 위한 세법 개정도 추진
- 예산 및 기금사업에 대한 철저한 집행관리 추진

〈고유가 극복 민생안정대책의 주요 내용〉

- ① 근로자·자영업자 : 유가 상승에 따른 어려움을 감안하여 대중교통비 부담액의 50%(월 2만원 수준)를 소득세 환급 형식으로 지급
- ② 대중교통·물류 사업자 : 기존 유가보조금 제도를 유지하면서 유가 상승분의 50%를 추가 보조
- ③ 농어민 : 현행 유통세 면세제도를 유지하면서 유가 상승분의 50%를 보조금으로 지급
- ④ 에너지 절약 등 구조적 대응 및 에너지 자원 확보노력 강화

- (추가대응책 마련) 유가 동향을 감안하여 상황별 위기관리계획(Contingency Plan)을 마련하고 추가 민생안정대책도 강구

2 소상공인·농민을 위한 지원 확대

- (전통시장 지원 강화) 영세자영업자 등의 생활기반이 되는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 확대
- 1시장 1주차장 등 전통시장 공동기반시설 확충사업 확대('08.하반 452억원 추가지원)

\* '08년 주차장 설치 지원시장개) : (당초) 57 → (변경) 71

- 상권 규모, 배후지 인구, 업종 구성 등의 유형별 특성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 마련 ('08. 12월)

- 전국 공동 전통시장 상품권을 도입하여 수요 기반 확충

→ 일부 전통시장에서만 사용되는 전통시장별 상품권을 전국 전통시장(1,600개)에서 통용될 수 있는 공동 상품권으로 도입

→ 상품권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판매·환전 창구를 확대하고 이용 유인 제공

\* 판매·환전창구 확대 : 인터넷 등을 통한 온라인 상품권 주문·배송, 우체국·농협 등을 통한 판매·환전 추진

\* 이용 유인 예 : 주차장 무료이용, 상품권 일련번호 복권 도입 등

- (소상공인 지원 강화)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
  - \* 소상공인 정책자금(중기청, '08년) : 2,400억원 → 2,875억원
- (농민 부담 경감) 비료가격 상승 등에 따른 농민에 대한 지원 확대
  - 화학비료 가격 인상(60%)에 따른 추가 부담의 일부(정부, 농협·비료업체, 농민 각각 1/3 수준)를 지원(301억원)
  - 유기질 비료 지원 물량 확대 및 단가 인상을 통해 농가 부담 경감(620억원)
    - \* 지원 물량(만톤) : (현행) 154 → (변경) 200
    - \* 지원 단가(원/kg) : (현행) 700 → (변경) 1,160
- (축산농가 부담 경감) 소 브루셀라병, AI 등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추가지원(현행 : 700억원 → 1,200억원)

### ③ 저소득층 생활비 부담 경감 등 생활지원 강화

- (주거비)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방식과 병행하여 주택임대료를 보전하는 '주택바우처' 방식 도입
  - \* '08년 하반기 중 시범사업 모형을 개발하고 '09년 시범사업 시행
- 저소득 신혼부부를 위한 소형분양 및 임대주택을 하반기부터 본격 공급하고 저리의 용자지원도 시행
- 서민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08년 3조원 계획 → 최대 4조원 지원)
- (의료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08. 7월)을 통해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
- (통신비) 저소득층에 대한 이동전화요금 감면제도 대상 및 혜택을 확대하고 신규진입 확대 등 규제 완화(전기통신사업법 개정)를 통해 요금인하를 유도('08. 12)
  - \* (대상) 기초수급자 18세 미만, 65세 이상 → 기초수급자 전

체 및 차상위계층 (혜택) 기초수급자(기본료 면제, 통화료 50%감면), 차상위(기본료·통화료 35% 감면)

- (사교육비 및 교육 격차)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대학생 멘토링' 사업이 확대 시행되도록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인센티브 강화
- 멘토 선발·교육과정의 체계화, 실시과정에서의 모니터링 강화, 참여학생에 대한 인증서 발급 등 추진체계를 정비
- 우수 대학생들의 참여 유도를 위해 활동비 지급 (약 월20만원), 학점인정 외에 취업, 해외연수 등과 관련된 인센티브 강화
  - \* (예) 국비유학생 선발시 우대 및 해외 취업·인턴 기회 제공 등
- (화물차 통행료) 10톤 이상 화물차에만 적용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50%)을 모든 화물차로 확대('08. 7. 1 시행)
- (근로장려세) '09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해 일용근로자 소득과약률을 제고하고 전산시스템 확충 등 차질 없이 준비
  - \* '08년 소득을 기준으로 연간 총소득이 1,700만원 이하인 가 구(아동 2인 이상, 무주택)에 대해 최대 80만원까지 지급
- (자활공동체 창업자금 지원) 저소득층 창업을 지원하는 무보증 소액대출인 '자활공동체 창업자금 ('08년 50개소 20억원 지원)' 지원 확대

### ④ 서민·금융소외자의 금융이용상 애로 해소

- (채무재조정 및 저금리대출 전환 지원) 신용회복 기금을 설치('08. 3/4분기)하고 정부계 은행 출연금 등 2,000억원 수준의 재원을 기금에 우선 투입
- 서민 등이 고금리 사채를 저리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보증 지원
- 금융 연체자 등을 대상으로 채무재조정 실시
- (서민 금융기관 영업기반 확충) 저축은행의 영업기반을 확대하고 신탁의 대형화 유도
- 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을 경제권을 감안하여 광역

화(11개 영업구역 → 6개)

→ 저축은행의 수익기반 다변화를 위해 자산운용  
규제완화 및 부수업무 확대 추진

\* 거액여신한도(자기자본의 5배 → 8~10배) 확대,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은 M&A중개·주선업무 허용 등 검토

- 저축은행 중앙회에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이용자  
에 대한 신용평가 내실화

- 행정구가 설치된 중·소도시 소재 지역신협의 공  
동유대 범위(조합원 모집 범위)를 해당시 전체로  
확대

\* (예) 안양시의 경우 구단위(동안구와 민안구)로 분리되어 있  
는 지역신협의 조합원 모집범위를 안양시 전체로 확대

→ 조합원의 출자한도도 상향조정 : 출자금의  
10% → 15%

• (금융소외자 지원) 소액서민금융재단을 통해 저  
소득 금융소외자의 창업·취업·생활안정자금,  
신용회복지원 사업 추진

\* 은행·보험사 등 금융회사의 휴면 예금·보험금을 활용해  
소액서민금융재단에서 민간복지사업자에게 자금지원(08하  
반기중 280억원 지원, 매년증액)

• (소상공인 네트워크론 도입) 카드매출액을 기준으  
로 대출한도를 설정하고 매출 발생시 일정부분을  
자동 상환·관리하는 소상공인 네트워크론 도입

\* '08년 하반기 기업은행에서 시범 실시하고 지역금융기관으  
로 확대 및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의 보증지원 검토

### 3. 일자리 창출

#### ①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지 속 추진

• (서비스산업 선진화) 1단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2·3단계 추가대책  
마련

\* 1단계 방안 : 관광·의료관광 및 교육서비스 경쟁력을 제고  
하고 제주도 등 지방 골프장의 경영혁신 노력과 연계하여  
종부세 부담 완화('08. 4. 28)

- 2단계 방안은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 합리화에  
중점('08. 9월)

#### 〈2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방향〉

##### ◇ 기본방향

■ 서비스시장에 대한 진입규제를 개선하여 경쟁  
활성화

■ 영업규제를 개선하여 기업·소비자 등의 만족  
도를 제고

##### ◇ 주요 검토분야

■ 금융·방송·통신, 문화콘텐츠 등 급격히 변  
화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이 필요한 분야

■ 광고, IT서비스 등 시장 확대, 해외 진출로 성  
장성이 높은 분야

■ 보건·유통 등 국민생활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분야

- 3단계 방안은 유망서비스산업 성장동력화 및 서  
비스 인력의 질적수준 제고에 역점('08. 12월)

• (지식기반서비스 육성) 지식기반 서비스 등 유망  
서비스업을 신성장 동력 후보군으로 선정하고 중  
장기 육성전략 수립

- 제조업과 차별화된 지식서비스 R&D분류 체계를  
마련하고 기술청사진을 작성하여 지식서비스의  
생산성 제고('08.하반기)

- 경쟁력 있는 문화콘텐츠 제작사의 건실한 성장을  
위해 문화콘텐츠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 마련

#### ② 고용 흡수력이 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 화

• (창업 활성화) 창업활성화를 위해 창업활동에 대  
한 규제를 개선하고 지원을 강화

- 각 행정기관 전산망을 연결하여 법인설립 전 과  
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채택 창업시스  
템(StartBIZ)' 개발 착수

- 교수·연구원의 휴직 허용,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규제완화 등 대학·연구기관의 창업 활성화(벤처특별법 개정, '08. 12월)
- 청년창업 특례보증 도입('08. 8월), 중기청 융자 지원자금의 창업기업 비중 확대('08년 24% → '12년 40%) 등 창업지원 확대
  - (창업지원보증공급 확대) 지원대상을 제조업 중심에서 전체 서비스 업종까지 확대하고 공급 규모도 대폭 확대
    - \* 신보 보증공급액('08년) : (당초) 5조원 → (확대) 7조원
  - (가업승계·경영지원 등)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 공공구매 확대, 납품단가의 합리적 반영 유도 등을 차질 없이 추진
    - \* 중소기업 제품 구매목표 : '07년 63.0조원 → '08년 71.3조원
  - (직접조달금융 지원)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는 유동화회사 보증제도를 도입하고 거래소·코스닥의 상장요건을 세분화하여 중소기업 상장 활성화
  - (모태펀드 확충) 모태펀드 조성규모를 시장수요를 보아가며 2배 수준까지 확충하여 민간 벤처투자조합 활성화 도모
    - (현행) '08년까지 0.8조원 조성 → (개선) '02년까지 1.6조원 조성
      - \* 모태펀드 :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조성된 투자조합(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하여 민간 벤처펀드를 조성하는 펀드를 지원하는 펀드
  - (특허권 유동화제도 도입) 벤처기업이 보유한 '특허권'이 창출하는 미래 현금흐름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벤처기업의 기술상업화자금 조달 지원
- 기술보증기금의 지급보증을 통해 유동화증권의 신용을 보강
- 특허신탁관리제도(9월 시행)를 활용한 세부 도입 방안을 하반기중 마련
- (중소기업 특허유지 비용 부담 완화) 특허 등의 수수료 체계에 대한 전면 개편을 통해 특허·실

용신안·디자인 연차등록료 등의 인하 추진

### ③ 건설부문 고용여건 개선

- (공공·민간 건설투자 확대) 공공부문 투자확대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
- SOC 적기 완공을 위해 「민간 선투자제도('08년 중 3,000억원 수준, '09년 1조원 수준 확대)」를 시행하고 주요 공기업의 '09년 사업 물량 중 일부(5조원)를 '08년에 앞당겨 집행
- 민간 투자사업(BTL 4.2조, BTO 3.3조)을 차질 없이 집행
- (지방미분양 주택 해소) 지방미분양 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를 위해 금융·세제관련 규제 완화
  - \* 예) LTV 상향 조정(60% → 70%), 취·등록세 감면(분양가 2% → 1%) 등
- (국민임대주택 및 SOC 투자확대) 국민임대주택 건설('08년 8만호)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도로, 철도 등 SOC 시설투자의 완공시기 단축(민생안정 예산 1.0조원)
  - \* 도로(6,681억원), 철도(2,600억원), 도시철도(1,050억원)
- (건설산업 지원 확대) '입찰-낙찰-시공-분쟁조정' 등 전 과정에 걸쳐 국가계약제도를 개선하여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
- 특히 하도급업체에 저가 수주부담 전가를 방지하고 원·하도급자간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 마련

### ④ 기업 경영·투자 환경 개선

- (기업환경개선대책의 지속 추진)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08. 6)』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2단계 대책에서는 Matrix형 접근방식에 보다 충실한 개선방안을 강구
  - \* 기업환경 각 분야(법률·입지·환경 등)와 기업의 Life-Cycle의 각 단계(창업-기술지원-경영지원-업종전환-퇴출 등)를 입체적으로 연결하여 각 분야·단계별로 개선방안을 강구

- 중소기업의 경영지원을 위한 기술평가·신용보증체계 개선 및 물류·유통·정보통신·광고·해외투자 관련 규제 완화 등을 중점 추진
- 재규제 역제를 위한 인사·조직상의 조치 등을 보다 구체화
-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합동회의」(4. 28)에서 건의된 투자어로 해소방안도 조속히 확정
- (기업규제 개선)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지주회사 규제완화를 조기에 마무리
- 기업 규제 전반에 대해 타당성과 바람직한 규율체계를 검토하여 합리적 개편방안을 마련
- 시장 자율감시 기능의 강화를 통해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 투명성·책임성 제고를 동시에 추진

**5 청년·여성·고령자의 고용 촉진**

- (청년층) 청년인턴제 신설 등을 통해 청년층 고용을 적극 추진
- (청년인턴 지원제도 신설) 청년인턴제 계약(6개월)을 체결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턴기간 중 1인당 월 약정임금의 50% 지원
  - 인턴기간 종료 후 정직원원으로 채용시 1인당 6개월간 동일금액을 추가 지원하여 정식채용 유도
- \* 사업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해당사업을 민간기관에 위탁 실시
- (New Start 프로젝트 확대) 취약청년대상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New Start 프로젝트」를 확대 시행('08년 3천명 → '09년 1만명)
- \* (1단계) 개인별 심층상담 (4주, 30만원 지급) → (2단계) 취업의욕·능력증진 프로그램(훈련/직장체험 등) → (3단계) 집중 취업알선
- (청년 해외취업 확대) 청년 해외취업을 적극 지원하여 금년 하반기 약 3만명('09년 4.5만명)의 해외취업 및 연수 추진
  - 글로벌 취업지원 사업을 통하여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산업인력공단)을 제공('08년 4천명, '09년 5천명 이상)

- \* 중국, 일본, 캐나다 등 해외취업알선 사업 등에 '08년 214억 원 지원
  -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확대를 위하여 신규 비자협정 체결 및 쿼터 확대 추진('08년 3만명, '09년 4만명)
- \* 워킹홀리데이 협정 : 체류기간(1~2년) 중 단기 취업활동 허용
- 기체결국(08년, 천명) : 일본(3.6), 캐나다(2.0), 뉴질랜드(1.5), 호주(약25)
- 신규체결 추진국 : 미국·영국·프랑스·독일 등 9개국
- (여성) 여성 인력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일하는 여성의 근로여로 요인을 적극 해소
- 시설에 지원하던 보육료를 전자바우처 방식으로 부모에게 직접 지급하여 보육료 수혜 체감도를 제고
- \* 영유아보육법 개정 추진('08. 정기국회 제출 예정)
- 파트타임·재택근로 등 “일·가정 양립 일자리 모델” 개발('08. 12)
- 주부 등 경력 단절 여성에게 종합적인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일(다시 일하기)’ 센터 시범운영('08. 11)
- \*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06. %) : 한국 54.8, OECD 평균 60.8, 미국 69.3, 일본 61.3
-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인증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08. 하반기)
- \* 탄력적 근무제도, 자녀양육 지원제도 등을 잘 운영하는 기업
- 위탁아동에 대한 보육부담 경감을 위해 위탁아동도 일반자녀와 동일하게 소득세 기본공제 허용
- (고령자) 임금 피크제 확산 등을 통해 고령자 근로유인 제고
- '06~'08 기간중 한시적으로 운영중인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원제도를 상시제도로 전환
- \* 임금 감액분의 50%를 매분기 15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

- 근로자대표의 동의없이 정년후 고용을 연장하여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보전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고령자고용촉진법 및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

\* 현행 임금피크제보전수당제도는 근로자대표의 동의하에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만 지원

- 고령자(60~64세)가 연금수급을 연기하고 계속 근로할 경우 지급하는 연기연금제도의 가산률 상향조정 방안 마련

\* 현행 가산률 : 1개월당 연금수급액의 0.5%p 가산

#### ⑥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보험기금 지원 확대

- (직업능력 개발 계좌제) 구직자 스스로 필요한 훈련과정을 선택·이용하는 직업능력개발 계좌제(1인당 2백만원 한도)를 실업자에 대해 시범실시('08. 9월~, 204억원)
- (건설근로자 인건비 보조) 약천후 등 기후요인으로 건설공사가 중단되는 기간에도 건설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인건비 보조('08. 7월~, 1일 1인당 3.5만원, 총 29억원)

#### ⑦ 비정규직 처우 개선

- (정규직 전환 지원)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 정규직 전환 근로자 1인당 30만원을 세액공제
- (고용보험 가입촉진) 영세사업장(9인 이하)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촉진을 위해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체납 보험료 및 가산·연체금 면제
- (직업훈련)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가 직장생활을 병행하면서 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말·단기 고급과정 JUMP(Job Skills Upgrading & Maturing Program) 제공

#### ⑧ 사회적 일자리 확충

- (산모·신생아도우미) 저소득 출산가구에 대해

산모·신생아도우미 집중지원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도우미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07년 1,542명 → '08년 2,419명)

- (노인 일자리) 노인의 일을 통한 사회활동과 소득 증대를 위해 노인 적합형 일자리 창출 지원 확대

\* 아동 안전보호, 문화재 해설, 시험감독관, 주유원 등

\* 노인 적합형 일자리(만개) : ('07) 11 → ('08) 13.7

- (사회적 기업 육성) 취약계층이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유지하도록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을 적극 육성('07년 55개 → '08년 115개 인중)

- '10년 말까지 인증받은 사회적 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 4년간 50% 감면

\* 사회적 기업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기업

#### ⑧ 1사1인 채용운동 활성화

- 민간(중소기업중앙회)에서 추진중인 '1사1인 채용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 강화

- 중기청에서 기업의 채용수요를 파악하고 노동부(고용지원센터)가 보유한 구직자 정보를 연계하여 기업에 제공

\* 중기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지원체계 마련

- 정부의 고용지원 제도를 연계하여 '1사1인 채용운동'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 강구

### 4. 성장잠재력 확충

#### (1) 신성장동력 확충 및 시스템 선진화

##### ① '12년까지 GDP의 5% 수준('07년 3.8%)으로 R&D 투자 확대

- (투자 확대와 실효성 제고)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되 실효성 제고와 민간과의 역할 분

답을 위해 투자자원 배분계획을 재검토

- (투자의 생산성 제고) 연구개발 성과평가 강화 및 연구과제중심제도(PBS) 개선 등을 통해 R&D 투자의 생산성 제고

## ② 핵심규제 개혁과 산업단지 공급확대

- (토지이용 규제 합리화) 용도지역·지구제를 단순화하고 도시계획 권한의 지방이양 및 절차의 간소화
  - 용도지역·지구(총 397개) 내 행위규제의 적정성을 조사·개선하고, 지정실적이 없는 지역·지구는 폐지
  - 동일 도 내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 및 특별시·광역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국토부장관의 승인 권한을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은 필요한 사항만 선택해서 수립하도록 간소화
- (은행 소유규제의 합리화) 규제완화에 상응하는 감독당국의 감시·감독강화를 전제로 은행산업에 대한 소유규제 완화
  - 이해상충 가능성이 비교적 크지 않은 연기금 및 PEF에 대해서는 산업자본 판단기준을 완화
  - 해외사채 등을 감안하여 산업자본에 대한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방안 검토
- (산업단지 공급 확대) 기업의 용지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 산단 등 저렴한 산업단지 공급 확대
  - '08년 임대 산업용지(230만㎡) 공급분에 대한 청약 실시
    - \* '08. 8월중 임대산업용지 세부 공급방안을 마련하여 임대료, 임대기간, 입주순위 등을 확정
  - 활용가능한 국유지를 임대산업용지로 공급하는 방안 마련('08.하반)
  -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해 이미 조성된 산업단지의 일부 및 신규개발 예정인 단지 일부를 한·일 부품소재 전용공단으로 조성하는 방안 검토

\* 예시 : ① 기존 산단 - 부산·진해 FEZ (4만평), 구미 외국인 투자지역(3.7만평), 군산자유무역지역(16.5만평) 등

② 신규개발예정지 - 포항, 대구, 구미 국가산업단지 등

- 산업단지 애로해결 시스템(가칭 Happy-Line) 구축 등 산업단지 수요자 맞춤형 지원 서비스 제공

## ③ 세율 최저화 및 조세제도 선진화

- (세율 인하) 법인세율을 대폭 인하하여 금년분부터 적용하고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기준금액을 100% 상향조정

\* 전체 기업의 90% 수준(대부분의 중소기업 포함)이 10~11% 낮은 세율 혜택

현행		인하 방안		
구분	세율	구분	'08	'10귀속~
과표 1억원 초과	25%	과표 2억원 초과	22%	20%
과표 1억원 이하	13%	과표 2억원 이하	11%	10%

- 경쟁국 동향 및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소득세 등 전반적인 세부담 완화방안 검토
- (조세제도 선진화) 조세체계 간소화, 연결납세제도 도입 등 조세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선진화
- (납세협력 비용 최소화) 신고·납부횟수 축소 및 신고절차 개선 등을 통해 납세협력 비용을 획기적으로 경감

## ④ 금융의 글로벌스탠더드화

- (금융지주회사) 보험·금융투자 중심 지주회사의 비금융 자회사(또는 손자회사) 지배를 허용하는 등의 방안 검토
- (자본시장) 시행령 제정, 인허가 등 자본시장통합법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하는 한편 전자증권제도 도입
- (은행) 유가증권 투자 등 은행 자산운용한도 확대, 해외진출 규제완화 등 자율성을 제고하고 인

터넷 전문은행 도입 추진

- (글로벌 투자 전문기관 육성) 운용자산 규모 확대, 투자 방식의 다양화 등을 통해 KIC를 글로벌 전문기관으로 육성
- (공공부문 해외투자 효율화) KIC · 연기금 간 협력 강화, Global Network 확대 등으로 국부증권 기회 적극 모색

\* 공동투자 전략 실행, 해외 우수 투자자(PEF, 연기금 등)와 네트워크 강화 등

### ⑤ 노사관계의 법치화

- (법과 원칙 준수 관행) 노사간 자율협상을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 노사분규 등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
- 2010년 시행에 대비하여 복수노조 · 노조 전임자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노사정 논의 등 법 개정 추진
-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지역 노사정협의회를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지자체별 노사민정 협의회로 개편
-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운영 지원예산 · 지방교부세를 차등 지원
- (노사분규 예방활동 강화) 노사분규 취약사업장 (08년 367개소)과 핵심사업장(12개소)에 대한 전담지도 등 강화

### ⑥ 공공부문 효율화를 위해 공기업 선진화 방안 마련 · 추진

- 기관 성격, 산업 구조 등을 감안하여 기능 정비, 통폐합 등 효율화를 추진하면서 가능한 공기업은 민영화 추진
- 이해관계 집단의 의견수렴 등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시장여건, 기관별 특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2) 에너지 절약구조로의 전환 및 에너지 자원개발 확대

#### ① 에너지 자급기반 확충 및 신에너지 개발 확대

- (에너지 자급기반 확충) 에너지 사용의 효율화, 신재생 에너지, 원자력 발전 등 에너지원별 적정 비중 설정 등을 포함하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 (08~30) 수립 추진(08 하반기)

- 특히, 원자력을 통한 에너지 공급 적정비중을 도출하여 원자력 발전소 건설의 기본방향을 설정

- (신재생 · 바이오 에너지 개발) 지열 · 태양광 ·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 및 R&D 지원을 확대

- 유채 등 바이오 에너지를 포함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육성전략 등을 포함하는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추진

\* 초안 마련 및 공청회(9월),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및 최종안 수립(10월)

#### ② 에너지 절약형 건물 확대 및 산업부문 에너지 효율 제고

- (에너지 절약형 건물 확대) 건물 에너지절약 설계 기준 강화 등 주택 · 공공건물에서의 에너지 절약 추진

- 천정 설계, 창호 단열기준 등 건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에너지 효율적 건물 신축을 유도

-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축물 설계를 유도하는 에너지 소비 총량제를 공공발주 대형 건축물에 시범 도입(08. 10)

-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용적률, 높이제한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

- 사회적 연대에 기초한 에너지 사랑 캠페인 확산 추진

\* 아파트 단지 등이 전년 대비 5% 이상 에너지 절약시 절감

액을 저소득층 난방비를 해당 건물명으로 지원해 주는 에너지 절약 캠페인

- 신축 공공건물 에너지효율 1등급 의무화, 에너지 절약 실적 공개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 유도
- (산업부문에서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산업·기업 부분 등에서 에너지 효율성 제고 추진
- 고연비 차량 보급 확대를 위해 생산단계에서 기준 평균연비를 2012년부터 현행 대비 16.5% 상향 조정
- 2010년까지 의무적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한 정부 협약제도(EERS : 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 도입 추진
- \* 정부협약제도 : 의무적인 에너지 절감 목표를 수립하고, 정부가 이행실적을 검증한 후 인센티브 제공
-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방안 마련 및 온실가스 감축 사업 투자 등을 위한 탄소펀드 확대 운용('08. 12)

### ③ 에너지 절약형 교통·물류체계 개편

- 고유가·온난화 등에 대응하여 자동차 중심에서 철도·연안해운 등으로 다변화
- 기후변화협약에 부합되는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제정
- \* 전국을 3개 권역(기간, 도시, 지역)으로 구분·관리,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확대, 환경기준에 맞추어 감축목표 설정 등을 법제화
- 항만과 산업단지를 철도와 연결하는 인입선 구축 방안을 마련하고 선박 대형화에 대응하여 고효율·에너지 저감형 항만(Green Port) 구축 기본계획 수립('08. 하반기)

### ④ 에너지 절약형 생활구조로 전환

- (에너지 절약형 생활 구조 확산)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에너지 절약형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 강화

- 가정에서 쉽게 실천가능한 에너지 절약 매뉴얼 작성·배포
- 공공기관, 가전사가 협력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하여 아파트를 중심으로 맞춤형 에너지 절약 실천방법 컨설팅 추진(홈 에너지 닥터 제도)
- 에너지 절약형 운전습관(Eco-drive) 정착 촉진을 위해 민간 중심의 Eco-drive 운동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
- \* Eco-drive를 실천하는 경우 자동차연비가 최대 30%까지 개선가능
-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확대 운영
- \* '08. 7월부터 「한남대교 남단-오산 IC」간 평일 버스전용차로제를 시범운영하고, 그 성과를 보아가며 확대 검토
- 도심지역의 대중교통 이용촉진, 공장 주차장의 탄력적 운영 등을 위해 주차장에 대한 규제의 개선을 추진
- 지자체 탄소포인트(마일리지) 제도를 활성화하여 전기·가스절감 등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기울인 개인·가정에 인센티브(예 :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제공
- (에너지 가격체계 개선)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중장기 에너지 가격체계의 개선방안 검토('08. 하반기)

### ⑤ 해외 에너지 자원 개발 확대

- (해외자원 확보를 위한 협력 강화) 4대 중점 진출 지역을 중심으로 고위급 자원의외교를 지속적으로 추진
- \* 예멘, 오만, 이라크, 사우디, 요르단, UAE 등도 검토
- 범정부 차원에서 자원의외교를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성과 극대화
- \* 재정부(ODA, 이중과세방지협정), 외교부(ODA), 국토부(해외 건설 지원) 등
- 국무총리 중앙아시아 순방('08. 5) 후속조치 추진  
→ 카자흐스탄 잠빌광구 지분 인수를 위한 본계약 체결(2.7억배럴) 등 총 8건의 유·가스전

개발 추진

- (석유공사 대형화 추진) 탐사·생산규모를 국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수준으로 확대(현재 5만 B/D → '12년 30만 B/D)
- 국제 경쟁력 확보 이후, 민간자본 유치 및 시장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석유개발부문 분리 및 IPO 추진
- 비축, 관리 등 비개발부문 조정을 통해 개발부문 조직을 강화하고, 가스공사와의 전략적 협력(6. 12 MOU체결)으로 시너지효과 극대화
- (국제개발 협력에 능동적 참여) 대외원조를 확대하여 국격을 제고하고 해외 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한 기반 조성
- 한국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을 확대·발전시켜 개도국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해외자원 확보의 레버리지로 활용
- \* 민·관 합동 「경제발전협력 추진협의회(위원장 : 재정부 1차관)」를 구성하여 한국 경제발전 경험을 세계문화유산 차원의 콘텐츠로 개발

**⑥ 해외 곡물자원 개발 노력 강화**

- 민간 주도의 해외 농업자원 개발사업을 지원하여 안정적 국제곡물 확보 능력 제고
- \* 해외농업 개발사업에 필요한 현지조사 등을 위한 재원을 '09년 예산에 반영

**⑦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한 산림 국제협력 강화**

- (해외 산림자원 개발) 「해외산림자원개발육성법(가칭)」을 제정하여 산림자원 개발 추진
- 녹색사업단('08. 6월 설립)을 통해 산림자원 개발 기업 지원
- 인도네시아 중부 깔리만탄 조림대상지(15만 ha) 타당성 조사 및 투자기업 간담회 개최('08.9월)
- (국제 임업협력 추진) 부존 산림자원이 풍부해 투자 잠재력이 높은 중남미(브라질, 칠레, 파라과이

등) 국가와 임업협력 MOU 체결

- 동북아 지역의 황사 및 사막화 방지에 주도적 역할 추진
- \* 몽골 그린벨트 조림사업 10개년 계획('07~'16 : 95억원)
- \* 인도네시아 쓰나미 피해 복구('06~'08) 및 중국 내몽고 사막화 조림사업 추진

**(3) 광역경제권과 지역발전 인프라 구축**

**① (남해안 개발) 여수 엑스포를 계기로 남해안 지역을 새로운 성장동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프로젝트 추진**

- 관광·미래산업 등의 발전기지로 육성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지역발전, 신성장동력 확보 도모

**② (광역경제권 개발) 수도권과 지방의 동반 발전을 유도하고 지역화합·성장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광역경제권 형성을 촉진**

- 지역 특성화에 맞추어 광역권별 성장거점을 주요 국책사업과 연계 개발

**(4) FTA 추진과 외국인 투자 활성화**

**① 내실 있는 FTA 추진**

-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차질 없이 처리하는 한편, 보완대책 등을 통해 협정이행을 뒷받침
- 협상 또는 검토중인 FTA는 광범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경제적 실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추진
- \* 협상중인 FTA : EU/인도/캐나다/멕시코와의 FTA 등
- \* 검토중인 FTA : GCC/호주/뉴질랜드와의 FTA 등

**② 양방향 투자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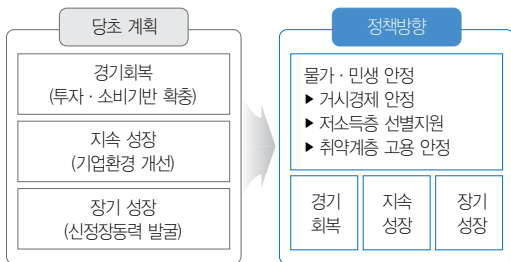
-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외국인 투자환경개선 3개년 계획('08~'10)」을 통해 '외국인이 경영하기 좋고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

\* 총 79개 개선과제 중 45개의 단기 개선과제는 '08년 하반기 중 완료

-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금·재정지원 통합운영, 조세감면 대상 고도기술 수반사업 목록 개선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의 효과성 제고
- (해외 투자 지원) 주요 투자 대상국 내 한국 기업 지원센터를 확대(현재 7개, '08년 내 3개 추가)하여 현지법인의 경영상 애로를 해소

### 〈MBnomics와 하반기 경제운용계획〉

- ◇ MBnomics : 투자 활성화와 소비기반 확충, 기업환경 개선, 신성장동력 창출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경제
- ◇ 2008년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은 고유가 등 대외 여건 악화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커져 있는 만큼
  - 물가안정과 민생안정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경제를 운용
- 통화·환율 등 거시경제 지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면서 물가안정·민생안정시책을 적극 강구
- 특히, 서민경제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도록 저소득층과 특정부문을 선별 지원하고,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을 중점적으로 지원
- 감세, 규제완화 등을 중심으로 우리경제의 성장능력을 확충해 나간다는 MBnomics의 기본틀은 계속 추진



## IV. 주요 경제지표 전망

- ◇ 원유·곡물·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금년 성장·물가·경상수지 등 거시경제지표의 재조정 필요

### 〈2008년 전망〉

	당초 전망	수정 전망
■ 경제 성장률	6.0% 내외	4%대 후반
■ 소비자 물가	3.3% 내외	4%대 중반
■ 경상 수지	△70억불	△100억불 수준
■ 취업자 증가	35만명	20만명 내외

#### 1 2008년 하반기

- (성장) 내수 부진이 심화되면서 4%대 후반의 성장 예상
- (물가) 유가 등 원자재 가격상승 등의 영향으로 당초 예상보다 상승세가 확대된 4%대 중반 전망
- 유가 상황 등에 따라 월별 기준으로는 5~6% 수준까지 오를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
- (경상수지) 수출호조에 불구하고 원유 수입 증가 및 여행수지 적자 등으로 인해 △100억불 내외 적자 예상
- (고용) 고유가와 내수부진 등 경기적 요인과 비정규직 감소 등 노동시장 구조적인 요인 등의 영향으로 연간 취업자 규모가 20만명 내외로 둔화될 전망

#### 2 2009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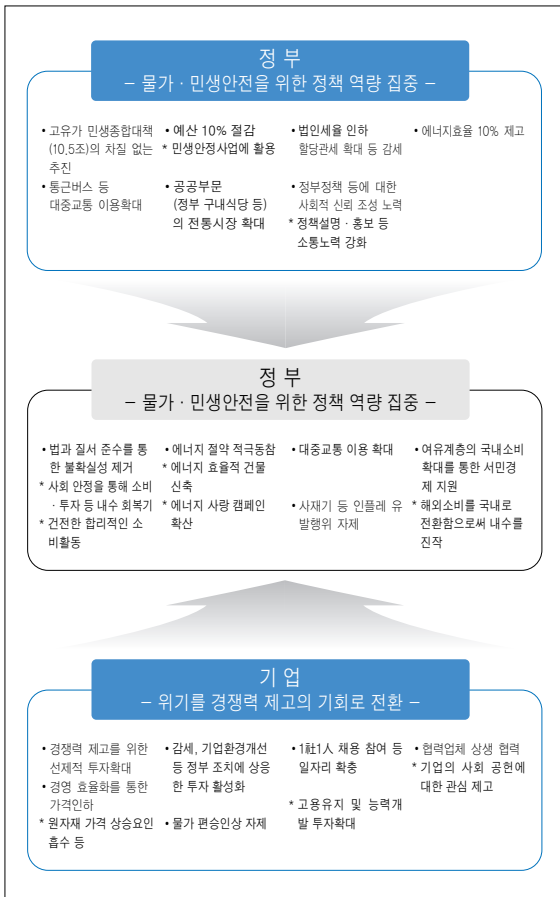
- 유가 급등세가 진정되고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세계경제 성장 전망(08→09) : (IMF)3.7→3.8, (Global

Insight)3.1—3.4

- \* 국제금융시장은 그간의 불확실성에서 점차 안정화되는 조짐 (OECD, 08. 6)
- 이러한 여건 개선을 토대로 성장잠재력 확충 노력을 지속할 경우 국내경제도 정상 성장궤도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

## V. 국민에 대한 당부 : 고통 극복에 함께 노력



#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보도 관련 입장

\* 이 자료는 2008년 7월 1일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에서 발표한 「2008. 7. 1(화) 한국경제(인터넷) “하이브리드카 10% 싸진다…개별소비세도 전액 면제키로”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언론보도 주요 내용>

- “내년부터 일반 엔진과 전기모터를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카에 대해 개별소비세(차값의 5~10%)를 전액 면제한다”고 보도

## <기획재정부 입장>

- 금년도 「조세감면운용 기본계획」(08. 4. 22 각 부처 통보)에 따라 환경부,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에서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조세 감면을 공식 건의해 온 바 있음
- 이에 따라 현재 실무 검토중에 있으며, 향후 환경오염 방지 및 에너지 절약 효과, 외국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세제지원 여부를 결정해 나갈 예정임

# 6월 및 08년 상반기 소비자물가 동향 및 대응방향

\* 이 자료는 2008년 7월 1일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에서 발표한 「6월 및 08년 상반기 소비자물가 동향 및 대응방향」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I. 6월 소비자 물가 동향

- '08. 6월중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5.5% 상승(전월 대비 0.6%)

- 국제유가가 Oil shock 수준에 근접함에 따라 '08. 4월 이후 2개월 연속 4%대를 기록한 데 이어 6월에는 5% 초과

\* 소비자물가 동향(전년 동월비, %) : (07. 1~9)2.3→(10)3.0→(11)3.5→(12)3.6→(08.1)3.9→(2)3.6→(3)3.9→(4)4.1→(5)4.9

- 6월 물가상승은 국내 석유제품 가격 상승과 함께 기저효과(07. 6월 전년 동월비 상승률 2.5%, 전월비 0%)에 주로 기인

-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 5.5% 중 석유제품 및 가공식품의 기여도가 2.52%p로 물가상승의 약 50%가 국제유가 및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기인

\* 전월 대비 상승률 0.6% 중 석유제품 가격의 기여도가 0.58%p로 물가상승의 약 90%가 국제유가 및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기인

- 6월중 국제유가는 Dubai유가 기준으로 5월 대비 7.0%(전년 동월 대비 94.2%) 상승

- 개인서비스 요금은 국제유가·원자재 가격 상승 요인을 반영함에 따라 소폭 상승

- 기타 농축수산물, 공공요금, 집세 등은 예년 수준

의 가격상승률을 기록

### 6월 부문별 물가동향

구 분	전체	농축수산물	공업제품			공공요금	집세	개인서비스
				석유류	가공식품			
전월비(%)	0.6	△1.1	2.0	7.7	1.1	0.0	0.3	0.4
기여도(%p)	0.6	△0.10	0.61	0.51	0.07	0.00	0.02	0.11
전년 동월비(%)	5.5	1.3	10.5	33.9	9.8	2.5	2.4	4.8
기여도(%p)	5.5	0.10	3.18	1.92	0.60	0.41	0.20	1.65

- 국제유가가 사상최고치를 기록함에 따라 미국 등 다수의 국가가 4% 이상의 소비자물가 상승세를 실현하였으며 이는 물가목표·전망치를 상회하는 수준

-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 기준으로 EU는 16년 만에 최고(독일 14년, 프랑스 17년, 영국 16년 만에 최고), 일본은 10년 만에 최고 수준

### 주요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동월비, %)

국가	07				08					
	연간	10	11	12	1	2	3	4	5	6
미국	2.9	3.5	4.3	4.1	4.3	4.0	4.0	3.9	4.2	-
유로	2.1	2.6	3.1	3.1	3.2	3.3	3.6	3.3	3.7	4.0
독일	2.3	2.8	3.2	3.1	2.8	2.8	3.1	2.4	3.0	3.3
프랑스	1.5	2.0	2.4	2.6	2.8	2.8	3.2	3.0	3.3	-
영국	2.3	2.1	2.1	2.1	2.2	2.5	2.5	3.0	3.3	-
중국	4.8	6.5	6.9	6.5	7.1	8.7	8.3	8.5	7.7	-
싱가포르	2.1	3.6	4.2	4.4	6.6	6.5	6.7	7.5	7.5	-
홍콩	2.0	3.2	3.4	3.8	3.2	6.3	4.2	5.4	5.7	-
일본	0.0	0.3	0.6	0.7	0.7	1.0	1.2	0.8	1.3	-

\* 주요국 물가목표(전망치(%)) : (중국)4.8, (유로)2.0, (싱가포르)4.5~5.5

## II. 08년 상반기 물가 동향

- 08년 상반기중 소비자물가는 국제곡물가격·국제유가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학원비 등 개인서비스 요금 상승에 따라 07년 상반기 대비 4.3% 상승
- 4.3% 중 석유제품 및 가공식품의 기여도가 1.67%p로 물가 상승의 약 40% 이상이 국제유가 및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기인
- 원자재가격 상승은 이외에도 외식비, 기타 공업제품(금반지 등)의 가격 상승을 견인
- 외식비·학원비 등 개인서비스의 상반기 기여도가 1.41%p로서 물가상승률의 약 30%를 차지

### 상반기 부문별 물가동향

	전체	농축수산물	공업제품	공공요금		집세	개인서비스	
				석유류	가공식품			
전년 동기비 상승률(%)	4.3	0.4	7.3	22.9	7.2	2.9	2.1	4.1
기여도(%p)	(4.3)	0.02	2.20	1.24	0.43	0.48	0.20	1.41

## III. 52개 생활필수품 동향

- 주요 생필품 가격은 전월 대비 기준으로 26개 품목이 상승, 26개 품목이 동결 또는 하락

(전월비 상승률)

구분	상승(26개)	변동 없음(17개)	하락(9개)
품목	밀가루(13.5), 등유(12.3), 돼지고기(11.8), 경유(8.3), LPG(8.2), 휘발유(6.3), 고등어(5.7), 화장지(2.0), 세제(1.8), 목욕료(1.2), 삼푸(0.8), 이미용료(0.8) 등	사과, 라면, 두부, 우유, 소주, 바지, 상수도료, 쓰레기봉투료, 전기료, 전철료, 시내버스료, 시외버스료, 방수수신료, 이동전화통화료 등	파(△11.4), 무(△12.7), 양파(△3.7), 배추(△10.8), 달걀(△1.6), 마늘(△2.8), 공동주택관리비(△0.8), 유아용품(△0.3), 쇠고기(△0.1) 등

- 휘발유(6.3%)·경유(8.3%)·등유(12.3%)·LPG(8.2%) 등 석유제품 가격은 국제유가 최고가 경신 등의 영향으로 크게 상승
- 돼지고기(11.8% 상승)는 광우병 논란·AI에 따른 대체수요 증가, 나들이 수요 증가 및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가격 부담으로 인한 사육두수 감소 등에 따라 상승
- 돼지사육 두수(천두) : (07. 12) 9,606→(08. 3) 8,981→(08. 6e) 8,892
- 통상 돼지고기는 3월에서 8월 사이 나들이 수요 증가로 인한 상승시기
- 밀가루(13.5% 상승)는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월가인상요인 반영으로 상승
- 고등어(5.7% 상승)는 장마철 조업 부진에 따라 가격상승

## IV. 향후 대응방향

- 정부는 물가안정과 서민생활 안정을 하반기 경제

운용의 최우선 목표로 추진할 예정

- 물가안정을 위하여 유통구조 개선·관세인하, 매점매석·독과점 관리 강화 등 구조적·미시적 대책을 지속 추진

※ 주요 물가안정 및 서민생활 안정 정책 추진 방향은 하반기 경제운용방향(7. 1일, 17:00 발표 예정)에 반영하여 발표할 예정

- 또한, 물가 및 민생안정 장관급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범정부적으로 물가와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

#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

## - 납세자 신고편의 제고 및 세정지원 강화 -

\* 이 자료는 2008년 7월 4일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에서 발표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국세청은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있어, 납세자 신고편의 제고 및 어려움에 처한 사업자 지원에 역점을 두어 신고업무를 추진하기로 하였음
- 납세자가 보다 쉽고 간편하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시스템을 개선하고, 간편 신고서 이용대상을 확대하며, 수입금액명세서 서식을 간소화하는 등 납세자의 신고편의 제고 및 납세협력비용 축소를 적극 추진하고
- 유가 인상, AI, 서해안 기름유출 등으로 인하여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 지원을 적극 실시함으로써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임

- 신고대상 과세기간 : '08. 1. 1~6. 30
  - ※ 법인 등 예정신고한 사업자의 경우 : '08. 4. 1~6. 30
- 신고·납부기간 : '08. 7. 1~7. 25
  - 전자신고 : 매일 06:00~24:00
  - 전자납부 : 평일 09:00~22:00  
(씨티·상호저축은행은 09:30~19:00)
- 신고와 관련하여 도움받을 곳
  - ☎ 전자신고·납부 관련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www.hometax.go.kr](http://www.hometax.go.kr)
    -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홈택스상담팀 : ☎ 02-2630-8700~5
  - ☎ 세법해석 관련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 ☎ 1588-0060
  - ☎ 현금영수증 및 사업용 신용카드 관련
    -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 [www.taxsave.go.kr](http://www.taxsave.go.kr)
    - 국세청 현금영수증 상담센터 : ☎ 1544-2020
  - ☎ 기타 신고관련 문의 : 사업장 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과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개요

- 신고대상 사업자 : 494만명 (개인 446, 법인 48)

### <업태별 신고대상자 현황>

(단위: 만명)

구분	계	제조	도매	소매	건설	음식주점	운수	임대	서비스	기타
계	494	44	46	72	33	71	48	100	77	3
개인	446	33	10	2	25	70	47	98	66	0
법인	48	11	36	70	8	1	1	2	11	3

※ 전년 동기 대비 39만명 증가 (개인 38만명, 법인 1만명)

### 납세자 신고편의 제고 및 납세협력비용 축소를 위한 개선사항

납세자가 보다 쉽고 간편하게 신고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시스템을 개선하고 신고관련서식 및 기재사항을 간소화

#### ■ 전자신고시스템 개선

- 전자신고서 부동산임대사업자에게 기 신고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공하여 변경된 임대내역만 수정입력토록 개선

종 전	개 선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임대내역*을 모두 새로이 입력 * 총·호수별 임차인 기본사항, 임대계약내용, 임대료수입금액	변경된 임대내역만 수정 입력

⇒ 약 100만명에 이르는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전자 신고가 크게 간편해졌음

- 매출세액만 있는(공제세액 등이 없는) 간이과세자가 간편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메뉴를 별도 마련

종 전	개 선
6단계 화면*을 거쳐야 전자신고 종료 * 기본사항, 매출세액, 공제세액, 가산세, 과세표준명세, 면세수입금액	2단계 화면*만 거치면 전자신고 종료 * 기본사항, 매출세액,

⇒ 약 160만명에 달하는 간이과세자의 전자신고 절차가 보다 간편해졌음

#### ■ 간편신고서 이용대상 확대 및 신고관련 서식 개선

- 신고내용이 간단한 간이과세자가 보다 간편하게 신고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간편

### 신고서 이용대상을 확대

종 전	개 선
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이 1천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만 간편신고서 사용 가능	모든 간이과세자가 간편신고서 사용 가능  * 2개 업종 이상을 영위하거나 신용카드 발행 및 의제매입세액공제 외 기타공제항목이 있는 경우 정식신고서 사용

⇒ 단일업종 간이과세자 약 37만명의 신고서 작성 이 보다 용이해졌음

- \* 정식신고서작성대상항목(약 25개)이 많고,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첨부서류(3종)를 별도로 작성 제출
- \* 간편신고서작성대상항목(약 5개)이 간단하고,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첨부서류도 동 서식 이면에 기재할 수 있는 서식

- 변호사, 건축사 등 전문직종별로 서로 다른 수입금액명세서 서식을 1개로 통일하여 단순화하고, 기재사항을 대폭 축소

종 전	개 선
수입금액명세서란에 건별 수입금액내역을 모두 기재	현금거래분 수입금액내역만 기재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주민등록기재분 제외) 발행분 제외

⇒ 약 3만명에 이르는 전문직 사업자의 신고가 간편해지고, 현금거래확인제도와 연계하여 세원투명성 제고가 가능해짐

#### 〈참고〉 수입금액명세서 제출대상 전문직

- \*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관세사,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 납기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 지원 강화

- 유가상승, AI, 서해안 기름유출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지급기간 단축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함으로써 사업자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해 줄 예정
  - 납부기한 연장
    - 유가상승, AI, 서해안 기름유출 등으로 인하여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9개월의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을 연장
  - 환급금 조기지급
    - 환급금이 발생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조기환급금(수출업체 등)은 물론, 일반환급금(매출<매입)의 경우에도 환급금을 최대한 조기에 지급  
(예 시)
    - \* 조기환급 : 신고기한(7.25일)부터 10일 이내 (법정기한 15일)
    - \* 일반환급 : " 20일 이내 (법정기한 30일)
-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율을 인상함
  - 적용대상 :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
  - 공제율 : 2% (종전 1.5%)

### 1. 이번 신고 시부터 달라지는 제도

-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 등 발행금액 세액공제율 인상(부가세법 §32의 2)
  -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사용 확대 등으로 인한 과표양성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신용카드 등의 발행금액 세액공제율을 2%(종전 1.5%)로 인상

- '08. 1. 1. 이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
-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한 가산세 증가 (부가세법 §22)
  - 가짜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하여도 발행자와 동일하게 공급가액 2%(종전 1%)의 가산세를 부과
  - '08. 1. 1. 이후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
- 매입세액 불공제된 재화의 면세전용시 과세 제외 (부가세법 시행령§15 ①)
  - 과· 면세 겸업사업자가 과세사업 관련 취득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 소비하는 경우 당초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 제외하여 이중과세 방지
  - '08. 2. 22. 이후 면세사업에 사용· 소비하는 분부터 적용
- 전문직사업자 현금거래 확인제도 신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21의 5)
  - 전문직사업자가 제출한 수입금액명세서 내역을 세무서장이 현금영수증 시스템에 입력한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간주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시스템을 통해 조회한 결과, 전문직 사업자가 누락 또는 과소신고한 경우 현금거래확인 신청을 하여 확인을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
  - '08. 2. 22.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 2.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

#### 전자신고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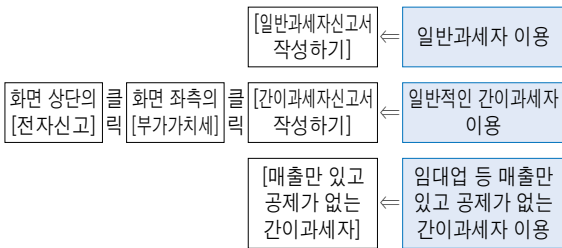
- 접속방법
  - 국세청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 또는 일반사용자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전자신고 준비

- 회원미가입자는 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 또는 신고서 안내문 등에 기재하여 발송한 “가입용번호”로 회원가입하여 이용

※ 전자신고를 하면 1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없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음

■ 작성방법

- 로그인 후 아래의 납세자 유형별로 신고서 작성하기를 이용하여 신고서 작성 완료하고 전송하면 신고종료됨.



- 국세청 홈택스 초기화면 아래의 [홈택스 쉽게 따라하기 보기]→[전자신고]→[부가가치세 (일반, 간이)신고서]에서 자세히 설명

서면신고 방법

■ 신고서 서식 구하기

-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의 [신고납부메뉴] 또는 [국세정보]메뉴 화면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서식을 출력하거나 세무서에 오셔서 직접 교부받으면 됨.

■ 작성방법

- 법인 · 개인 일반사업자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용
-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용
- 단일업종 사업자로서 작성내용이 간단한 간이과

세자 ⇒ 간이과세자 간편신고서(부동산임대사업자용 · 기타업종) 이용

\* 2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거나 영세율 · 채고납부세액 · 가산세 · 신용카드 등 수취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또는 「간이과세자간편신고서」를 이용하기에는 기재사항이 많은 간이과세자는 위 정식신고서 이용

※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의 [신고납부]메뉴에서 [부가가치세]메뉴 화면의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고

■ 제출방법

-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
- 직접 방문하여 세무서 민원실(또는 전자신고상담교실)에 접수

납부 방법

- 홈택스로 전자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서 작성 종료 후 납부서를 자동으로 출력할 수 있으며, 신고서를 수동작성한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신고납부] 또는 [국세정보]메뉴에서 납부서를 출력받아 납부할 금액을 직접 기재
- 위 납부서로 금융기관(우체국 포함)에 납부하거나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 ARS, 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하여 납부
- 홈택스를 통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전자신고한 경우에는 [전자납부]→[전자신고분납부]경로를 통하여 납부가능

\* 이용시간은 평일 09:00~22:00, 다만 상호저축 · 씨티 은행은 09:30~19:00까지

# 신용카드전표 보관의무 폐지 및 공제신청 간소화

## - 신용카드 거래관련 납세협력비용 절감-

\* 이 자료는 2008년 6월 24일 국세청 전자세원과에서 발표한 「신용카드전표 보관의무 폐지 및 공제신청 간소화」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국세청은 개인사업자들이 신용카드로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면 신용카드전표의 보관의무를 폐지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납세협력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음

-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 데 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국세청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등록(사업용 신용카드)하여야 함
- 사업용 신용카드의 등록은 상반기는 6월 30일, 하반기는 12월 31일까지 하여야 하며, 등록된 신용카드에 대하여는 국세청이 직접 신용카드매입 자료를 제출받아 DB를 구축하게 되고 납세자는 이를 조회하여 간편하게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음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 2 제5항 : 2008. 2. 22 신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 서식) : 2008. 4. 22 개정

■ 법인사업자는 별도의 등록절차 필요 없이 법인 명의의 카드거래 자료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절차를 간소화하여

- 명세서 작성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감축되어 납세협력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음

\*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에 의해 보관의무가

2005. 2.19 폐지되었음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활용 방법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 국세청 현금영수증페이지\*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코너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회원에 가입하고 사업용으로 사용할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됨(최대 5개 신용카드 등록 가능)

\* <http://현금영수증.kr> 또는 <http://www.taxesave.go.kr>

※ 신용카드 등록시 신용정보 보호를 위해 공인인증서 사용 필수

• 등록카드 자료의 활용

-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신고 기간별 신용카드 사용건수 및 사용금액 집계 조회가 가능하며

※ 세무대리인 및 지입회사 등에 간편하게 조회기능 부여

- 월별 사용금액에 대한 세부명세는 사업자 본인만 조회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므로 공인인증서 또는 비밀번호로 로그인 후 이용 가능

## 사업용 신용카드 거래자료 수집 현황

### 【사업용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자료 수집 현황】

(2007년 2기 기준)

(단위 : 천건, 백만원)

합 계		법 인		개 인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66,882	9,573,852	56,807	8,470,436	10,075	1,103,416

# 지방 미분양주택 취·등록세, 빠른 곳은 7월 1일부터 감면

- 미분양주택 계약자는 시도 감면조례 개정 일정을 따져봐야 -

\* 이 자료는 2008년 7월 2일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에서 발표한 「지방 미분양주택 취·등록세, 빠른 곳은 7월 1일부터 감면」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지난 6월 11일 발표한 '지방 미분양 대책'에 따른 취득·등록세 50% 감면이 7월 1일 대전광역시에서 가장 먼저 시행되는 것을 시작으로 7월 3일 경상남도, 7월 4일 충청북도, 7월 7일 대구광역시 순으로 시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가 지난 6월 16일 시도세 감면조례 표준안을 시도에 통보한 이래, 대전, 경남, 충북, 대구의 4개 시도는 이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고, 나머지 9개 시도도 현재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서 개정되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18일 부시장·부지사회에서 지방의회와 협의, 의회일정과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여 감면조례의 조속한 개정을 위한 특별대책을 세워 추진하도록 시도에 촉구한 바 있다.
- 현재 지방 미분양관련 시도 감면조례 개정 추진 상황은 다음과 같다.

## <시도별 감면조례 시행(공포)일정(6.30일 현재)>

시도별	감면조례 시행(공포)예정일	시도별	감면조례 시행(공포)예정일
부산	7.16	충남	7.15
대구	7.7	전북	7.25
광주	7.15	전남	7.15
대전	7.1	경북	7.10
울산	7.18	경남	7.3
강원	7.25	제주	7.31
충북	7.4		

※ 공포 예정일이므로 정확한 공포·시행일은 시도에 직접 확인 요망

- 오동호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은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일부 시도에 대하여 취득·등록세 50% 경감지원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며,
  - 경감혜택이 감면조례 개정 시행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미분양주택을 6. 11일 이후 분양 계약하였다더라도 시도별로 감면조례 개정 시행일에 따라 취득시기(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다.
- 시도별 감면조례의 정확한 시행일은 각 광역시청 또는 도청 세정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 행안부, 지방세제 개편을 통한 중산·서민층 유류비 지원 및 서비스 산업 활성화 도모

- 17일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

\* 이 자료는 2008년 6월 17일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에서 발표한 「행안부, 지방세제 개편을 통한 중산·서민층 유류비 지원 및 서비스 산업 활성화 도모」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중산·서민층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관광·고용창출 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서비스 수지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제25회 국무회의('08. 6. 17, 화)에 상정하였다.

■ 금번 지방세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① 유가상승으로 인한 중산·서민층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행세 세율(32%→36%) 및 탄력세율(30%→50%)을 조정하고, 보조금 지원대상을 확대(운송업→연안화물선 및 농어민 추가)하였다.
- 이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지난 6월 8일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발표된 고유가 관련 대책을 보다 구체화하고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 현행 유가보조금 제도를 유지하면서 '08.7.1 이후 경유 유가 상승분('08. 5월, 4주 평균가격 1ℓ 당 1,800원 기준)의 50%를 유가연동 보조금으로 하고, 그 지원 대상을 버스·화물차에서 연안화물선 및 농어민에게로 확대함으로써
- 직접적으로는 유류비 인상으로 생계의 압박을 받고 있는 연안화물선·농어민에게도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간접적으로는 일반서민의 장바구니

물가상승의 억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 이러한 조치는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낮추는 만큼 지방세인 주행세를 높여 재원을 마련('08년 추계액 33,419억원 → 48,419억원, 증 15,000억원)하기 때문에 국민 1인당 세부담 증가액에는 전혀 변동이 없다.

② 수도권 이외 지역의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폐지(10%→2%)하고, 토지분 및 건축물분 재산세 세율도 인하(4%→2%)하게 된다.

- 이는 지난 4월 28일 민관합동경제활성화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을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 골프산업을 신성장 서비스산업으로 인식 전환하고, 해외 골프수요를 국내로 전환·흡수함으로써 서비스 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 금번 세율조정을 통해 지방골프장 이용가격이 세금 인하분 이상으로 인하될 경우, 인접국가와 비교하여 가격경쟁력이 확보되어 해외 골프수요가 상당부분 흡수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③ 「한·미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과 자동차세의 부담완화를 위하여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배기량별 세율구간을 조정(5단계→3단계)하고, 세율을 일부 인하하게 된다.

- 이는 제17대 국회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된 FTA관

런 법안을 정부 차원에서 금년에 일괄 재입법을 추진하는 것이다.

- 한·미 FTA협상의 기본취지는 세제를 포함해 양국의 교역증대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를 개선하고 통상관련 제도와 환경을 조화롭게 발전시켜 양국의 이익을 높이는 취지이다.

※ 이러한 자동차세 개선 문제는 그동안 자동차업계와 자동차 소유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사안이고, '05년 5월 규제개혁관계장관회의에서도 자동차 관련 조세제도를 정비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 I. 유가연동 유가보조금제 세제지원 내용

### ■ 추진배경

-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중산·서민층의 유류비 부담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대책 마련(6. 8, 고위당정협 및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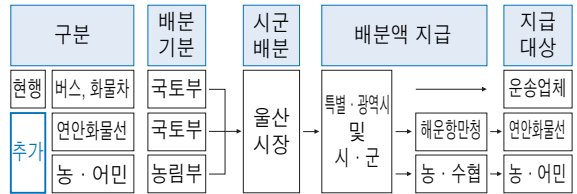
### ■ 추진내용

- 현행 유류세 연동 보조금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08. 7. 1 이후 경유가격 상승분('08. 5월.4주 평균가격 10당 1,800원 기준)의 50%를 유가연동 보조금으로 정부에서 지원
- 추가재원은 주행세율을 인상하여 마련하되, 주행세 인상분만큼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을 인하
- ※ 1년간('08. 7. 1~'09. 6. 30) 한시 시행

### ■ 유가보조금 배분체계

- 지원대상 확대
- (현행)버스, 화물차 + (추가)연안화물선, 농·어민

### • 배분체계 변경



- 주행세 중 지방세보전금(8,442억원)의 배분체계는 현행과 동일

## II. 지방골프장에 대한 세제지원 내용

### ■ 추진배경

-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부로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한해 2년 일몰로 세제지원 결정(4. 28, 민관합동경제활성화회의)

### ■ 추진경위

- 관계기관 국장급 회의(4. 17)
- 경제정책조정회의 상정(4. 25)
-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발표(4. 28,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경제활성화회의)

### ■ 주요 내용

- 지방세 지원대상 : 지방 회원제골프장
- 지방세 지원사항
- 취득세 중과폐지 : 10% → 2%
- 토지분 및 건축물분 재산세 세율 인하 : 4% → 2%
- 원형보전지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변경 : 종합합산(0.2~0.5%) → 별도합산(0.2~0.4%)
- 적용기한 : 2년(취득세 '08. 9~'10. 12, 재산세 '08. 6~'09. 12)

※ 지방세수 결손분은 부동산교부세(재산세 감소분

및 취·등록세 감소분에 우선사용) 등 지방이전재원 조정을 통해 보전할 계획임

### Ⅲ. 한·미 FTA 관련 자동차세 세제지원 내용

#### ■ 추진경위

- '07. 9. 28 : 지방세법 개정안에 포함하여 국회 제출
- '07. 12. 19 :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통과
- '07. 12. 28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삭제의결

※ 한·미 FTA 관련법령 개정은 협정안 국회비준 동의 후 추진함이 바람직하다는 국회 법사위 의견

- '08. 2. 14 :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회부
- '08. 5. 29 : 제17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

#### ■ 주요 내용

- 세율구간 축소 : 5단계 → 3단계
- 세율인하

현 행		⇒	개 정 안	
배기량	CC당 세액		배기량	CC당 세액
800CC 이하	80원	1,000CC 이하	80원	
1,000CC 이하	10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이하	140원	
2,000CC 이하	200원	1,600CC 초과	200원	
2,000CC 초과	220원			

#### ■ 자동차세 감소예상액 및 보전방안

- 감소예상액 : 약 1,000억원('08. 6. 1 현재)
- '08년 교통·에너지·환경세(11조 6천억원)의 0.86%에 해당
- 주행세율을 인상(교통·에너지·환경세 인하)하여 보전



# 재정통계

- 연도별 세목별 조세지출 현황
- 연도별 감면방법별 조세지출 현황
- 연도별 기능별 조세지출 현황
- 연도별 탈세제보자료 처리실적
- 연도별 세정지원(납세유예) 실적

## 1. 연도별 세목별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합계	77,305	105,419	131,440	136,208	145,999	175,080	182,862	200,169	213,380
직접세계	77,305	73,689	95,147	97,183	101,676	123,311	131,485	149,236	152,315
소득세	49,673	47,988	51,692	48,643	55,512	64,291	73,982	80,360	91,114
법인세	27,257	25,386	43,286	48,397	45,980	58,698	56,948	68,408	60,810
상속·증여세	375	315	169	143	184	322	555	468	391
종합부동산세	-	-	-	-	-	-	-	0	-
간접세계	-	31,730	36,293	39,025	44,323	50,558	50,274	49,262	58,053
부가가치세	-	21,165	26,408	28,120	30,267	32,628	31,735	30,784	38,033
교통세	-	6,541	6,512	7,343	9,105	10,319	12,416	12,511	12,126
특별소비세	-	1,891	936	1,593	2,013	2,679	3,623	3,591	2,589
주세	-	311	338	317	328	440	424	531	458
인지세	-	484	537	697	483	466	433	454	516
증권거래세	-	1,134	1,388	833	2,127	4,026	1,643	1,391	2,002
전화세	-	204	174	122	-	-	-	-	-
교육세	-	-	-	-	-	-	-	-	2,328
농어촌특별세	-	-	-	-	-	-	-	-	-
과년도수입	-	-	-	-	-	-	-	-	-
관세	-	-	-	-	-	1,211	1,103	1,671	3,012

주: 1. 신고연도 기준.

2. 2002년 이전에는 관세를 제외한 수치이고, 2003년부터는 관세가 포함된 수치임.

3. 2005년에는 종합부동산세, 2006년 이후에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과년도수입이 조세지출항목에 포함됨.

자료: 재정경제부, 『조세지출보고서』, 각 연도.

2. 연도별 감면방법별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구분	감면방법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합계		77,305	105,419	131,440	136,208	145,999	175,080	182,862	200,169	213,380	
직접세	계	77,305	73,689	95,147	97,183	101,676	123,311	131,485	149,236	152,315	
	직접감면	소계	72,629	70,269	89,678	90,370	96,426	118,019	128,548	147,163	150,190
		비과세	22,153	21,204	22,921	17,714	14,887	13,572	17,727	16,617	17,126
		세액감면	12,294	14,211	15,176	16,031	18,263	19,894	24,583	21,746	27,738
		소득세·법인세	3,564	6,263	8,638	11,258	14,644	15,707	18,878	16,743	18,041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	8,730	7,948	6,538	4,773	3,619	4,187	5,705	5,003	9,697
		세액공제	6,044	6,532	16,265	18,022	18,239	29,412	30,897	39,264	34,673
		소득공제	12,240	12,282	16,322	23,741	31,550	36,712	43,174	51,252	54,427
		저율과세	12,252	10,495	9,691	3,529	2,729	6,013	5,189	7,365	8,496
	기타(손금산입·익금불산입 등)	7,646	5,545	9,303	11,333	10,758	12,416	6,978	10,918	7,730	
간접감면	준비금·과세이연 등	4,676	3,420	5,469	6,813	5,250	5,292	2,937	2,073	2,125	
간접세	계	-	31,730	36,293	39,025	44,323	50,558	50,274	49,262	58,052	
	부가가치세 영세율	-	12,318	14,935	13,479	13,618	14,758	15,554	15,199	20,506	
	부가가치세 면제	-	5,561	5,928	5,920	5,023	4,766	5,016	4,304	4,289	
	특별소비세·교통세 면제	-	8,429	7,392	8,512	10,665	12,255	15,060	16,463	14,715	
	주세·증권거래세·인지세 등 면제	-	2,133	2,437	1,969	2,938	4,932	2,500	1,846	5,304	
	기타	-	3,289	5,601	9,145	12,079	13,847	12,144	11,450	13,238	
관세	관세감면	-	-	-	-	-	1,211	1,103	1,671	3,011	

주: 2002년 이전에는 관세를 제외한 수치이고, 2003년부터는 관세가 포함된 수치임  
 자료: 재정경제부, 『조세지출보고서』, 각 연도.

## 3. 연도별 기능별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합계	77,305	105,419	131,440	136,208	145,999	175,080	182,862	200,169	213,380
1. 근로자·농어민 등 중산층 지원	42,384	61,285	66,512	62,044	70,403	78,738	83,457	88,961	103,876
저축지원	26,207	27,451	28,316	15,572	13,161	15,012	12,050	10,696	12,345
근로자	12,058	12,960	16,288	23,964	33,638	36,517	40,988	46,611	48,457
농어민	4,119	20,874	21,908	22,508	23,604	27,209	30,419	31,654	43,074
2. 경제개발 지원	18,578	25,713	41,629	45,898	48,204	62,119	67,161	74,755	72,429
중소기업	2,860	4,901	8,257	12,671	18,407	20,955	18,881	14,885	19,090
투자촉진	3,623	4,642	10,087	12,381	9,568	16,318	23,711	33,884	29,214
연구 및 인력개발	3,703	4,278	9,792	9,111	9,527	13,950	12,564	13,224	13,120
SOC·공공투자	5,409	5,177	4,814	4,347	3,066	3,590	3,269	2,200	6,445
금융산업	2,312	1,684	2,744	3,813	3,103	2,940	3,399	4,504	1,460
구조조정	-	3,001	4,386	1,812	1,161	279	132	84	-
지방이전 등 경쟁력 강화	671	2,030	1,549	1,763	3,372	4,087	5,205	5,974	3,100
3. 사회개발 지원	11,797	13,260	17,256	21,760	20,881	25,865	25,341	29,482	33,711
교육 및 문화·체육	6,288	3,026	3,169	5,949	3,797	4,120	2,630	2,869	2,366
환경	-	1,525	2,004	2,359	3,143	3,597	4,508	5,123	6,156
사회보장	5,509	8,176	11,649	12,932	13,535	17,487	16,873	20,601	23,807
주택	-	533	434	520	406	661	1,330	889	1,382
4. 국방	-	3,808	4,457	4,827	5,565	5,853	5,520	5,602	-
5. 일반행정	-	1,089	1,282	1,320	648	451	399	472	-
6. 기타	4,546	264	304	359	298	2,054	984	897	3,364

주: 1. 2002년 이전에는 관세를 제외한 수치이고, 2003년부터는 관세가 포함된 수치임.

2. 2006년부터 금융산업 및 구조조정 항목이 통합되고, 국방, 일반행정이 기타항목으로 통합됨.

자료: 재정경제부, 『조세지출보고서』, 각 연도.

4. 연도별 탈세제보자료 처리실적

(단위: 건, 백만원)

	처리대상건수			처리				연도이월건수
	계	전년도 이월	당년도 발생	계	과세활용		불문	
					건수	추징세액		
1997	1,163	236	927	999	555	68,657	444	164
1998	2,157	164	1,993	1,800	1,013	110,505	787	357
1999	4,212	357	3,855	3,286	1,661	139,131	1,625	926
2000	7,621	926	6,695	5,604	1,912	258,610	3,692	1,017
2001	8,069	1,017	7,052	7,028	2,357	277,872	4,671	1,041
2002	8,096	1,041	7,055	7,084	3,552	264,645	3,532	1,012
2003	7,400	1,012	6,388	6,269	3,329	342,004	2,940	1,131
2004	8,783	1,131	7,652	7,651	3,779	566,813	3,872	1,132
2005	9,118	1,132	7,986	7,868	3,792	438,257	4,076	1,250
2006	9,481	1,250	8,231	8,000	3,960	605,764	4,040	1,481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5. 연도별 세정지원(납세유예) 실적

(단위: 건, 백만원)

	합계		납기연장		징수유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997	12,840	4,233,768	9,573	3,466,234	3,267	767,534
1998	58,358	7,475,467	50,789	6,278,363	7,569	1,197,104
1999	23,443	5,877,362	17,766	4,725,091	5,677	1,152,271
2000	27,343	5,866,718	15,166	4,484,856	12,177	1,381,862
2001	36,946	3,887,004	19,343	2,624,573	17,603	1,262,431
2002	41,525	3,238,903	16,610	2,301,390	24,915	937,513
2003	47,785	3,382,818	19,107	2,546,822	28,678	835,996
2004	49,943	2,606,326	21,254	1,309,300	28,689	1,297,026
2005	59,473	2,265,328	26,797	1,407,365	32,676	857,963
2006	58,086	4,092,913	28,013	3,274,766	30,073	818,147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각 언론매체에 보도된 한국조세연구원 관련 주요 기사내용입니다.

- 편집자 주 -

### 〈하반기경제운용〉 소득세율 1%p 인하되나

- 정부 “소득세 부담 완화하겠다” 첫 언급
- 1%포인트 인하시 1.7조 세수 ↓..660만명 혜택
- 가능성 반반..결정은 청와대·정치권서

새 정부가 2일 올해 세제 개편안에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그 방법과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나라당이 지난 4월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소득세율 1%포인트 인하,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등의 방안이 실제 정부 정책으로 도입될 지 주목된다.

특히 올해 잇따른 감세 정책으로 내년부터 세수입이 크게 줄어드는데다 세율 인하 혜택이 고소득·중산층 계층에 집중된다는 비판 때문에, 정책 입안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 ◆ ‘소득세 부담 완화’ 공론화

정부는 이날 발표한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서 “경쟁국 동향 및 재정여건 등을 감안, 소득세 등 전반적인 세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획재정부 강만수 장관과 최종경 차관은 그동안 사견을 전제로 “소득세율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지만 그 때마다 재정부 세제실은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해명해 왔다.

임종룡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소득세 부담완화 방안

과 시기에 대해 “감세 정책의 기본 방향을 밝힌 것으로 방법과 시기는 세제실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희수 세제실장도 “일반론 차원의 이야기를 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은 재정여건을 감안해 올해 세제 개편안을 확정,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당국자들의 발언과 달리 정부는 그간 다양한 형태의 소득세 인하 방안을 검토해 왔다.

그 중엔 소득세율 인하나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처럼 광범위한 납세자 계층의 세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이 있는 반면 특정 계층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소득공제 등의 조세 감면방안도 있다.

#### ◆ 세율 1%포인트 ↓, 660만명 혜택, 1.7조 세수 감소

이 중에 물가연동제 도입은 정부가 기술적인 문제로 난색을 표명해 왔고,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은 지난해 이미 단행된 바 있다. 이 때문에 소득세율 인하가 이뤄질 지가 초점의 대상이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지난 4월 총선 공약으로 과표구간별 소득세율 1%포인트 인하를 약속한 바 있다. 정부가 이번엔 소득세율을 내리면 2000년 이후 세번째 인하다. 정부는 2002년과 2005년 과표구간별로 1~4%포인트, 1%포인트씩 두차례 세율을 인하했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2006년 기준으로 소득세 납부 대상자는 662만1000명으로 전체 근로자 1259만5000명의 52.6%에 이른다. 현재 과표구간별 8~35%인 소득세율을 1%포인트 인하할 경우 약 700여만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는 의미다.

이에 따른 세수 감소는 연간 1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 재정 건정성 점점 악화

문제는 정부가 이 같은 세수 감소 효과를 감당할 수 있는 것. 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재정여건만 따져봐서는 소득세를 인하는 힘들다”고 말한다.

실제 정부는 올해 유류세, 법인세, 세금 환급 대책 등 굵직굵직한 감세 대책들을 이미 발표, 내년부터 세수가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우선 법인세 5%포인트 인하로 4년간 8조7000억원의 세금이 항구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며, 올 초 유류세 인하로 1조3000억원, 긴급 할당관세 인하로 6000억원의 세수가 한시적으로 줄어든다. 여기에 예정에 없던 근로자·자영업자 유가환급금 대책으로 3조1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이 때문에 세제실에서는 올해 소득세를 인하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소득세 부담 완화 방침을 공식화한 것에 대해서도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

재정 건정성을 논외로 치더라도 소득세율 인하 혜택이 중산층과 고소득층에 집중된다는 점이 논란거리다. 2006년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 중 47.4%가 면세점 이하로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다. 세율을 인하해도 저소득층은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뜻.

더욱이 소득세율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면세점과 세율을 함께 낮춰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30여년만에 처음으로 근본적인 세제개편을 하겠다”(강만수 장관)는 정부의 정책목표가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중산층과 고소득층은 세부담이 너무 많고, 저소득층은 너무 적은 구조를 모두 뜯어고쳐야 한다는 설명. 이 경우 저소득층의 세 부담은 오히려 가중된다.

◆ 가능성은 반반..공은 정치권으로

하지만 같은 소득과세의 성격을 갖는 법인세와의 형평

성 문제를 들어 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현재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 간 차이는 10%포인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9.6%포인트와 유사한 수준이지만 향후 법인세를 5%포인트로 내리면 이 격차는 4.6%포인트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 물가 인상에 따라 자동적으로 오르는 소득세 부담은 줄여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전병목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2002년, 2005년 세율 인하 시기를 제외하면 소득세 부담률이 매년 0.2%포인트 증가하므로 이를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논란 때문에 소득세를 인하는 청와대와 정치권이 결국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소득세를 인하를 포함한 다양한 감세 카드를 이미 준비해 놓고 있다”며 “최종 결정은 정치권과 정부가 협의해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7월 2일자〉

대규모 재해시 지구단위 일괄복구

재정토론회, 복구기금 신설도 검토

앞으로 피해규모 50억원 이상의 복합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지역 일대를 피해지구로 지정, 종합적이고 신속하게 복구하고 이를 위해 복구관리주체도 소방방재청으로 일원화해 피해조사부터 사후분석까지 일괄 추진한다.

또 피해복구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별도의 재해 복구기금을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김종면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일반공공행정분야 토론회에서 재해복구지원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김 위원은 발제문에서 기존의 시설별 복구나 피해시설 단순복구 방식에서 탈피, 재해관리의 통합적, 체계적 시행이 필요하다면서 대규모 복합피해 지역에 대한 복구관리 주체를 일원화하고 피해를 입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 일련의 구간에 대해 종합적인 복구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대규모 복합피해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 종합복구계획을 세우고 복구재원을 향후 신설하는 재해복구기금에서 충당하거나 일반예산으로 할 경우에는 한 행정기관에 일원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구단위 복구계획이란 동일한 수계 또는 유역에서 도로나 교량 붕괴, 하천유실, 산사태 등 여러 시설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자체 피해조사 결과 피해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복구전담 조직이 피해지역 전체를 조망하는 일괄복구를 해 피해 재발을 예방하는 방식이다.

지구단위 복구를 할 경우 부처별, 시설별로 복구계획을 수립해 실행할 때보다 복구속도가 빨라지고 기존의 단순 원상복구 차원을 넘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복구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체계에서는 복합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시군구의 복구물량 폭주로 기술인력 1인당 설계감독 건수가 50~70건에 달해 사업이 지연되고 지자체의 전문인력 부족은 부실설계와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반복피해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복구업체 선정이나 계약, 발주 등 행정절차 이행에도 한 달 전후의 기간이 소요된다.

이에 비해 전문성을 갖춘 복구전담조직이 소방방재청에 설치되면 지구단위 종합복구지역에 대해 설계, 시공을 신속하게 일괄발주할 수 있고 매년 반복되는 수해의 경우 인접하는 위험지역까지 예방복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은 재해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재해복구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지금처럼 부처별, 지자체별로 재해 관련 재원을 관리운영하는 방식은 재해 발생시 체계적인 재정지원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재해복구기금을 만들거나 그 대안으로 같은 규모의 예산을 소방방재청 일반예산에 편성해 운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금처럼 예비비를 사용해 복구재원을 배정하면 예비비 사용요구와 기획재정부 장관의 심사조정, 사용명세서 작성,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해당부처 배정 등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통상 한 달 가량 걸리고 추경이 필요할 경우 2개월 이상 소요되지만 기금형태로 운용하면 그 즉시 복구비 집행이 가능하다고 김 위원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6월 26일자)

## “재산세도 물가연동을” ... 실질소득 줄어도 稅부담 커져

조세硏, 감세공약과 상충 지적

물가상승으로 실질소득은 감소했는데도 단순히 소득이 늘었다는 이유로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피해를 막으려면 재산세, 법인세 등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감세공약’에 저소득 근로자들이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조세체계를 단순화하고 비과세, 감면조항을 줄여 세율을 낮춰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는 조세연구원과 납세자연합회가 18일 개최한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물가연동세제를 도입해 물가 상승에 따른 세부담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조세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물가연동제는 소득증가율이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해 실질소득이 감소했는데도 명목소득이 증가했다는 이유로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피해를 막기 위해 세율 적용구간

을 물가를 반영해 조정하는 제도다.

안 교수는 “영국·프랑스·네덜란드 등 오래 전부터 물가연동제를 시행해온 국가들의 사례를 검토해 세율구간만 조정할지, 각종 공제까지 조정할지, 매년 또는 3년에 한 번씩 조정할지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6억원 이상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도 10년간 30%의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지 않으면 현재 4억6000만원짜리 주택 소유자도 10년 후에는 중부세를 내야 한다”며 “물가연동제는 재산세, 중부세, 법인세는 물론 담배 가격 등에 붙는 소비세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우리나라 근로소득세는 복잡하고 다양한 공제제도를 갖고 있어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는 금액이 매 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보다 많아 결국 면세자임에도 자신을 납세자로 착각해 선거때만 되면 감세공약에 박수를 치는 저소득 근로자가 많다”며 “조세체계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각종 비과세, 감면조항을 줄이면서 세율을 낮추고 유사한 세목은 통폐합해 납세자들이 알기 쉬운 세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 교수는 아울러 50% 수준에 불과한 납세자 비중을 고려할 때 면세점을 낮추고, 중장기적으로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해야 하며, 과세단위를 개인과 부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향신문 6월 18일자)

## 2010년부터 법인 90%에 세율 10% 적용

월 2만원 유가환급금 10월부터 지급

오는 2010년(귀속)부터는 중소기업에 포함한 전체 법인의 90%에 10%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중소기업의 최

저한세율 역시 7%로 낮아진다.

근로자들은 오는 10월부터 유가 상승에 따른 대중교통비 부담액의 50% 수준인 최대 월 2만원을 유가환급금으로 지원받게 되며, 화물차·버스·농어민 등에 대한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주행세율 인상, 교통세율 인하가 단행된다.

기획재정부는 고유가 종합대책 시행,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지원, 중소기업 지원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6개 세법개정안과 1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 ◆ 전체 법인 90%에 법인세 낮은 세율 적용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인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과표 2억원 이하의 경우 법인세율이 2008년(귀속)부터 11%로 낮아지고 다시 2010년에는 10%로 인하된다. 2억원 초과인 경우 각각 22%와 20%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 전체 35만개 법인 중 90.4%인 32만개 기업이 2010년부터는 10%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희수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006년(신고기준) 중소기업의 법인수가 약 29만개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법인세율 인하로 거의 모든 중소기업이 10%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기본세율 외에 낮은 세율을 운용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모두 6개국에 불과하며 벨기에(24%), 일본(22%), 영국(21%), 네덜란드(20%), 미국(15%) 등에 비해 우리나라의 세율이 낮다.

재정부는 아울러 현행 25%인 법인세 높은 세율을 2010년까지 20%로 낮춤으로써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경쟁력 제고 → 일자리 창출 → 경제성장’의 선순환 구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조세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법인세 인하 효과 중 59.4%는 기업 내부에 유보돼 투자 등에 활용되고 소비자(17%), 주주(15.1%), 근로자(8.5%) 등도 법인세 인하 혜택을

### 볼 것으로 추정됐다.

국무회의에서는 법인세율의 2단계 인하에 맞춰 최저한 세율도 중소기업의 경우 현행 10%에서 2008년(귀속) 8%, 2010년 7%로 낮추고, 일반기업의 경우는 현재 과세표준 1천억원까지는 13%에서 2010년까지 10%로, 1천억원 이상은 15%에서 2010년까지 13%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

### ◆ 10월부터 유가환급금 지원

정부가 최근 발표한 고유가 대책을 실현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올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일을 한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유가환급금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빠르면 10월부터 교통비 추가 부담액의 50% 수준을 환급(최대 월 2만원) 해줄 계획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lt 이하 자가용 화물차에 대한 경차 유류세 환급(연간 최대 10만원),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10%→20%) 등의 내용도 포함된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에는 영업용 화물차·버스·연안화물선·농어민 등에 대한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는 1조5천억원 상당의 유가연동 보조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우선 주행세 법정세율을 현행 교통세의 32%에서 36%로 인상한다. 주행세율 인상에 따른 전반적인 세금 부담 증가분을 조정하는 차원에서 교통세 법정세율은 휘발유를 현행 l 당 630원에서 475원으로, 경유는 l 당 454원에서 340원으로 낮춘다. 또 향후 유가 변동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탄력세율 한도를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 ◆ 정규직 전환시 1인당 30만원 세액공제

국무회의에서는 또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원을 2009년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1인당 30만원의 세액공

제를 해주고, 금융기관이 휴면예금을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할 때 출연금액을 전액 손비 인정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대기업이 상생협력 중소기업에 출자해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해서는 전액 법인세를 면제하되 대기업이 협력업체 주식을 취득해 지배력을 강화하지 않도록 의결권 없는 주식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업이 중소기업에 구매대금을 현금성 결제하는 경우 세액공제율도 대기업-중소기업간 네트워크론은 결제금액의 0.4%로, 중소기업들끼리의 현금성 결제는 0.5%로 각각 0.1% 포인트 인상했으며 일몰기한도 2010년 말까지 연장됐다.

경력 3년 이상 외국 세무전문가의 국내 업무수행 및 외국 세무법인의 국내 사무소 설치 허용 등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연합뉴스 2008 06월 19일자〉

# 재정포럼

2008년 7월호 통권 제145호

- 발행처 / 한국조세연구원
- 편집위원장 /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편집위원 / 김우철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김현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원종학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우석진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전병힐 (한국조세연구원 초청연구위원)
- 편집·제작 / 최병규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출판팀장)  
최윤용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 월간 재정포럼

2008년 7월 15일 발행 / 제13권 제7호(통권 제145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라 10107  
발행처 / 한국조세연구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죽말길 28  
TEL : 02)2186-2130 · 3 E-mail: pub@kipf.re.kr  
Homepage: <http://www.kipf.re.kr>

## ■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 편집디자인 / 선 디자인 02)2269-2234
- 인쇄 / 고려문화사 02)2277-1509

##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 ■ 정기구독회원이 되시면

원하시는 곳에서 매달 책을 받아보시게 되며, 도중에 책값이 오르더라도 별도 부담이 없습니다.  
우송료는 본원이 부담하며 1년 구독시 두달치의 책값이 절약됩니다.

### ■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하셔서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 (02)2186-2133
- FAX : (02)2186-2139
- E-mail : [pub@kipf.re.kr](mailto:pub@kipf.re.kr)
- 주소 :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죽말길 28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출판팀

### ■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 ■ 구독료 납부방법

- 지로이용 : 본원 소정의 지로용지나 은행 비치 지로용지(지로번호 6923437)를 이용하십시오.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 가락중앙지점  
· 계좌번호 : 441-05-000011  
· 예금주 : 한국조세연구원